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2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36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5년 10월 31일

4. 회부일자 : 2025년 11월 4일

Ⅱ. 제안사유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함.

Ⅲ.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10,942,207**	**10,802,672**	**139,535**	**1.3**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314,966	6,598,729	△283,763	△4.3
	자치단체이전수입	4,226,098	4,039,643	186,455	4.6
	기타이전수입	16,193	13,230	2,963	22.4
	자체수입	101,319	128,273	△26,954	△21
	전년도이월금	0	13,525	△13,525	△100
	금융자산회수	3,631	9,272	△5,641	△60.8
	내부거래(기금전입금)	280,000	0	280,000	순증
세출	인건비	7,554,793	7,207,716	347,077	4.8
	기관운영비	45,229	40,249	4,980	12.4
	학교운영비	979,497	970,666	8,831	0.9
	교육사업비	2,171,472	1,988,644	182,828	9.2
	시설사업비	163,449	558,698	△395,249	△70.7
	재무활동	7,459	8,525	△1,066	△12.5
	예비비및기타	20,308	28,174	△7,866	△27.9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중앙정부이전수입	보통교부금		5,724,198	52.3	6,123,184	56.7	△398,986	△6.5
	특별교부금		0	0.0	21,161	0.2	△21,161	△100
	증액교부금		89,790	0.8	0	0.0	89,790	순증
	국고보조금		30,763	0.3	14,513	0.1	16,250	112.0
	특별회계전입금		470,215	4.3	439,871	4.1	30,344	6.9
	계		**6,314,966**	**57.7**	**6,598,729**	**61.1**	**△283,763**	**△4.3**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지방교육세	1,902,299	17.4	1,817,978	16.8	84,321	4.6
		담배소비세	233,127	2.1	246,269	2.3	△13,142	△5.3
		시도세	1,915,321	17.5	1,820,931	16.9	94,390	5.2
		학교용지부담금	3,778	0.0	3,778	0.0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7,811	1.1	114,034	1.1	3,777	3.3
		교육급여보조금	9,730	0.1	9,436	0.1	294	3.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7,107	0.2	0	0.0	17,107	순증
		소계	4,199,173	38.4	4,012,426	37.1	186,747	4.7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15,763	0.1	15,877	0.1	△114	△0.7
		기초자치단체	11,162	0.1	11,340	0.1	△178	△1.6
		소계	26,925	0.2	27,217	0.3	△292	△1.1
	계		**4,226,098**	**38.6**	**4,039,643**	**37.4**	**186,455**	**4.6**
기타이전수입			16,193	0.1	13,230	0.1	2,963	22.4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534	0.0	1,511	0.0	23	1.5
	행정활동수입		6,977	0.1	5,931	0.1	1,046	17.6
	자산수입		11,343	0.1	12,651	0.1	△1,308	△10.3
	이자수입		10,389	0.1	19,916	0.2	△9,527	△47.8
	기타수입		71,076	0.7	88,264	0.8	△17,188	△19.5
	계		**101,319**	**1.0**	**128,273**	**1.2**	**△26,954**	**△21.0**
기타	전년도이월금		0	0.0	13,525	0.1	△13,525	△100
	금융자산회수		3,631	0.0	9,272	0.1	△5,641	△60.8
	계		**3,631**	**0.0**	**22,797**	**0.2**	**△19,166**	**△84.1**
내부거래(기금전입금)			280,000	2.6	0	0.0	280,000	순증
합계			**10,942,207**	**100**	**10,802,672**	**100.0**	**139,535**	**1.3**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인건비	공무원		4,839,780	44.2	4,678,041	43.3	161,739	3.5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1,326,844	12.1	1,221,899	11.3	104,945	8.6
	사립학교		1,388,169	12.7	1,307,776	12.1	80,393	6.1
	계		**7,554,793**	**69.0**	**7,207,716**	**66.7**	**347,077**	**4.8**
경상비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45,229	0.4	40,249	0.4	4,980	12.4
	학교운영비	공립	739,104	6.8	722,609	6.7	16,495	2.3
		사립	240,393	2.2	248,057	2.3	△7,664	△3.1
		소계	979,497	9.0	970,666	9.0	8,831	0.9
	계		**1,024,726**	**9.4**	**1,010,915**	**9.4**	**13,811**	**1.4**
사업비	교육사업비		2,171,472	19.8	1,988,644	18.4	182,828	9.2
	시설사업비	학교신증설	51,068	0.5	65,615	0.6	△14,547	△22.2
		일반시설	83,976	0.8	463,914	4.3	△379,938	△81.9
		급식시설	28,405	0.2	29,169	0.3	△764	△2.6
		소계	163,449	1.5	558,698	5.2	△395,249	△70.7
	계		**2,334,921**	**21.3**	**2,547,342**	**23.6**	**△212,421**	**△8.3**
재무활동	일시차입금관리		432	0.0	575	0.0	△143	△24.9
	BTL상환		7,027	0.1	150	0.0	6,877	-
	기금전출금		0	0.0	7,800	0.1	△7,800	△100
	계		**7,459**	**0.1**	**8,525**	**0.1**	**△1,066**	**△12.5**
예비비 및 기타			**20,308**	**0.2**	**28,174**	**0.3**	**△7,866**	**△27.9**
합계			**10,942,207**	**100**	**10,802,672**	**100.0**	**139,535**	**1.3**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하 '예산안'이라 함)은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69호로 제출되어 2025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금번 예산안은 누리과정지원, 늘봄학교운영지원, 무상급식 등의 국정과제 및 서울교육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됨.

2. 주요 검토의견

가. 예산안 편성 방향 및 규모

1) 예산안 총괄 방향 및 규모

○ 금번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조 9,422억 7백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0조 8,026억 7천 2백만원 대비 1.3%(1,395억 3천 5백만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됨.

[표-1] 최근 5년간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본예산액	10,588,635	12,891,521	11,160,536	10,802,672	10,942,207
전년대비 증감액	846,641	2,302,886	△1,730,985	△357,864	139,535
증 감 률	8.7	21.7	△13.4	△3.3	1.3

○ 이와 같이 전년도 대비 예산안 규모가 증액된 원인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837억 6천 3백만원) 및 자체수입(△269억 5천 4백만원), 기타(△191억 6천 6백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비법정이전수입(△2억 9천 2백만원)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기금전입금(2,800억원)'이 금번 예산안 전체 규모의 2.6%를 차지할 정도

로 크게 순증되고, 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1,867억 4천 7백만원), 기타이전수입(29억 6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2) 세입예산안 편성 방향 및 규모

○ 서울시교육청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3,149억 6천 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2,260억 9천 8백만원, 기타이전수입 161억 9천 3백만원, 자체수입 1,013억 1천 9백만원, 금융자산회수 등 기타 36억 3천 1백만원, 내부거래(기금전입금) 2천 8백억원 등 총 10조 9,422억 7백만원이 편성됨.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조 3,149억 6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6조 5,987억 2천 9백만원) 대비 △4.3%(△2,837억 6천 3백만원) 감액되었는바,

이는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 897억 9천만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303억 6천 4백만원, 국고보조금 162억 5천만원 증액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3,989억 8천 6백만원) 및 특별교부금(△211억 6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2,260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4조 396억 4천 3백만원) 대비 4.6%(1,864억 5천 5백만원) 증액되었는바,

이는 비법정이전수입(269억 2천 5백만원)이 전년도(272억 1천 7백만원) 대비 △1.1%(2억 9천 2백만원) 감액되었으나, 시도세, 지방교육세 등의 법정이전수입(4조 1,991억 7천 3백만원)이 전년도(4조 124억 2천 6백만원) 대비 4.7%(1,867억 4천 7백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 한편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총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2,800억원)'을 제외한 세입 총액을 살펴보면, 총 10조 6,622억 7백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0조 8,026억 7천 2백만원 대비 오히려 △1.3%(△1,404억 6천 5백만원) 감액됨.

- 즉, 내부거래(기금전입금)로 인해 금번 예산안 규모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할 경우 세입 규모는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하였음.

[표-2] 내부거래(기금전입금) 제외한 최근 3년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본예산액-기금전입금	10,830,536	10,802,672	**10,662,207**
전년대비 증감액	△2,060,985	△27,864	**△140,465**
증 감 률	△16.0	△0.3	**△1.3**

[표-3]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금액	비율
중앙정부이전수입	보통교부금		5,724,198	6,123,184	△398,986	△6.5
	특별교부금		0	21,161	△21,161	△100
	증액교부금		89,790	0	89,790	순증
	국고보조금		30,763	14,513	16,250	112.0
	특별회계전입금		470,215	439,871	30,344	6.9
	계		**6,314,966**	**6,598,729**	**△283,763**	**△4.3**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4,199,173	4,012,426	186,747	4.7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15,763	15,877	△114	△0.7
		기초자치단체	11,162	11,340	△178	△1.6
		소 계	26,925	27,217	△292	△1.1
	계		**4,226,098**	**4,039,643**	**186,455**	**4.6**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6,193	13,230	2,963	22.4
자체수입			**101,319**	**128,273**	**△26,954**	**△21.0**
기타	전년도이월금		0	13,525	△13,525	△100
	금융자산회수		3,631	9,272	△5,641	△60.8
	계		**3,631**	**22,797**	**△19,166**	**△84.1**
내부거래(기금전입금)			280,000	0	280,000	순증
합 계			**10,942,207**	**10,802,672**	**139,535**	**1.3**

3)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 및 규모

○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에 따라 인건비(7조 5,547억 9천 3백만원)가 전년도(7조 2,077억 1천 6백만원) 대비 4.8%(3,470억 7천 7백만원), 기관운영비(452억 2천 9백만원)가 전년도(402억 4천 9백만원) 대비 12.4%(49억 8천만원), 학교운영비(9,794억 9천 7백만원)가 전년도(9,706억 6천 6백만원) 대비 0.9%(88억 3천 1백만원), 교육사업비(2조 1,714억 7천 2백만원)가 전년도(1조 9,886억 4천 4백만원) 대비 9.2%(1,828억 2천 8백만원) 증액됨.

○ 반면, 시설사업비(1,634억 4천 9백만원)는 전년도(5,586억 9천 8백만원) 대비 △70.7%(△3,952억 4천 9백만원), 일시차입금 등의 재무활동(74억 5천 9백만원)은 전년도(85억 2천 5백만원) 대비 △12.5%(△10억 6천 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203억 8백만원)는 전년도(281억 7천 4백만원) 대비 △27.9%(78억 6천 6백만원) 감액됨.

○ 이와 같이 금번 예산안의 시설사업비가 크게 감액된 주요 원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종전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노후시설개선, 그린스마트스쿨, 급식시설개선, 학교공간재구조화-꿈담)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5,350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한 교육청 시설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총 6,985억 4천 4백만원인바,

실질적으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2025년도(5,586억 9천 8백만원) 대비 25.0%(1,398억 4천 6백만원) 증액된 상황이며 이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를 포함한 세출 예산 규모는 11조 4,773억 2백만원으로 2025년도(10조 8,026억 7천 2백만원) 대비 6.2%(6,746억 3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금번 서울시교육청 세출예산안 편성은 보통교부금 등 주요 세입 항목이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은 기금 전출(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기금을 사용(교육시설안정화기금)함으로써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은 2025년보다 증액된 상황으로 보여짐.

[표-4] 세출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인건비	공무원		4,839,780	44.2	4,678,041	161,739	3.5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1,326,844	12.1	1,221,899	104,945	8.6
	사립학교		1,388,169	12.7	1,307,776	80,393	6.1
	계		7,554,793	69.0	7,207,716	347,077	4.8
경상비	교육행정기관운영비		45,229	0.4	40,249	4,980	12.4
	학교 운영비	공립	739,104	6.8	722,609	16,495	2.3
		사립	240,393	2.2	248,057	△7,664	△3.1
		계	979,497	9.0	970,666	8,831	0.9
	계		1,024,726	9.4	1,010,915	13,811	1.4
사업비	교육사업비		2,171,472	19.8	1,988,644	182,828	9.2
	시설 사업비	학교신증설	51,068	0.5	65,615	△14,547	△22.2
		일반시설	83,976	0.8	463,914	△379,938	△81.9
		급식시설	28,405	0.2	29,169	△764	△2.6
		소계	163,449 **(698,544)**	1.5	558,698	△395,249 **(139,846)**	△70.7 **(25.0)**
	계		2,334,921	21.3	2,547,342	△212,421	△8.3
재무 활동	일시차입금관리		432	0.0	575	△143	△24.9
	BTL상환		7,027	0.1	150	6,877	-
	기금전출금		0	0.0	7,800	△7,800	△100
	계		7,459	0.1	8,525	△1,066	△12.5
예비비 및 기타			20,308	0.2	28,174	△7,866	△27.9
합 계			10,942,207 **(11,477,302)**	100	10,802,672	139,535 **(674,630)**	1.3 **(6.2)**

※ ( )안의 수치는 환경개선기금 시설사업비 5,351억원을 포함하였을 때의 예산임

나.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세입원임.

○ 금번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의 총 규모는 10조 5,572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10조 6,516억 2백만원) 대비 △0.9%(△943억 4천 5백만원) 감액 편성됨.

- 금번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6조 3,149억 6천 6백만원)은 전체 예산(10조 9,422억 7백만원) 대비 57.7%, 지방자치이전수입(4조 2,260억 9천 8백만원)은 전체 예산(10조 9,422억 7백만원) 대비 38.6%, 기타이전수입은 전체 예산(10조 9,422억 7백만원) 대비 0.1%인바, 서울시교육청 세입예산의 96.4%가 이전수입으로 편성되고 있음.

[표-5]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1]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중앙정부이전수입	6,314,966	57.7	6,598,729	61.1	△283,763	△4.3
자치단체이전수입	4,226,098	38.6	4,039,643	37.4	186,455	4.6
기타이전수입	16,193	0.1	13,230	0.1	2,963	22.4
합 계	**10,557,257**	**96.4**	**10,651,602**	**98.6**	**△94,345**	**△0.9%**

1) 구성비는 전체 예산 규모대비 세입 구성 비율임.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금번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 8,139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6조 1,443억 4천 5백만원) 대비 △5.4%(3,303억 5천 7백만원) 감액된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분되며,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5조 7,241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6조 1,231억 8천 4백만원) 대비 △6.5%(△3,989억 8천 6백만원)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금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고, 증액교부금은 897억 9천만원 순증되었음.

[표-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보 통 교 부 금	5,724,198	52.3	6,123,184	56.7	△398,986	△6.5	5,724,198	0
특 별 교 부 금	0	0.0	21,161	0.2	△21,161	△100	0	0
증 액 교 부 금	89,790	0.8	0	0.0	89,790	순증	89,790	0
계	5,813,988	53.1	6,144,345	56.9	△330,357	△5.4	5,813,988	0

[표-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종류와 재원		교부 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96.2% + 교육세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전출분 제외)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3.8%)	국가시책(180/38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90/38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시 교부

종류와 재원		교부 기준
	재난안전관리(30/380)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특별한 재정수요(80/380)	방과후 교육 활성화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2026년까지 한시적)
증액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정하여 교부

㉮ 보통교부금

○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2]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 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동 법 제5조[3]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교부함.**

-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직원인건비(6조 8,675억 7천만원)', '학교운영비(1조 7,397억 5천 5백만원)', '교육기관 등 시설비(6,037억 6천 4백만원)' 등 총 10조 1,663억 6백만원이며,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중 '시도세(2조 3,576억 2천 8백만원)', '지방교육세(1조 4,936억 9천 9백만원)', '담배소비세**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u>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u>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129억 6천 2백만원)’ 등 총 4조 4,421억 8백만원인바,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5조 7,241억 9천 8백만원으로 편성됨.

○ 이와 같은 보통교부금은 5조 7,241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6조 1,231억 8천 4백만원) 대비 △6.5%(△3,989억 8천 6백만원) 감액된 것임.

[표-8]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 수입액

(단위: 백만원, %)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1. 교직원인건비		6,867,570	1.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1,493,699	
2. 학교운영비		1,739,755		시·도세전입금	2,357,628	
3. 교육행정비		124,593		담배소비세전입금	212,962	
4. 학생맞춤통합지원비		311,7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 포함)	117,810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603,764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분	35,134	
6. 유아교육비		163,233		국가사업의시도이양사업보전분	23,988	
7. 늘봄학교사업비		169,359	2. 학교용지부담금		-	교
8. 고교무상교육지원		-	3.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	
9. 재정결함보전		31,872	4. 고교무상교육전입금		-	
10. 교원연수 운영·지원		92,572	5. 자체수입금		200,887	부
11. 기초학력 보장지원		-				
12.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43,524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3,404				금
14. 자체재정수요	외부교육투자유치	7,868				
	집행효율화(이·불용률)	-15,000				
	집행효율화(상반기집행률)	2,000				
합계		**10,166,306**	**합계**		**4,442,108**	**5,724,198**

○ 한편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및 교육세**로, 내국세분 교부금의 경우 종전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3항[4]에 따라 "내국세의 20.79%의 97%"를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3%를 특별교부금으로 하였으나,

2023년 12월 31일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에 따른 특례규정이 신설되면서[5]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2024년도 예산편성 시[6]부터 **보통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의 96.2%"**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3.8% 규모로 편성되고 있음.

- 아울러 교육세분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7]

---

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략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5)「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4.1.1.][법률 제19938호, 2023.12.31., 일부개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24.2.).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7)「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라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8]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잔액의 5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9]하여 남은 50%를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즉, 예산편성 시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 규모가 결정되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규모 및 교육세분 보통교부금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임.

- 그러나 교육부는 금번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교육세 배분 체계를 개편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10], 교육세 세입 중 금융·보험업분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교육세 세입 중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출하며, 그 나머지 40%를 교육세분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였음.

- 다만 교육세 배분 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률안[11]이 현재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바, 향후 관련 법률안 심사에 따라 교육세분 보통교부금 규모는 변화될 여지가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내국세(349조 6천억원)가 전년도(330조 1천억원) 대비 5.8%(19조 5천억원)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교육세(6조 2천억)도 전년도(5조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략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 ④ 생략

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생략

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10) 교육부 보도자료(2025.8.28.).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106.3조원 편성.

11) [2214025]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7. 제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교육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계류중
[2213036] 영유아특별회계법안(2025.9.16. 제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현재 교육위원회 계류중

5천억)보다 13.3%(7천억원)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12],

교육세 배분 체계 개편에 의한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2024년도 교육세 교육부 정산분이 감액되면서 교육세분 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감액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표-9]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출 비교

(단위: 백만원, %)

2025년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 계 : 69,659,572 ※ 제2회 추경 △1,927,313	□ 계 : 69,010,114
○ 내국세분 교부금 : 67,077,580 - 내국세 337,204,771 × 20.79% × 96.2% = 67,440,885 - '23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363,305 ※ 제2회 추경 △1,795,459	○ 내국세분 교부금 : 67,975,226 - 내국세 342,975,132 × 20.79% × 96.2% = 68,594,958 - '24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619,732
○ 교육세분 교부금 : **2,581,992** - 교육세 6,040,200 → **(유특)1,702,175** - (고특)2,169,013 = 2,169,012 - '23년 교육세 교부금 정산분 **+412,980** ※ 제2회 추경 △131,854	○ 교육세분 교부금 : **1,034,888** - 교육세 6,443,294 → **(영유특)2,638,044** - (고특)2,046,554 = 1,758,696 - '24년 교육세 교부금 정산분 **△723,8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Ⅱ」

[표-10] 2026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5 NABO 전망(A)	2026		
		NABO 전망(B)	전년 대비 (B-A)	
			증감액	증감률
국세수입	372.3	396.1	23.8	6.4
일반회계	360.6	384.0	23.4	6.5
내국세	**330.1**	**349.6**	**19.5**	**5.9**
1. 소득세	129.5	136.7	7.2	5.5
2. 법인세	83.9	87.5	3.6	4.3
3. 상속세 및 증여세	16.5	17.1	0.6	3.7
4. 부가가치세	81.7	86.7	5.0	6.1
5. 개별소비세	8.3	9.1	0.8	10.0
6. 증권거래세	3.2	5.5	2.3	73.5
7. 인지세	0.8	0.8	△0.01	△0.8
8. 과년도수입	6.3	6.3	△0.1	△1.2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6.2	3.0	23.0

12) 국회예산정책처(2024.10.).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40페이지.

(단위: 조원, %)

	2025 NABO 전망(A)	2026		
		NABO 전망(B)	전년 대비 (B-A)	
			증감액	증감률
관세	7.4	7.3	△0.1	△1.1
교육세	**5.5**	**6.2**	**0.7**	**13.3**
종합부동산세	4.4	4.7	0.2	5.6
특별회계	11.7	12.1	0.4	3.5
주세	3.2	3.2	△0.01	△0.4
농어촌특별세	8.5	9.0	0.4	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10.).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재구성

㉯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특 별 교 부 금	0	0.0	21,161	0.2	△21,161	△100	0	0

○ **특별교부금의 경우 종전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3항 및 제5조의2에[13]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의 재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14]에 따른 특례규정이 2024년 1월 1

---

13)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생략)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 ⑥(생략)

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2024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15]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의 3.8%" 규모로 종전보다 0.8%p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아울러 제5조의3제2항[16]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국가시책 사업은 특별교부금 재원의 47.4%, 지역현안 사업은 특별교부금 재원의 23.7%, 재해대책 사업은 특별교부금의 7.9%,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사업은 특별교부금 재원의 21.1%로 편성되어야 함.

○ 그러나 금번 예산안의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의 교부 통지 및 내역 등이

---

14)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1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24.2.).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16)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예산안 편성 제출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향후 추경을 통해 증액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증액교부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증 액 교 부 금	89,790	0.8	0	0.0	89,790	순증	89,790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17]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이외 증액 교부 할 수 있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경비가 증액교부금으로 897억 9천만원 순증됨.

○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 12월 3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18] 고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규정됨.

- 그러나 동 법 부칙 제2조[19]에 의해 제14조 규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까지만 효력을 갖게 됨. 이에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수정가결(2024.12.31.) 되었으나[20] 이후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였고(2025.1.14.), 2025년 4

---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9. 12. 3.][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19) □ 부 칙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월 17일에 동 안건이 부결되면서 결국 2025년도 상반기에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이 편성되지 못하였음.

○ 이후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어[21]2025년 8월 26일에「지방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6., 일부개정]」이 개정[22]되었는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기존 제14조는 삭제되고 제14조의2가 신설됨. 아울러 동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금번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2026년도 국가 부담 비용이 순증 된 것임.

[표-11]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국회 법률 개정 현황

일시	내용
2019.12.3.	[20198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신설 한시 규정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024.12.31.	[220596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액 교부 한시 규정 일몰 연장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
2025.1.14.	[220596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정부 재의안 접수
2025.4.17.	[220596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재의결 부결
2025.8.4.	[221193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국가 증액교부 규정(47.5% 이내) 일몰 연장 (2027년 12월 31일 까지 유효)

20) [220596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221193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6., 일부개정」
제14조 삭제 <2025. 8. 26.>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부 칙 <법률 제21029호, 2025. 8.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26일「지방재정교부금법」개정 이전[23]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이 "47.5%"로 규정되었으나 동 법 개정 이후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이 "47.5% **이내**"[24]로 규정됨.

- 이에 교육부는 금번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총 비용의 30%만을 편성·교부하였는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청 예산 부담 비율이 18%p나 높아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청 예산 부담이 커진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에 대해 하한선 규정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등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12] 2026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부담 비율 및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부담 비율	부담액
교육청	65.5%	196,041,967
국 가	**30.0%**	**89,790,214**
지자체	4.5%	13,468,532
합 계	100%	299,300,713

②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국 고 보 조 금	30,763	0.3	14,513	0.1	16,250	112.0	0	30,763

2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24) 교육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교육부의「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울시 부담 비율 4.5%를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 **총 경비의 48.0%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한바 있음**.

○ 금번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은 307억 6천 3백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145억 1천 3백만원) 대비 112.0%(162억 5천만원) 증액 편성됨.

이는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3억 2천 4백만원)'은 전년도(3억 5천 9백만원) 대비 △9.7%(3천 5백만원) 감액되었으나 '교육급여(145억 9천 5백만원)' 사업이 전년도(141억 5천 4백만원) 대비 3.1%(4억 4천 1백만원) 증액되고, '그린스마트스쿨(130억원)', '학교흡연예방교육(21억 5천 9백만원)', '학교운동부및체육계학교지원(6억 8천 5백만원)' 사업 등이 순증 됨에 따른 것임.

[표-13] 국고보조금 편성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2026년도 (A)	2025년도 (B)	증감내역	
					증감액 (C=A-B)	비율 (C/B)
1	학생맞춤지원담당관	교육급여	14,595	14,154	441	3.1%
2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	324	359	△35	△9.7%
3		학교운동부및체육계학교지원	685	-	685	순증
4		학교흡연예방교육	2,159	-	2,159	순증
5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	13,000	-	13,000	순증
합 계			**30,763**	**14,513**	**16,250**	**112.0%**

③ 특별회계전입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특별회계전입금	470,215	4.3	439,871	4.1	30,344	6.9	0	470,215

○ 금번 예산안의 특별회계전입금은 4,702억 1천 5백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4,398억 7천 1백만원) 대비 6.9%(303억 4천 4백만원) 증액 편성됨.

○ 그동안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25] 「유

2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

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 과정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6년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26]하여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 및 일반회계 보육사업, 유보통합 관련 신규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27] 이에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는 2026년도 9조 2,233억원으로 2025년도(3조 1,020억) 대비 197.3%(6조 1,213억원) 증액되었음[28].

-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29]인 관계로 교육부는 영유아특별회계 편성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별도 지침을 보내지 않았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교육부와 달리 영유아특별회계가 아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한편 금번 예산안의 특별회계전입금이 2025년도 본예산(4,398억 7천 1백만원) 대비 6.9%(303억 4천 4백만원) 증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교육부의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30]에 의해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만 4세 및 만 5세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은 2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씩의 무상교육비를 새롭게 지원하였기 때문임.

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26) [2213036] 영유아특별회계법안(2025.9.16. 제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나 교육부는 2026년도에 영유아특별회계가 설치될 것을 전제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
27) 대한민국정부(2025.9.3.). 2026년도 예산안 개요.
28) 교육부 보도자료(2025.8.28.).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106.3조원 편성.
29) [2213036] 영유아특별회계법안(2025.9.16. 제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현재 교육위원회 계류중
30)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만 4세, 2027년까지 만 3세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표-14] 서울시교육청 무상교육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2026년	
			유아수	단가
유아 학비	공립	5세	5,287	20,000
		4세	4,380	20,000
		3세	'27년	-
	사립	5세	15,090	110,000
		4세	15,593	110,000
		3세	'27년	-
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5세	12,934	70,000
		4세	14,328	70,000
		3세	'27년	-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3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바,[32]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2,260억 9천 8백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4조 396억 4천 3백만원) 대비 4.6%(1,864억 5천 5백만원) 증액 편성됨.**

---

3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지방세법」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 ⑩ (생 략)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략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 ⑩ 생략

[표-15]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광역	금액	4,043,928	4,148,553	4,036,970	4,025,472	4,205,282
	증감	450,784	104,625	△111,583	△11,498	176,810
기초	금액	23,205	23,536	35,203	14,171	20,816
	증감	10,799	331	11,667	△21,032	6,645
합계	금액	4,067,133	4,172,089	4,072,173	4,039,643	4,226,098
	증감 (비율)	461,583 (12.8%)	104,956 (2.6%)	△99,916 (△2.4%)	△32,530 (△0.8%)	186,455 (4.6%)

① 법정이전수입

○ 금번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4조 1,991억 7천 2백만원으로 2025년도(4조 124억 2천 6백만원) 대비 4.7%(1,867억 4천 7백만원)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증감사유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지방교육세(전액)	1,902,299	1,817,978	84,321	4.6	1,902,299		지방교육세 세수 증가
담배소비세(45%)	233,127	246,269	-13,142	-5.3	233,127		담배소비세 세수 감소
시도세(10% 및 보전분)	1,915,321	1,820,931	94,390	5.2	1,915,321		시도세 세수 증가
학교부담금	3,778	3,778	0	0.0	3,7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7,810	114,034	3,776	3.3	117,810		지방소비세 세수 증가
교육급여보조금	9,730	9,436	294	3.1	0	9,73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7,107	0	17,107	100.0	17,107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재도입으로 전입금 편성
소 계	4,199,172	4,012,426	186,746	4.7	4,189,442	9,730	

○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1호[33] 및 「지방세법」 151조에 따른 7개 세목[34]에 대한 전입금인바,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생략

서울시는 내년도 관련 세수에 대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금번 예산안에 2025년도 본예산(1조 8,179억 7천 8백만원) 대비 4.6%(843억 2천 1백만원) 증액된 1조 9,022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됨.

- 특히 지방교육세 전입금 중 하나인 담배소비세액분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으로[35] 일몰기간이 2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지방교육세에 반영되었음.

그러나 법률 개정 당시 동 적용 시한은 2027년 1월 1일 영구소멸 될 것을 전제로[36] 연장된 것인바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액분이 법정전입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법정전입금 중 지방교육세의 결손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담배소비세전입금[37]'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지방세법」제151조에 따른 <u>지방교육세</u>에 해당하는 금액

2. ~ 3. 생략

③ ~ ⑩ (생 략)

34) ○ 지방교육세 전입금: 7개 세목

• 취득세액의 10%,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이상시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35)「지방세법」[시행 2025.1.1.][법률 제20630호, 2024.12.31., 일부개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1. ~ 3. 생략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u>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u>

5. ~ 7. 생략

② ~ ④ 생략

□ 부 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적용시한) <u>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36) 「지방세법」[시행 2025.1.1.][법률 제20630호, 2024.12.31.,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u>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u>,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37)「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생략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재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내년도 관련 세수에 대한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2025년도 본예산(2,462억 6천 9백만원) 대비 △5.3%(△131억 4천 2백만원) 감액된 2,331억 2천 7백만원 편성됨.

○ 다음으로 지방세 세입 중 **시도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38]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총액의 10%가 전입되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서울시 시도세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2025년도 본예산(1조 8,209억 3천 1백만원) 대비 5.2%(943억 9천만원) 증액된 1조 9,153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시도세전입금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7호나목[39] 에 따른 국가의 지방이양 사업을 위한 교육청의 안분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4호나목[40]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 보전금이 종전보다 △2.4%씩 감액되었으나,

---

1.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생략

③ ~ ⑩ (생 략)

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생략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 ⑩ (생 략)

39)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7호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 서울특별시 23,988(백만원)

40)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4호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 서울특별시 35,134(백만원)

시도세의 세수 증가 예측으로 시도세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5.4%(958억 1천 5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943억 9천만원 만원(5.2%) 증액 편성됨.

- 그러나 현재 시도세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41]가 서울특별시에만 과도하게 시도세 총액의 10%라는 법정 전출금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 등이 개진되고 있는바[42],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시도세 전입금 폐지 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16] 시도세전입금 세부내역 사업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본예산(B))	증감내역		증감사유
				증감액 (C=A-B)	증감률 (C/B)	
시도세		1,915,320,989	1,820,931,000	94,389,989	5.2%	
	시도세 전입금	1,856,198,989	1,760,384,000	95,814,989	5.4%	시도세 세수 증가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분	35,134,000	35,981,000	△847,000	△2.4%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3] 시도별 안분액 개정으로 감소
	국가의지방이양사업보전분	23,988,000	24,566,000	△578,000	△2.4%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5] 시도별 안분액 개정으로 감소

○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생략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 ⑩ (생 략)

42) 서울특별시의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2025.10.20.,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제4항[43]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총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50%,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 편성하도록 하는 것인바,

금번 예산안의 학교용지부담금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37억 7천 8백만원 편성됨. 이는 2025년도에 (가칭)산빛초 신설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37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칭)산빛초 용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례지구 학교용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로부터 2025년도에 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금번 예산안에 재편성하게 된 것임.

[표-17] 학교용지부담금 서울시 부담액

(단위: 천원)

구분		학교명	위치	변경일자 (최초계약일자)	변경(예정) 금액 (A)	서울시부담 (A*1/2)
변경	용지 매입	(가칭) 산빛초	송파구 거여동	'26년 예산 편성 요청 (2024. 3. 28.)	7,556,712	3,778,356

자료: 교육청 제출 자료

○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44]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 라목[45]에 따라 편성되는바,

금번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1,178억 1천 1백만원으로 2025년도(1,140억 3천 4백만원) 대비 3.3%(37억 7천 7백만원) 증

---

4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③ ~ ④ 생략

45)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2호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액 편성됨.

○ 마지막으로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에 따라[46] 금번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이 순증 된 것임.

-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은 동 법 제14조의2제2항[47]에 따라 시·도의 경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48]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시·도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하는 금액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6., 일부개정」**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부 칙 <법률 제21029호, 2025. 8.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6., 일부개정」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 2025.4.1.][대통령령 제34981호, 2024.11.5.,일부개정]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법률 제1667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4. 삭제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서 서울의 부담 비율을 4.5%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률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시·도 부담률 5%보다 △0.5%p 감소된 4.5%이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2.25%씩 부담함.

○ 이에 금번 예산안의 2026년도 법정 전입금의 고교무상교육 경비는 서울시 총 무상교육경비(2,993억 1백만원)의 4.5%인 134억 6천 9백만원임.

다만 서울시는 2025년도 고교 무상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시키지 못하여 금번 2026년 예산안에 2025년도 하반기 무상교육 경비(36억 3천 9백만원)를 반영하였는바, 금번 예산안의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이 총 171억 7백만원으로 편성됨.

[표-18]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담비율	'26년 부담액	'26년 본예산 세입예산 편성	비고
광역	2.25%	6,734	10,373	- **(2025년) 3,639** + (2026년) 6,734 = 10,373백만원
기초	2.25%	6,734	6,734	- (2026년) 6,734백만원
합계	**4.5%**	**13,469**	**17,107**	

자료: 교육청 제출 자료

② 비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증감사유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광역자치단체	15,763	15,877	△114	△0.7	0	15,763	교육경비보조금감소
기초자치단체	11,162	11,340	△178	△1.6	0	11,162	
소 계	26,925	27,217	△292	△1.1	0	26,925	

○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49] 및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50]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재원을 편성하게 되는바,

금번 비법정이전수입은 서울시 전입금 157억 6천 3백만원과 자치구 전입금 111억 6천 2백만원 등 총 269억 2천 5백만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272억 1천 7백만원) 대비 △1.1%(△2억 9천 2백만원) 감액된 것임.

○ 비법정이전수입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조례상 전출금)은 입학준비금 153억 1천 3백만원,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관련 전입금 4억 5천만원 등 157억 6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입학준비금에 대한 지원금

---

4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①~⑦(생 략)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50)「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u>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u>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111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됨.

이 중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관련 전입금은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형 직업교육 체계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이 사업비를 1:1 매칭을 통해 부담하고 있는바, 금번 예산안에 서울시 전입금 4억 5천만원이 편성된 것임.

[표-19] 202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서울시) 지원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
계		15,763
일반교육지원사업		15,763
	입학준비금	15,313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지원	450
특별교육지원사업		0

○ 한편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2026 서울특별시 예산(안)」 중 보통세 수입은 23조 9,480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22조 6,330억 6천 7백만원) 보다 5조 26.9%(782억 6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가 금번 편성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157억 6천 3백만원)는 서울시 예산안 기준 보통세 수입의 0.07%에 불과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명시한 최대치(0.6%)의 11.0% 수준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519억 8천 4백만원), 2023년(275억 7천 9백만원), 2024년(159억 1천 4백만원), 2025년(158억 7천 7백만원) 2026년 편성액(157억 6천 3백만원)으로 매년 편성액이 감액되어 왔음.

- 이는 조례상 편성 가능한 최대치(보통세의 0.6%)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액 비율도 2022년도 51.3%에서 2026년도 11.0%로 △40.3%p나 하락한 상황임.

○ 이와 같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는 조례의 규정된 지원 기준(보통세의 0.6% 이내)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교육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법정 전입금인 교육경비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51]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표-20] 교육경비 보조금(서울시) 기준액 대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편성기준액 (보통세)	조례상 편성 가용액 (보통세 0.6%이내) (A)	의회심의 요청액 (교육경비 보조금) (B)	조례상 편성 가용액 대비 의회심의 요청액 비율 (C = B/A)
2022	16,880,579	101,283	51,984	51.3%
2023	18,355,853	110,135	27,579	25.0%
2024	18,443,450	110,661	15,914	14.4%
2025	18,869,824	113,219	15,877	14.0%
2026	23,948,089	143,689	15,763	11.0%

* 2026년 편성기준액: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기준

51)「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표-21] 비법정전입금(서울시) 최근 5년간(2022년 ~ 2026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대비증감	2025년도 대비 증감률
계				51,984	29,079	17,504	17,465	15,763	△1,702	△9.7
일반교육지원사업				46,786	27,304	15,914	15,877	15,763	△114	△0.7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			19,100	18,868	15,914	15,877	15,763	△114	△0.7
		1	학습준비물비 지원	-	-	-	-	-	0	0.0
		2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420	-	-	-	-	0	0.0
		3	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600	600	-	-	-	0	0.0
		4	입학준비금	17,080	17,268	15,914	15,502	15,313	△189	△1.2
		5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1,000	1,000	-	-	-	0	0.0
		6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지원	-	-	-	375	450	75	20.0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27,686	8,436	-	-	-	0	0.0
		6	화장실 리모델링	-	-	-	-	-	0	0.0
		7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	-	-	-	-	0	0.0
		8	유아교육 지원	-	-	-	-	-	0	0.0
		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	-	-	-	-	0	0.0
		10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	776	-	-	-	0	0.0
		11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	-	-	-	-	0	0.0
		12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 특별교실 구축	1,080	-	-	-	-	0	0.0
		13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	-	-	-	0	0.0
		14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7,300	-	-	-	-	0	0.0
		15	학교CCTV교체 지원	1,535	-	-	-	-	0	0.0
		16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	-	-	-	-	0	0.0
		17	미래형 교실 구축	940	-	-	-	-	0	0.0
		18	학교 체육관 건립	2,400	-	-	-	-	0	0.0
		19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2,100	-	-	-	-	0	0.0
		20	드론교육 기반확충	-	-	-	-	-	0	0.0
		21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346	-	-	-	-	0	0.0
		22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660	660	-	-	-	0	0.0
		23	소상공인 인식 개선 사업	-	-	-	-	-	0	0.0
		24	찾아가는 학교안전점검단	-	-	-	-	-	0	0.0
		25	학교보안관실 설치지원	-	-	-	-	-	0	0.0
		26	학교급식노후 조리기구 현대화사업	4,000	-	-	-	-	0	0.0
		27	지역사회 결합형 학교 지원	1,125	-	-	-	-	0	0.0
		28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	-	-	-	-	0	0.0
		29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 진흥 캠페인	500	-	-	-	-	0	0.0
		30	서울나래학교 주민·학부모 편익시설 설치	-	-	-	-	-	0	0.0
		31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사업	-	-	-	-	-	0	0.0
		32	학교 학습공간 시설개선 지원	2,000	-	-	-	-	0	0.0
		33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2,000	-	-	-	-	0	0.0
		34	대안교육기관 지원	-	7,000	-	-	-	0	0.0
특별교육지원사업				5,198	1,775	1,590	1,588	-	△1,588	△100.0

다) 기타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6,193	0.1	13,230	0.1	2,963	22.4	6,000	10,193

○ 금번 기타이전수입은 '도신초 학교 개축 비용에 대한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의 기부채납금' 37억 2백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원금'이 64억 9천 1백만원, '교육금고(농협) 약정 협력사업비 및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52]' 등이 60억 편성되어 2025년(132억 3천만원) 보다 29억 6천 3백만원 증액(22.4%)된 161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됨.

○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원금(△235,000천원)' 및 '교육금고(농협) 약정 협력사업비(△505,000천원)' 등이 2025년 보다 각각 감액되었으나 도신초 기부채납금이 순증 되었기 때문임.

[표-22] 기타이전수입 세부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금액	비율
도신초 기부채납	3,702,000	-	3,702,000	순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지원	6,490,543	6,725,027	△234,484	△3.5%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등	6,000,000	6,504,689	△504,689	△7.8%
합계	16,192,543	13,229,716	2,962,827	22.4%

52) 서울시교육청이 2024.7.25.에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농협)과 새로운 약정서를 체결하여 협력사업비를 매년 37억 5천만원씩 총 150억 지원받기로 함.

2) 자체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교수학습활동수입	1,534	0.0	1,511	23	1.5	1,534	0
행정활동수입	6,977	0.1	5,931	1,046	17.6	6,977	0
자 산 수 입	11,343	0.1	12,651	△1,308	△10.3	11,343	0
이 자 수 입	10,389	0.1	19,916	△9,527	△47.8	10,389	0
기 타 수 입	71,076	0.7	88,264	△17,188	△19.5	71,076	0
계	**101,319**	**1.0**	**128,273**	**△26,954**	**△21.0**	**101,319**	**0**

○ 금번 예산안의 자체수입은 1,013억 1천 9백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1,282억 7천 3백만원) 대비 21.0%(269억 5천 4백만원) 감액 편성됨.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교수학습활동수입'은 15억 3천 4백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15억 1천 1백만원) 대비 1.5%(2천 3백만원) 증액되었음.

- 이는 '선택적교육수입' 중 수익자 부담 단체급식비(△1천 8백만원)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기본적교육수입'인 무상교육 제외 대상 유아에 대한 수업료(1천만원)와 '선택적교육수입'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0개관의 수강료 수입 및 기타평생학습 수입(3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다음으로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으로 이루어진 '행정활동수입'은 69억 7천 7백만원 편성되었고, 2025년 본예산(59억 3천 1백만원) 대비 17.6%(10억 4천 6백만원) 증액 편성됨.

- 이는 토지 및 시설물(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등) 등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임.

○ 다음으로 '자산수입'은 113억 4천 3백만원으로 2025년(126억 5천 1백만원) 대비 △10.3%(△13억 8백만원) 감액됨.

- 이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유 토지를 매각한 수입(107억 4천 2백만원)이 2025년(120억 9천 9백만원) 대비 △10.3%(△13억 5천 6백만원)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임.

-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토지매각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분납 수입 이외에 2025년도에는 3건[53]의 추가 매각이 있었으나 2026년도에는 1건(노량진 8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토지매각)만 추가 매각됨에 따라 총 자산수입은 감액되었음.

[표-23]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토지매각 관련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기관	편성 금액	주요내용
본청	7,180,701	서울시와의 상호 회계간 재산 유상이관 협약에 따른 차액(청담고 부지) (10회중 4회차)
동부	6,085	사인 점유 토지 매각대금 분납(20회 중 19회)
서부	59,406	사인 점유 토지 매각대금 분납(10회 중 10회)
중부	27,881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토지매각 분납(5건)
중부	82,127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토지매각 분납(3건)
동작관악	3,386,288	노량진8구역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
계	10,742,488	

○ 한편 '이자수입'은 103억 8천 9백만원으로 2025년(199억 1천 6백만원) 대비 △47.8%(△95억 2천 7백만원) 감액 편성됨.

-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이자수입 산출 방식이 변경된 것이 원인인바, 정기예금이자의 경우 2025년도에는 결산 기준으로 2019년 ~ 2023년 이자 수입 평균액을 계상하였으나[54], 금번 예산안에는 2025년 1~8월까

53) 청담고 부지(71억 8천 1백만원), 도원초 부지(75억 8천 1백만원), 노량지8구역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41억 1천 1백만 원).
54)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저조하여 10년 평균치가 현재 이자수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2025년에는 2019년~2023년의 이자수입 평균을 본예산에 편성함.

지의 교육비특별회계 평균잔액(5,058억 2천 4백만원)에 2025년 9월 예금별 금리 평균[55]을 반영하면서 이자수입이 감액된 것임.

- 그리고 기타예금 이자의 경우에는 2025년 8월 수납액(1억 5천만원)에 2025년 9월~12월까지 예상 수납액(1억 2천 2백만원)[56]을 합한 2억 7천 2백만원을 금번 예산안에 계상함[57].

○ 이자수입은 향후 국내·외 경기 변화 및 통화·재정정책에 따른 금리를 추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과거 이자수입에 근거해 예산을 산출하고 있으며, 산출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적 기준 없이 매년 담당자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조 단위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할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자금 운용 관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마지막으로 '기타수입'은 '제제금수입(9억 6천만원)', '기타수입 등(697억 4천 2백만원)', '지난연도 수입(3억 7천 5백만원)' 등 총 710억 7천 6백만원으로 자체수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됨.

(단위 : 천원)

연도	예치금액(평잔)	이자율	이자발생액
2018	1,401,301	1.14~1.65	20,299
2019	1,044,522	1.17~1.66	14,975
2020	1,028,449	0.82~2.20	13,911
2021	759,900	0.65~1.38	6,265
2022	1,585,468	0.74~3.00	19,560
2023	1,264,478	1.99~4.05	44,866

55) 서울시교육청은 2029년 9월 정기예금 1개월 2.3%, MMDA 1.91%, MMT 2.0.8%의 평균 2.09%에 금리 하향 추세를 반영하여 2%로 반영했다고 밝힘.
56) 2025년 3월~6월까지 수납액
57)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

[표-24] 기타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내역	
		예산(안)(A)	본예산 (B)	금액	비율
제제금수입		959,378	828,847	130,531	15.7%
기타 수입등	그외수입	10,554,956	8,583,515	1,971,441	23.0%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51,004,125	59,591,665	△8,587,540	△14.4%
	보조금등반납금수입	8,183,384	18,870,716	△10,687,332	△56.6%
지난연도 수입		374,586	389,646	△15,060	△3.9%
계		**71,076,429**	**88,264,389**	**△17,187,960**	**△19.5%**

- ‘기타수입’ 중 ‘제제금수입(9억 6천만원)’은 2025년(8억 2천 9백만원) 보다 1억 3천 1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입 등(1억 5천 6백만원)이 전년도(1억 8천 2백만원) 보다 2천 6백만원 감액되었으나, 학원과태료(2억 6천 1백만원), 위약금(4억 8천만원), 연체료(5천 3백만원) 등이 전년도 보다 1억 4천 7백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표-25] 제제금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내역	
	예산(안) (A)	본예산 (B)	금액(A-B)	비율
계	**959,378**	**828,847**	**130,531**	**15.7%**
변상금	156,260	182,109	△25,849	△14.2%
위약금	479,771	456,026	23,745	5.2%
연체료	53,086	47,458	5,628	11.9%
과태료	260,500	143,254	117,246	81.8%
기타제재금수입	9,761	-	9,761	100.0%

- ‘기타수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기타수입 등(학교회계전출금 수입, 보조금등반납금 수입, 그외수입)’은 총 697억 4천 2백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870억 4천 6백만원) 대비 △19.9%(△173억 3백만원) 감액되었는바, 이는 ‘보조금등반납금수입(△106억 8천 7백만원)’

및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85억 8천 8백만원)'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임.

[표-26] 기타수입 등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내역	
	예산(안) (A)	본예산 (B)	금액(A-B)	비율
계	**69,742,465**	**87,045,896**	**△17,303,431**	**△19.9%**
그외수입	10,554,956	8,583,515	1,971,441	23.0%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51,004,125	59,591,665	△8,587,540	△14.4%
보조금등반납금수입	8,183,384	18,870,716	△10,687,332	△56.6%

3) 기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전년도이월금	0	0.0	13,525	△13,525	△100	0	0
금융자산회수	3,631	0.0	9,272	△5,641	△60.8	3,631	0
계	**3,631**	**0.0**	**22,797**	**△19,166**	**△84.1**	**3,631**	**0**

○ 금번 '금융자산회수(융자금원금회수)'는 36억 3천 1백만원으로 2025년(92억 5천 2백만원) 대비 △60.8%(△56억 4천 1백만원) 감액 편성됨.

- 이는 공무원 학자 대여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매년 12월에 공무원연금공단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다음 연도 부담금 예산이 확정되게 됨.

- 이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다음 연도 부담금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전전년도(2024년도)에 확정 통보 받은 부담금을 본예산(2026년도)에 편성하고 해당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는 융자금원금회수는 매년 정확하지 않은 세입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세입 항목을 본예산이 아니라 연말에 공무원연금공단의 예산 확정 통보 이후 정확한 부담금을 해당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전년도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았음.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제19조에[58] 따라 세계잉여금[59]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7조에[60]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음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당해 연도 세입에 이입하였으나 원칙적으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 왔다고 할 수 있는바, 금번 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58)「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금

59)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60)「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4) 내부거래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기 금 전 입 금	280,000	2.6	0	280,000	순증	280,000	0
계	**280,000**	**2.6**	**0**	**280,000**	**순증**	**280,000**	**0**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현재 설치·운용 중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안정화기금') 3,574억 4천만원 중 2천 8백억원을 편성함.**

- **현재 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항[61]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바, 금번 기금전입금은 제4조제3항제1호('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편성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금번 예산안 세입 규모와 교육비특별회계 과거 3년 세입재원 평균 금액(본예산기준)을 살펴보면,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10조 9,422억 7백만원으로 과거 3년 세입 재원 평균 금액(11조 6,182억 4천 3백만원)보다 감소(6,760억 3천 6백만원)되었는바, 금번 예산안에 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편성하는데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61)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② 생략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표-27] 교육비특별회계 과거 3년 세입 재원 평균 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2025년 평균(A)	2026년* (B)	(B-A)
본예산액	12,891,521	11,160,536	10,802,672	11,618,243	**10,662,207**	**△956,036**

* 2026년 세입액: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액 기준, 단 기금전입금 2,800억원 제외

- **아울러 기금전입금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4조제3항[62]에 따라 안정화기금의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기금의 2025년도 말 기준 적립액은 3,574억 4천만원, 금번 기금전입금은 2,800억원으로 적립액의 78.3%이므로 전입금 규모에도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28] 교육비특별회계 과거 3년 세입 재원 평균 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말 기준 적립액	적립금 총액의 80% 금액	기금전입금
금 액	357,440	285,951	**280,000**

62)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② 생략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 4. 생략

라. 세출예산안

[표-29] 세출예산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인건비		7,554,793	69.0	7,207,716	347,077	4.8
경상비	교육행정기관운영비	45,229	0.4	40,249	4,980	12.4
	학교운영비	979,497	9.0	970,666	8,831	0.9
	계	1,024,726	9.4	1,010,915	13,811	1.4
사업비	교육사업비	2,171,472	19.8	1,988,644	182,828	9.2
	시설사업비	163,449	1.5	558,698	△395,249	△70.7
	계	2,334,921	21.3	2,547,342	△212,421	△8.3
재무활동		7,459	0.1	8,525	△1,066	△12.5
예비비 및 기타		20,308	0.2	28,174	△7,866	△27.9
합계		10,942,207	100	10,802,672	139,535	1.3

○ 금번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조 9,422억 7백만원으로 2025년(10조 8,026억 7천 2백만원) 대비 1.3%(1,395억 3천 5백만원) 증액 편성됨.

- 증액된 주요 원인은 시설사업비(△3,952억 4천 9백만원)가 크게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3,470억 7천 7백만원), 교육사업비(1,828억 2천 8백만원)가 증액되었기 때문임.

○ 먼저 인건비는 7조 5,547억 9천 3백만원으로 2025년(7조 2,077억 1천 6백만원) 대비 4.8%(3,470억 7천 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사업비는 2조 1,714억 7천 2백만원으로 2025년(1조 9,886억 4천 4백만원) 대비 9.2%(1,828억 2천 8백만원) 증액 편성됨.

○ 경상비 중 기관운영비는 452억 2천 9백만원으로 2025년(402억 4천 9백만원) 대비 12.4%(49억 8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비 중 학교운영비는 9,794억 9천 7백만원으로 2025년(9,706억 6천 6백만원)

대비 0.9%(88억 3천 1백만원) 증액 편성됨.

○ 한편 시설사업비는 1,634억 4천 9백만원으로 2025년(5,586억 9천 8백만원) 대비 △70.7%(△3,952억 4천 9백만원) 크게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2025년에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화장실개선, 냉난방개선 등의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급식시설개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026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되었기 때문임.

○ 그리고 재무활동비(일시차입금관리 및 BTL 상환)는 74억 5천 9백만원으로 2025년(85억 2천 5백만원) 대비 △12.5%(△10억 6천 6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3억 8백만원으로 2025년도(281억 7천 4백만원) 대비 △27.9%(△78억 6천 6백만원) 감액 편성됨.

1)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공 무 원	4,839,780	44.2	4,678,041	161,739	3.5	4,839,780	0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1,326,844	12.1	1,221,899	104,945	8.6	1,326,844	0
사 립 학 교	1,388,169	12.7	1,307,776	80,393	6.1	1,388,169	0
계	**7,554,793**	**69.0**	**7,207,716**	**347,077**	**4.8**	**7,554,793**	**0**

○ 금번 예산안의 인건비는 7조 5,547억 9천 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10조 9,422억 7백만원)의 69.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도(7조 2,077억 1천 6백만원) 대비 4.8%(3,470억 7천 7백만원) 증액됨.

○ 인건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은 공무원(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보수 인상률(3.5%) 반영 및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부담률, 퇴직수당부담률, 퇴직수당 부담률 증액(1,617억 3천 9백만원)과 사립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인상율(3.5%), 교육공무직원 근무 일수 확대에 따

른 보수 증액분 및 기간제 근로자 각종 수당 증액분(980억 4천 3백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표-30] 인건비 증액 주요 사업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2026년 예산(안) A	2025년 본예산액 B	증감액 C=A-B
공무원인건비	공무원(교원,전문직,지방공무원) 인건비	4,839,779,902	4,678,040,978	161,738,924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823,428,387	725,385,246	98,043,141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282,360,366	1,202,877,205	79,483,161

○ 한편 연도별 인건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6조 7,348억 7천 8백만원, 2024년도 7조 956억 8백만원, 2025년도 7조 2,077억 1천 6백만원, 2026년도 7조 5,547억 9천 3백만원으로 최근 4년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은 2023년도 대비 12.2%(8,199억 1천 5백만원) 증액된 상황임.

○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인건비는 보수 인상율 및 교육공무직 등의 계약직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교육청의 주요한 재원인 교부금 등은 감소되는 상황으로 향후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 등 교육청이 가용할 수 있는 비경직성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31] 인건비 연도별 편성 현황 (2023년도~ 2026년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건비	공무원	4,496,371	34.9	4,609,045	41.3	4,678,041	43.3	4,839,780	44.2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927,005	7.2	1,165,491	10.4	1,221,899	11.3	1,326,844	12.1
	사립학교	1,311,502	10.1	1,321,072	11.9	1,307,776	12.1	1,388,169	12.7
계		**6,734,878**	**52.2**	**7,095,608**	**63.6**	**7,207,716**	**66.7**	**7,554,793**	**69.0**

2) 경상비(기관운영비 및 학교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45,229	0.4	40,249	4,980	12.4	45,229	0
학교 운영비	공 립	739,104	6.8	722,609	16,495	2.3	739,104	0
	사 립	240,393	2.2	248,057	△7,664	△3.1	240,393	0
	소 계	979,497	9.0	970,666	8,831	0.9	979,497	0
계		**1,024,726**	**9.4**	**1,010,915**	**13,811**	**1.4**	**1,024,726**	**0**

○ 금번 예산안의 경상비(기관운영비 및 학교운영비)는 1조 247억 2천 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10조 9,422억 7백만원)의 9.4%이며 2025년도(1조 109억 1천 5백만원) 대비 1.4%(138억 1천 1백만원) 증액됨.

○ 경상비 중 기관운영비는 452억 2천 9백만원으로 2025년도(402억 4천 9백만원) 대비 12.4%(49억 8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본청기관운영비'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 경비가 증액(39억 6백만원)되었기 때문임.

[표-32] 기관운영비 증액 주요 사업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액	2025년 본예산 대 비 증 감 액	증감비율
기관기본운영비	**본청기관운영비**	**6,983,396**	**3,077,060**	**3,906,336**	**127.0**
기관기본운영비	교육지원청기본운영비	10,624,189	10,110,324	513,865	5.1
기관기본운영비	평생교육기관기본운영비	14,531,799	13,969,527	562,272	4.0

○ 경상비 중 학교운영비는 9,794억 9천 7백만원으로 2025년도(9,706억 6천 6백만원) 대비 0.9%(88억 3천 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사립학교 운영비(△76억 6천 4백만원)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기본운영비(138억 1백만원) 및 개별교부운영비(26억 9천 5백만원)가 증액되었기 때문임.

- 학교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의해 공통경상운영비가 증액(64억원)되고, 목적성사업 정비 등으로 통합교부운영비가 증액(74억원)되었기 때문임.

- 반면 개별교부운영비는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가 설치되면서 '교과용도서구입 및 배부지원' 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101억 1천 7백만원)되었으나,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선임비용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 비용(67억 5천 6백만원), 목적사업비 정비로 특수학급방과후활동지원비(48억 3천만원), 학교공기청정기유지관리비(9억 4천만원) 등이 증액되면서 총액이 증가됨.

3)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교 육 사 업 비	2,171,472	19.8	1,988,644	182,828	9.2	1,640,348	531,124

○ 금번 예산안의 교육사업비는 2조 1,714억 7천 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10조 9,422억 7백만원)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도(1조 9,886억 4천 4백만원) 대비 9.2%(1,828억 2천 8백만원) 증액됨.

○ 교육사업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은 만 3세~5세 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지원하는 유아학비(424억 5천 2백만원),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운영지원(381억 4천 4백만원), 유·초·중·고등학교 등의 급식 지원을 위한 무상급식(337억 8천 4백만원), 2026년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327억 3천 6백만원), 초·중·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과용도서 등을 지원하는 교과용도서지원(223억 5천 8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표-33] 교육사업비 증액 주요 사업

(단위: 천원)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액	2025년 본예산 대비증감액	증 감 비 율
선 거 관 리	선 거 관 리	37,111,484	4,375,477	32,736,007	748.2%
교 과 서 지 원	교 과 용 도 서 지 원	138,752,478	116,394,137	22,358,341	19.2%
누리과정지원	유 아 학 비	282,439,560	239,988,000	42,451,560	17.7%
늘봄학교운영	늘봄학교운영지원	59,816,002	21,671,835	38,144,167	176.0%
학교급식운영	무 상 급 식	448,598,405	414,814,593	33,783,812	8.1%

○ 먼저 유아학비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교육부의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에 의해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만 3세~ 4세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금번 예산안에 만 5세 및 만 4세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새롭게 편성하였기 때문임.

○ 다음으로 늘봄학교운영지원 증액은 동 사업 중 '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비'가 크게 증액(449억 3천 9백만원)된 것이 주요 원인인바, '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비' 사업은 '맞춤형 프로그램운영비', '안전관리비', '학급운영비', '간식 등 운영여건 개선비' 등으로 금번 예산안에 총 570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운영지원 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이 동 사업 중 '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비(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가 2025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50% 편성되었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표-34] 2026년도 늘봄학교프로그램 운영비

(단위: 천원)

구분		공립	국립	사립	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 영 비	기 본 운 영 비	42,452,424	133,700	267,400	42,853,524
	위탁방식에따른지원금	7,429,968	23,400	46,800	7,500,168
	소 계	49,882,392	157,100	314,200	50,353,692
안 전 관 리 비		4,762,800	16,800	42,000	4,821,600
학 급 운 영 비		221,130	-	-	221,130
간 식 등 운 영 여 건 개 선 비		1,650,000	-	-	1,650,000
합 계		104,527,584	173,900	356,200	57,046,422

자료: 교육청 제출

- 그러나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의 2025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의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교육청(108억 2천 9백만원), 특별교부금(108억 2천 9백만원) 총 216억 5천 8백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본예산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503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의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디지털혁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 377억 7천 9백만원까지 포함한 금액인바,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2025년도 특별교부금 미지급액 이외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더욱이 현재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 관련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동 사업의 취지와 동일한 '온동네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지원 사업 계획[63]'을 2025년 11월에 수립하고 이미 교육청에 관련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1,430억원) 교부에 대한 공문을 시행한 상황인바[64], 2026년도에 동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처럼 현재 동 사업 예산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까지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교육부에서 동 사업과 동일한 취지의 사업예산을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별교부금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25년도 본예산(216억 5천 8백만원) 대비 232.5%나 증액하여 2026년도 본예산(503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한 것인바, 동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63)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2025.11.). 2026년 제1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온동네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계획'

64)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2025.11.5.). 2026년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온동네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계획 안내.

[표-35]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세세부사업	본예산 편성			1차 추경에 편성			계
	늘봄학교운영지원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			
구분	교육청	교육부(특교)	소계	교육청	교육부(특교)	소계	
2025	10,829,160	10,829,160	**21,658,320**	18,889,632	18,889,632	37,779,264	59,437,584
2026	50,353,692	-	**50,353,692**	-	-		50,353,692

자료: 교육청 제출

○ 다음으로 무상급식비 증액(337억 8천 4백만원)은 식품비 및 관리비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65] 각각 5.1%, 3.6% 증액하고,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률 2.9%를 반영하여 증액하며, 제철 과일 등의 간식비를 위한 1식 단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임.

- 물론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식품비 및 인건비 등을 증액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나, 조리종사자 및 급식보조인력의 인건비의 경우 교육부의 2026년도 공공부분 협약임금 인상률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률(2.9%)을 반영하여 증액하였는바,

  이는 협약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변경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바, 금번 본예산에 굳이 임금 인상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임[66].

○ 한편 제24대 교육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비 증액(327억 3천 6백만원)은 「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6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65) 식품비: 서울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3개년 평균 상승률
관리집: 서울의 총지수 3개년 평균 상승률

66) 교육공무직원인건비의 경우에도 2025년도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라 금번 예산안에 2024년 단체협약 인건비를 적용하였음.

67)「공직선거법」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 생략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

관리 준비 및 실기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며,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산안에 동 사업비 편성은 필요하다 할 것임[68].

○ 마지막으로 교과용도서지원 증액(223억 5천 8백만원)은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따라 교과용도서 단가가 상승된 것이 주요 원인임.

○ 이처럼 금번 예산안의 전체예산 대비 교육사업비 비율(19.8%)은 지난 3년간 전체 예산 대비 평균 교육사업비 편성 비율(18.5%)과 비교했을 때 1.3%p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통합교육재정안정과기금의 전입과 시설사업비 대부분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함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확대된 것임.

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략)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③~⑤ 생략

68) ▪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건 집행액 및 집행잔액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총 지출액 (A + B)	서울시선관위 (A)			서울시 및 자치구 (B)
			준비 및 실시경비	보전경비	소계	준비 및 실시경비
2024	요구액	58,875,008	47,125,578	9,417,747	56,543,325	2,331,683
	집행액	43,956,734	35,078,530	7,523,542	42,602,071	1,354,662
	집행잔액	14,918,274	12,047,048	1,894,205	13,941,253	977,021

▪ 2026년도 선거관리경비 산출 기준 및 2025년도 선거관리경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납부 요청기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본예산
	준비 및 실시경비	보전비용	선거소청·소송경비	합계	계도·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경비
서울시 선관위	25,398,963	10,950,974	2,965	36,352,902	4,375,477
서울시 자치구	758,582	-		758,582	
계	25,398,963	0	0	25,398,963	2,025

[표-36] 최근 4년간 교육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전체예산(A)	교육사업비(B)	전체예상 대비 교육사업비 비율
2023	12,891,521	2,349,180	18.2%
2024	11,160,536	2,082,880	18.7%
2025	10,810,253	2,033,949	18.8%
평균 (2023~2025)	11,620,770	2,155,336	18.5%
2026	10,942,207	2,171,472	19.8%

○ 다만 금번 예산안의 교육비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아학비 및 교과용도서지원 사업 등의 경우 국가 시책 반영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 및 무상급식 사업 등과 같이 굳이 본 예산에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음.

○ 한편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사업비 내에 정책사업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4,104억 2천 8백만원)', '교육복지(9,413억 7천 4백만원)', '보건급식(4,783억 1천 8백만원)', '평생교육(304억 2백만원)', '교육행정일반(2,411억 5천 6백만원)', '인적자원운용(697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사업 등은 유·초·중·고등학교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교육행정일반'의 경우, 선거관리, 시설사업운영, 정보보안관리, 재무회계관리 등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히려 기관운영 경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들이 교육사업비에 편성됨으로써 전체 예산 대비 교육사업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바,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사업비가 아닌 기관운영비 등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인적자원운용'의 경우에도 세부사업들이 교직원들의 인사 및 연수 운영 관련 사업인바, 학생들이 아닌

교직원 인사·연수 사업을 교육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37] 교육사업비에 편성된 '교육행정일반' 사업

구분	정책사업	세부사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교육사업비	교육행정일반	선거관리, 시설사업운영, 정보보안관리, 재무회계괏리 등	241,155,959	163,848,940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운영지원, ICT활용교육지원 등	410,428,387	442,693,229
	교육복지	늘봄학교운영, 누리과정 지원, 교과서지원 등	941,374,447	844,876,952
	보건급식	학교급식 운영 등	478,317,831	445,092,218
	평생교육	평행교육시설운영 등	30,402,207	27,651,976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복지지원, 교원인사관리 등	69,793,300	64,480,342

4)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시설사업비	학교신증설	51,068	0.5	65,615	△14,547	△22.2	47,366	3,702
	일 반 시 설	83,976	0.8	463,914	△379,938	△81.9	70,976	13,000
	급 식 시 설	28,405	0.2	29,169	△764	△2.6	28,405	0
계		**163,449**	**1.5**	**558,698**	**△395,249**	**△70.7**	**146,747**	**16,702**

○ 금번 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1,634억 4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10조 9,422억 7백만원)의 1.5%에 불과하며 2025년도(5,586억 9천 8백만원) 대비 △70.7%(3,952억 4천 9백만원)로 크게 감액됨.

○ 이와 같이 금번 예산안의 시설사업비가 크게 감액된 주요 원인은 기존에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노후시설개선, 그린스마트스쿨, 급식시설개선, 학교공간재구조화-꿈담)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되었기 때문임.

-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화장실개선, 냉난방개선, 방수공사 등의 노후시설개선에 3,620억 8천 5백만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1,212억 6천 1백만원, 급식시설개선에 415억 5천만원, 학교공간재구조화(꿈담-디자인혁신사업)에 102억, 총 5,350억 9천 5백만원이 시설사업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동 사업 예산(4,045억 1천 1백만원) 대비 32.3%(1,305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표-38]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본예산 (B)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A-B)
계		**535,095,244**	**404,511,167**	**130,584,077**
노후시설개선	화장실개선	61,652,145	51,469,266	10,182,879
	전기시설개선	11,894,473	10,537,385	1,357,088
	냉난방개선	40,293,192	29,890,220	10,402,972
	창호개선	20,499,410	6,752,550	13,746,860
	외벽개선	15,116,692	8,210,408	6,906,284
	소방시설개선	2,995,651	10,898,829	△7,903,178
	방수공사	33,586,734	7,069,383	26,517,351
	바닥개선	24,691,250	13,973,931	10,717,319
	도장공사	7,117,402	2,397,543	4,719,859
	외부환경개선	8,236,368	4,998,763	3,237,605
	기타시설사업	52,522,201	114,132,293	△61,610,092
	장애인편의시설	10,319,816	9,682,000	637,816
	안전관리(샌드위치판넬제거)	5,997,394	2,138,844	3,858,550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19,310,957	10,122,436	9,188,521
	안전관리(정밀점검)	21,152,575	17,830,433	3,322,142
	안전관리(석면제거)	26,698,305	17,530,400	9,167,905
	소계	**362,084,565**	317,634,684	44,449,981
학교공간재구조화		**10,200,000**	10,200,000	-
급식시설개선		**41,550,078**	12,205,540	29,344,538
그린스마트스쿨		**121,260,601**	64,470,943	56,789,658

○ 이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5,350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한 교육청 시설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총 6,985억 4천 4백만원인바,

실질적으로 시설사업비는 2025년도(5,586억 9천 8백만원) 대비 25.0%(1,398억 4천 6백만원) 증액된 상황임.

[표-3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시설사업 예산을 포함한 시설사업비

(단위 : 백만원, %)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금액		금액	비율
시설 사업비	학교신증설	51,068	65,615	△14,547	△22.2
	일반시설	83,976	463,914	△379,938	△81.9
	급식시설	28,405	29,169	△764	△2.6
	소계	163,449 (698,544)	558,698	△395,249 (139,846)	△70.7 (25.0)

※ ( )안의 수치는 환경개선기금 시설사업비 5,350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하였을 때의 예산임

○ 이와 같이 금번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대비 크게 감액(△70.7%)된 것으로 보이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5,350억 9천 5백만원)를 포함하였을 경우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오히려 25% 증가한 상황인바, 교육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기금 예산 활용에 의해 시설사업비 역시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의 시설사업비 지출 규모는 2025년도 말 동 기금 조성액(8,862억 6천 4백만원) 대비 **74.4%(6,459억 2천 9백만원)**에 이르는 수준임[69].

6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액 대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25년도 말 조성액(a)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 말 조성액 (d=a+b-c)
	재원	수입계획(b)	지출계획(c)	
868,263,523	합 계	12,171,660	645,929,196	234,505,987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12,171,660		

- 이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되지 않고 기금 회계에서 교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도에 시설사업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폭 감액하고 대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시설사업비를 대신 편성한 것은 향후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시설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보유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더욱이 현재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2,800억원) 등으로 2025년도 보다 1,395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상황이며, 이에 교육사업비 등 주요 사업은 전년도 대비 모두 증액된 상황에서 시설사업비만 △70.7% 감액한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의 균형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보여짐.

- 아울러 현재 시설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70]은 2026년 예산 편성 이후에도 당초 계획된 물량의 50%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앞으로 화장실 개선은 2,213억원, 급식시설은 201억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4,489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며, 학교시설 안전과 관련된 석면 해체 사업(1,218억원),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1,615억원), 샌드위치판넬 해소 사업(146억원) 등의 사업 예산도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사업별로 시급성 및 장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사업 중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할 사업들과 기금으로 사용해야 할 사업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 및 교육환경개선기금 지출액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70)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개선 사업 중 냉난방개선, 화장실개선 등 11개 사업을 통합하여 3개년(2024년~2026년)간 추진하는 사업임.

[표-40] 교육환경개선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억원)

번호	구분	2024~2026 총소요액 (A)		2024~2025 예산액 (B)		2026 본예산(안) (C)		향후 소요액 (D=A-B-C)	
1	냉난방	1,040	100%	683	66%	295	28%	**62**	**6%**
2	방수	495	100%	262	53%	215	43%	**18**	**4%**
3	소방	200	100%	200	100%	-	-	**-**	**-**
4	전기	136	100%	85	63%	13	10%	**38**	**28%**
5	화장실	3,740	100%	1,003	27%	524	14%	**2,213**	**59%**
6	급식시설	313	100%	51	16%	61	19%	**201**	**64%**
7	창호	852	100%	169	20%	99	12%	**584**	**69%**
8	바닥	1,137	100%	245	22%	207	18%	**685**	**60%**
9	도장	298	100%	62	21%	57	19%	**179**	**60%**
10	외벽	752	100%	188	25%	55	7%	**509**	**68%**
11	외부환경	282	100%	93	33%	61	22%	**128**	**45%**
계		**9,245**	**100%**	**4,972**	**33%**	**3,552**	**17%**	**4,489**	**50%**

[표-41] 학교시설 안전 관련 사업 집행 현황

사업명	구분	2026년 (본예산 예정액)	2027년 이후	계
학교석면	면적	194,173㎡	404,563㎡	598,736㎡
	소요예산	266억	1,218억	1,484억
드라이비트	동	44동	391동	435동
	소요예산	193억	1,615억	1,808억
샌드위치패널	동	44동	391동	435동
	소요예산	193억	1,615억	1,808억

5) 재무활동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일시차입금관리	432	0.0	575	△143	△24.9	432	0
B T L 상 환	7,027	0.1	150	6,877	-	7,027	0
기 금 전 출 금	0	0.0	7,800	△7,800	△100	0	0
계	**7,459**	**0.1**	**8,525**	**△1,066**	**△12.5**	**7,459**	**0**

○ **금번 예산안의 재무활동은 74억 5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10조 9,422억 7백만원)의 0.1%이며 2025년도(85억 2천 5백만원) 대비 △12.5%(10억 6천 6백만원) 감액됨.**

○ **감액된 원인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BTL)[71] 준공에 따라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BTL 상환비는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에 기금전출금이 발생하지 않고 일시차입금도 △24.9%(1억 4천 3백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임.**

- **일시차입금의 경우 일시 차입 이율 하락[72]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차입 자금은 2025년도 1,500억원에서 2026년도 1,600억원으로 100억원이 증액됨.**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73], 현재 동 기금에 적립금(1,041억 8천 5백만원)이 예치되어 사용할 수 있는바, 단기간 재정 결손으로 은행으로부**

---

71) 금호여중, 신화중, 청량중, 수유초, 유현초

72) 2025년도 3.5%, 2026년도 2.5%

7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②(생 략)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터 1,600억원의 일시 차입이 필요한지 의문임.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도에도 일시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5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감액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예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차입금 예산 편성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6) 예비비 및 기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예비비 및 기타	20,308	0.2	28,174	△7,866	△27.9	20,308	0

○ 금번 예산안의 예비비 및 기타는 203억 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10조 9,422억 7백만원)의 0.2%이며 2025년도(281억 7천 4백만원) 대비 △27.9%(78억 6천 6백만원) 감액됨.

○ 감액된 원인은 상도유치원 이전 완료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건물 보증금 반환 및 서울신창초등학교 주차장 사업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환금이 3억 8백만원 증액되었으나 예비비가 △81억 6천 9백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74]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74)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금번 예산안의 예비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금번 예산안의 예비비 편성액은 200억원으로 예산 총액(10조 9,422억 7백만원) 대비 0.18%에 해당되는 것이며, 2025년도 예비비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보다 감액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42]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A)	예비비 편성액(B)	편성률(B/A)
2023	13,785,863	20,000	0.15%
2024	12,620,352	20,000	0.16%
2025	12,045,874	31,169	0.26%
2026	10,942,207	20,000	0.18%

라. 세입 · 세출 주요 검토의견

1) 이전수입 확보 문제

○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세입 편성은 2026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증가[75] 및 국세 증대 예측[76]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전체 예산의 52.3%) 보통교부금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인 증액교부금도 2025년 8월 26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77]에 따라 금번 예산안에 순증 되었으나 개정 조항에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1000분의 475'에서 '1000분의 475 <u>이내</u>'로 개정됨에 따라 금번 예산안에 교육부는 2026년도 총 고교무상교육 경비의 30%만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한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이전에 국가가 지원했던 고교무상교육 경비보다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음.

---

75) 2026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기관별 전망

구 분	전망시점	2025년(p)	2026년(p)
정부	2025. 8. 22.	0.9%	1.8%
한국은행	2025. 8. 28.	0.9%	1.6%
국회예산정책처	2025. 9. 30.	1.0%	1.9%
KDI	2024. 8. 12.	0.8%	1.6%
IMF	2025. 10. 14.	0.9%	1.8%
OECD	2025. 9. 23.	1.0%	2.2%
현대경제연구원	2025. 9. 12.	1.0%	1.9%

76)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5 NABO 전망(A)	2026		
		NABO 전망(B)	전년 대비 (B-A)	
			증감액	증감률
국세수입	372.3	396.1	23.8	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10.).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77)「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5. 8. 26][법률 제21029호, 2025.8.26., 일부개정」
제14조 삭제 <2025. 8. 26.>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부 칙 <법률 제21029호, 2025. 8.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u>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있어서도 지방세 증대 예측에 따라 법적으로 전출할 수 밖에 없는 법정전입금은 증액되었으나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분은 2027년 1월 1일로 소멸될 예정이며[78], 현재 시도세 전입금 10% 폐지와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79] 향후 법정전입금 확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 더욱이 비법정이전수입은 해마다 감소 추세로 금번 비법정이전수입 규모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상[80] 편성 가용액의 11.0%에 불과함.

○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 세입예산은 기금전입금에 의해 전년도 보다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교육청 예산의 96.3%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이전수입은 감액되거나 향후 감액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 편성에서는 기금(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을 통해 이와 같은 세입 감소 상황에 대응하였으나, 2026년도말 통합교육재정안정기금 조성액은 1,041억 8천 5백만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3,574억 4천만원) 대비 △70.9%(△2,532억 5천 5백만원) 감액됨[81].

---

78) 「지방세법」[시행 2025.1.1.][법률 제20630호, 2024.12.31.,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u>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u>,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79) 서울특별시의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2025.10.20.,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80)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u>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u>
② ~ ④ 생략

81)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5년도말 조성액(a)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357,439,983	26,745,154	280,000,000	104,185,137	-	104,185,137
교특회계전입금	332,000,000	-	280,000,000	52,000,000	-	52,000,000
이자수입	25,439,983	26,745,154	-	52,185,137	-	52,185,137

- 또한 2026년도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도 2,345억 6백만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8,682억 6천 4백만원) 대비 △73.0%(△6,337억 5천 8백만원) 감액된 상황인바[82],

향후 세입 확보 수단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확보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기금 활용 규모 적정성 문제

○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기금(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통교부금 약 4,000억원 감액 및 보수 인상률에 따른 인건비 약 3,000억원 증액이 주요 이유라고 제시함.[83]

○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보통교부금 감액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해 살펴보면, 금번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예산안은 5조 7,241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6조 1,231억 8천 4백만원) 대비 △3,989억 8천 6백만원(△6.5%) 감액되고,

인건비는 7조 5,547억 9천 3백만원으로 2025년도(7조 2,077억 1천 6백만원) 대비 3,470억 7천 7백만원(4.8%) 증액되어 총 7,460억 6천 3백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임.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0

82)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25년도 말 조성액(a)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 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868,263,523	12,171,660	645,929,196	234,505,987	-	234,505,987

83)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2025.10.13.).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관련 보고'

억원을 전입하고, 시설사업비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5,351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8,151억 9천 5백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임.

○ 그러나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나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법정전입금 등은 증액되면서 내부거래(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를 제외한 총세입 감소액은 △1,480억 4천 6백만원으로, 인건비 증액분(3,470억 7천 7백만원)[84]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세입 감소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한 필요 예산은 4,875억 4천 2백만원 수준임.

-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이와 같이 실제 필요 예산(4,875억 4천 2백만원)보다 3,276억 5천 3백만원 증액(67.2%)된 8,151억 9천 5백만원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한 상황임.

○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기금 사용 규모에 대해 보통교부금 감소 및 인건비 증액 이외 교육부의 기금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향후 기금 보유액 만큼 교부금이 감액되거나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여 기금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음[85].

-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아직 교육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2024년 시도교육청 예산과장과 교육부 회의자료에 근거하는 것이며 회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부 의견은 기금을 무조건 소진하라는 의견이라기 보다 필요 최소 한도만 보유하라는 의견으로 사료됨[86].

- 또한 기금 보유액 만큼 교부금을 감액한다는 것도 향후 기준재정수입에 기금보유액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 예정하겠다는 의견인바,[87] 금번

---

84) 인건비도 매년 불용액이 500억 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6년도에도 인건비 예산안액(3,470억 7천 7백만원) 보다는 예산이 감액될 것인바, 인건비 증가로 인한 필요예산 4,875억 4천 2백만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예측됨.
- 2025년(예상): 584억 6천 1백만원, 2024년도(결산): 650억 4천 8백만원, 2023년도(결산): 670억 8백만원

85)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2025.10.13.).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관련 보고'

8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24.7.31.). 시ㆍ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25.6.).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87) 2024년 회의 이후 2025년도 2026년도 모두 기준재정수입액에 기금보유액은 반영되지 않았음.

본예산안에 보유 기금의 70% 이상을 소진할 만큼 재정 감소가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43]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및 교육부 회의 내용

② (효율성 제고) 방만한 재정운용 지적 → 재정운용 효율화 필요 1) (이·불용 최소화) 시설사업 투자 등과 관련하여, 연중 소화 가능한 물량만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이월·불용 등 미집행 최소화 노력 2) **(기금적립금 적극 활용) 비법정전출금 축소, 지방교육재정 잉여 지적 등의 원인이 되는 기금적립금, 필요최소한도만 보유 요청** **※ 향후 기준재정수입에 기금보유액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 검토 예정** 3) (현금성복지 등 최소화) 현금성복지, 교직원 무상대출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비효율성을 대표하는 프레임으로 작용, 최소화 필요

마. 성과계획서(안)에 대한 검토

1) 총론

○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이하 '성과계획서')은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88] 및 제44조의2제1항[89]에 따라 제출된 것임.

○ 이와 같은 성과계획서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 등을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다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사업 경비가 아닌 세출예산 사업과 법령이나 업무 특수성 등으로 대외 공개가 곤란한 사항 등을 제외 가능함.[90]

○ 금번 성과계획서는 2026년도 110개 세부사업 중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 19개를 제외한 91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2조 2,803억 7천 8백만원)은 예산안 총액(10조 9,422억 7천만원) 대비 20.8%인 2조 2,803억 7천 8백만원으로, 2025년도(2조 5,264억 8천 5백만원) 보다 2,461억 7백만원(△9.7%)이 감소하였음.

---

88)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9)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14. (생략)

90) 교육부(2025.8.).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64페이지.

[표-44] 2026년 성과계획 대상 사업 수 예산액

(단위: 개, 천원)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단위과제수	성과지표수	예 산 액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5	15	85	81	2,280,378,106	2,526,484,640	△246,106,534

※ '26년도 110개 세부사업, 10,942,206,674천원 중 성과관리 비대상은 19개 8,661,828,568천원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성과계획서에 5개 전략목표와 15개 성과목표 및 85개 단위과제, 이에 따른 81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음.

[그림-1]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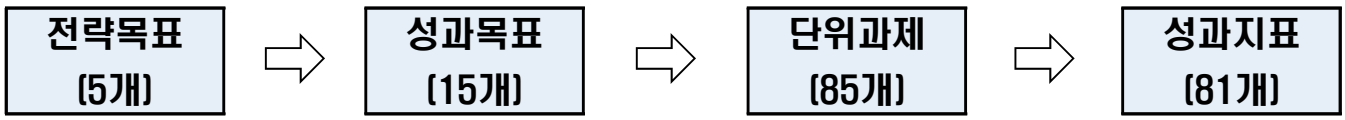

2) 성과계획서의 구조

○ 교육부의「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는 교육청의 임무와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성과목표**는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또는 **성과목표와 단위과제간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단기간(연간)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림-2] 성과계획 목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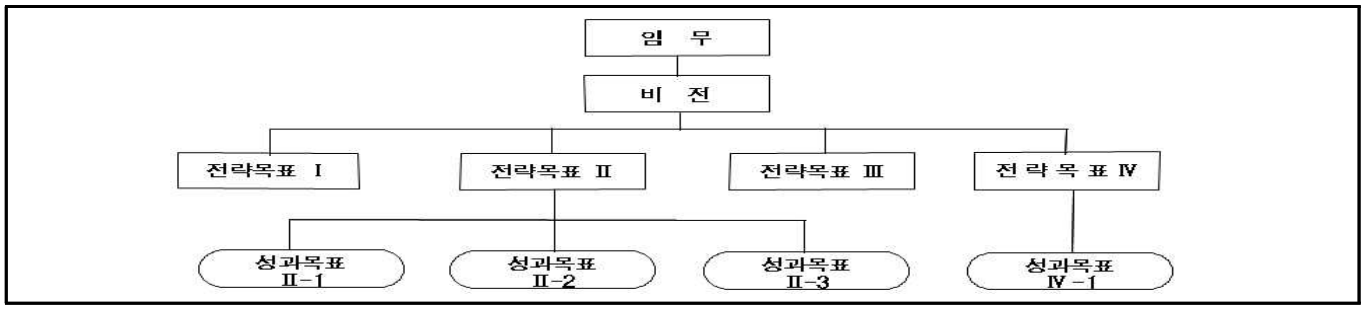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5.8.).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165페이지.

○ 그리고 **단위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되는바, **세부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부사업과 1:1 또는 1:N이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성과목표별로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지표수는 3개 내외로 하고 두 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함.

- 또한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지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정지표 및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할 수 있음.

- 즉, 사업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한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표-45] 지표별 개념 및 특성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예: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출처: 교육부(2025.8.).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168페이지.

○ 이와 같이 성과계획서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성과목표는 단기간(연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3) 성과계획서 검토

○ 성과목표는 단기간(연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되고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성과목표를 살펴보면, ‘교육기회보장(Ⅰ-3)’, ‘미래를 위한 주도적 역량 증진(Ⅱ-1)’,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 강화(Ⅱ-4)’, ‘누구나 존중받는 학교자치 실현(Ⅲ-3)’ ‘건강하고 평화로운 학교조성(Ⅳ-1)’, ‘자율적 조직문화를 통한 현장 지원(Ⅴ-2)’ 등 연간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성과목표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이에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들이 성과목표의 목적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Ⅱ-4.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 강화’의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국제공동수업 참여 학교 수’, ‘생태전환교육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2가지인바, 이 두 가지 지표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 강화’라는 성과목표의 목적이 측정되어질 수 있는지 의문임.

○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성과계획서 체계는 성과목표가 단기간(연간)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며, 이는 전략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지표와의 연계성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성과계획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성과목표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목표 지표별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표-46]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전략목표명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명
Ⅰ.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	Ⅰ-1. 기초학력향상	① 유치원 교육과정 수업지원사업만족도
		② 자유학기 연수실적
		③ 전국연합학력평가 학교 참여율
		④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양화· 특성화 학교 비율
		⑤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지원대상 학교 확대
		⑥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율 및 만족도
		⑦ 서울학습진단 성장센터 심층진단 지원율
		⑧ 중등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⑨ 특수교육과정 및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누적 이수율
		⑩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율
		⑪ 특수학급 여건 개선
	Ⅰ-2. 교육격차 해소	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율
		② 지역교육센터의 교육복지 일반학교 지원율
		③ 교육취약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율
		④ 초중학교 무상교과용도서 재고율(하향지표)
		⑤ 학급당 적정 학생수(하향지표)
	Ⅰ-3. 교육기회보장	①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 대상 다문화(이중)언어강사 배치율
		② 다문화학생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율
		③ 학업지속 프로그램 참여자 수
		④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율
		⑤ 사립유치원 순세계잉여금 감소율
		⑥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 참여율
		⑦ 방송통신중·고 인터넷 콘텐츠 활용 만족도
소 계(23개 지표)		
Ⅱ.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교육	Ⅱ-1. 미래를 위한 주도적 역량 증진	①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률
		② AI맞춤형교수 학습플랫폼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서비스 생태계 조성률
		③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지원율
		④ 개인정보 암호화 및 현장지원율
		⑤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율
		⑥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⑦ 수업 개선 중심 교사 학습공동체 수
		⑧ 외국어교원 역량 강화
		⑨ 2026'생각을 키우는 교실 실천연구팀' 참여율 및 만족도
		⑩ 자체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및 학술적 기여도 평가
		⑪ 나이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지원 노력
		⑫ 창의융합형 과학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제고
		⑬ 학생교육원 시설 이용률
	Ⅱ-2.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강화	① 교육(지원)청 주관 역사교육 프로그램 교원.학생 만족도
		② 역사교육자료센터 탑재 콘텐츠 증가율
	Ⅱ-3. 다양한 공교육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	① 방과후 프로그램(맞춤형,선택형교육, 톨봄교실) 이용 학부모 만족도
		② 혁신학교(혁신미래학교) 성장 지원
		③ 학생 1인당 진로체험 참여 횟수
		④ 직업계고 교원 연수 이수율

전략목표명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명
		⑤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성과 발표(영상 제작 포함) 참여 비율
		⑥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⑦ 학생건강체력 저체력학생 비율(하향지표)
	Ⅱ-4.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 강화	① 국제공동수업 참여 학교 수
		② 생태전환교육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소 계(24개 지표)		
Ⅲ.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Ⅲ-1. 함께하는 학교자치 실현	① 학생자치참여예산제 학생회장 공약 사항 이행 및 학생 제안 사업 반영률
		② 학교평가계획의 학교교육계획 포함률
	Ⅲ-2. 시민이 참여 하는 학교자치 실현	① 지역연계 학습일 운영 만족도
		② 자료대출 및 프로그램 참여율
		③ 학교시설 개방률
	Ⅲ-3. 누구나 존중 받는 학교자치 실현	① 심리상담프로그램 참여도
		② 학생(노동)인권교육 학교 참여율
		③ 수요자 맞춤 학습방식 다양화 비율
	Ⅲ-4. 교육활동 중심 의 학교자치 지원	① 학습연구년 운영 만족도
		②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만족도
소 계(10개 지표)		
Ⅳ.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Ⅳ-1. 건강하고 평화로운 학교 조성	① 심리정서 위기학생 상담활동
		②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2차 연계율
		③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학생 예방교육 및 교원 컨설팅·연수 지원
		④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의 소송, 행정심판 직접(단독) 수행 비율
		⑤ 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 만족도
		⑥ 과대학교 학교보건지원강사 운영 만족도
		⑦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운영 만족도
	Ⅳ-2.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①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확대
		② 식기류 렌탈 세척 사업 지원 확대율
		③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조성지원 만족도 및 지원율
소 계(10개 지표)		
Ⅴ.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	Ⅴ-1. 공감과 소통을 통한 현장지원	① 보도자료 언론매체 반영률
		② 주요 매체별 홍보 건수
		③ 콜센터 운영성과 지수
		④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추진율
		⑤ 학부모 사어버 참여자 수 증가 비율
		⑥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건수
		⑦ 신규채용 교육공무직원 직무적응 교육훈련 이수율
	Ⅴ-2. 자율적 조직 문화를 통한 현장 지원	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②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이용률 제고
		③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④ 중요기록물 DB 구축률
		⑤ 주민참여예산사업 참여 만족도
		⑥ 불법 사교육 및 공교육 저해요인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도·감독실시건수
		⑦ 사학기관 운영평가 노력지표 평가결과 향상도
소 계(14개 지표)		
합 계(81개 지표)		

○ 한편 성과지표의 실적 및 목표치를 살펴보면,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률’와 같이 스마트기기가 100% 보급되고 나면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없는 지표가 있으나, 성과지표의 대부분은 측정산식이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등 사업 운영을 통해 매년 목표치가 상승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됨.

- 실제 ‘지역연계학교운영 만족도’의 경우 2024년 및 2025년도에 목표치(2024년:100%, 2025년 100.2%)보다 실적(2024년:104%, 2025년 102%)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목표치(100.5%)는 2024년 및 2025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음.

[표-47] ‘지역연계학교 운영 만족도’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24	’25	’26	’27	’28	
① 지역연계학교 운영 만족도	0.4	목표	100%	100.2%	100.5%	100.5%	100.5%	(당해년도 지역연계학교 만족도/전년도 지역연계학교 만족도)×100
		실적	104%	102%	-	-	-	

- 또한 ‘콜센터 운영성과 지수’도 측정산식이 ‘(만족도 × 0.5) + (통화성공률 × 0.3) + (직접처리율 ×0.2)’로 매년 상승시킬 수 있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및 2025년도에 목표치(2024년:95.4%, 2025년: 95.5%)보다 실적(2024년:96.5%, 2025년: 96.5%)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95.5%), 2027년(95.6%), 2028년(95.6%)목표치를 2024년 및 2025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음.

[표-48] ‘콜센터 운영성과 지수’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24	’25	’26	’27	’28	
③콜센터 운영성과 지수	0.14	목표	95.4%	95.5%	95.5%	95.6%	95.6%	(만족도×0.5)+ (통화성공률×0.3)+ (직접처리율×0.2)
		실적	96.5%	96.5%	-	-	-	

- 특히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추진율'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도까지 목표치 대비 실적 평균이 106%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2026년(93.0%), 2027년(91.0%), 2028년(93.0%) 3개년 모두 13%p~15%p 낮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바, 목표치 설정이 단순히 실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목표치 설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49]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추진율' 현황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교육감 임기	'14.7.~'18.6.				'18.7.~'22.6.				'22.7.~		
		1기				2기				3기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률 (단위:%)	목표	'16신규 목표	79.84	99	99.2	80	85	90	95	80	96	(이행추진 공약 /전체 공약) ×100
	실적	96.2	99.19	99.69	99.2	86.4	86	90	97	92.9	94.3	
	달성률	**-**	**124.2**	**100.7**	**100**	**108**	**101.2**	**100**	**102.1**	**116.1**	**98.3**	

- '25년,'27년 목표: 임기별 1년차('15년도,'19년도,'23년도) 평균
- '26년,'28년 목표: 임기별 2년차('16년도,'20년도,'24년도) 평균

○ 한편 'AI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서비스 생태계 조성률'의 경우 측정산식이 '(금년도 통합·연계된 교수학습서비스 수/전년도 금년통합·연계된 교수학습서비스 수) ×100'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합·연계된 교수학습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외국어교원 역량 강화' 지표는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닌 단순히 외국어 교사 연수 및 학습공동체 참여 교사수인 바, 성과계획서 단위 중 가장 구체적 이어야 하는 성과지표에서도 구체성 및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음.

○ 이처럼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성과계획서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구체성 및 연계성 문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의 성과계획서가 서울시교육청의 임무 및 전략목

표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성과계획서를 매년 관행적으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성과계획서가 실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반영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성과를 평가·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수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집행에 반영하고 실제로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공적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이를 위해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91]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92] 따라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분석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교육청은 2013회계연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 금번 성인지 예산서는 36개 사업에 1,282억 5천 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5년(867억 1천 7백만원) 대비 47.9%(867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 세부적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보면 금번 예산서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6개로 681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5년도(213억 6천 8백만원) 대비 218.9%(467억 6천 7백만원) 증가된 것임.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7개로 10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5년도(2,108억 5천 8백만원) 대비 3.8%(3억 8천만원) 증액 편성됨.

---

91)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 ‘매년 교육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정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총 18개로 411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5년도(478억 3천만원) 대비 △14.0%(△67억 1천 7백만원) 감소한 것임.

- ‘교육청이 자체선정하여 별도 추진하는 사업’은 총 5개로 85억 5천 2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5년도(74억 4천 8백만원) 대비 11.4%(11억 4백만원) 증가된 것임.

[표-50]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36 개	128,251,391	86,716,866	41,534,525	47.9%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6 개	68,135,065	21,367,594	46,767,471	218.9%
성별영향평가사업	7 개	10,450,439	10,070,773	379,666	3.8%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18 개	41,113,434	47,830,368	△6,716,934	△14.0%
교육청이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5 개	8,552,453	7,448,131	1,104,322	14.8%

○ 성인지 예산서 36개 사업 중 자체사업은 ‘주민참여예산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 ‘과학교육센터운영’, ‘학생상담센터운영’,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금’으로 전년도(4건)보다 1건의 자체사업이 추가되었으나 성평등가족부 및 교육부 지정 사업 수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임.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도 자체사업이었던 ‘학교혁신기획운영’ 및 ‘민주시민교육강화’의 경우 교육부 주도 사업이 아닌 오랜 기간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서 자체사업에서는 제외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운영’,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입학준비금지원’, ‘학생자치활동활성화’, ‘생태체험교육’, ‘메이커교육운영’ 등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시행하여 성인지 예산 자체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51] 성인지 예산안 사업별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분류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계 (36개)			128,251,391	86,716,866	41,534,525	47.9%
1	지방공무원인사운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88,174	1,159,432	△171,258	△14.8%
2	주민참여예산운영	자 체 선 정 사 업	463,400	463,400	0	-
3	다문화학생지원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4,433,163	5,466,330	△1,033,167	△18.9%
4	지역기반교육협력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1,577,819	1,420,300	157,519	11.1%
5	학교밖청소년지원	자 체 선 정 사 업	1,310,531	1,333,102	△22,571	△1.7%
6	맞춤형학부모교육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263,572	449,478	△185,906	△41.4%
7	과학교육센터운영	자 체 선 정 사 업	795,040	338,088	456,952	135.2%
8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수립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128,790	128,790	0	-
9	에듀케어운영확대	교 육 부 지 정 사 업	7,459,062	7,116,867	342,195	4.8%
10	늘봄학교운영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9,816,002	15,217,185	44,598,817	293.1%
11	교육활동보호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404,399	3,530,027	1,874,372	53.1%
12	초등방과후학교운영	교 육 부 지 정 사 업	3,402,000	5,094,000	△1,692,000	△33.2%
13	기후변화환경교육	교 육 부 지 정 사 업	738,360	829,390	△91,030	△11.0%
14	중등교원 연수지원	교 육 부 지 정 사 업	3,161,138	2,766,472	394,666	14.3%
15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고)	교 육 부 지 정 사 업	27,516	27,516	0	-
16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2,300,975	1,189,035	1,111,940	93.5%
17	중등방과후학교운영	교 육 부 지 정 사 업	853,200	860,200	△7,000	△0.8%
18	장애성인평생교육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1,500,000	1,145,000	355,000	31.0%
19	평생학습관지정및운영	교 육 부 지 정 사 업	172,140	146,140	26,000	17.8%
20	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71,840	152,200	19,640	12.9%
21	성인권증진및성평등정책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1,050	51,050	0	-
22	학교안전망구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703,600	1,257,700	445,900	35.5%
23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교 육 부 지 정 사 업	195,561	169,880	25,681	15.1%
24	학생상담센터운영	자 체 선 정 사 업	1,587,849	1,121,365	466,484	41.6%
25	직업계고학점제운영지원	교 육 부 지 정 사 업	2,152,000	2,065,100	86,900	4.2%
26	고졸취업지원확대	교 육 부 지 정 사 업	3,101,000	5,451,575	△2,350,575	△43.1%
27	맞춤식진로교육	교 육 부 지 정 사 업	697,120	876,620	△179,500	△20.5%
28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교 육 부 지 정 사 업	15,966,711	15,966,711	0	-
29	체육관리	교 육 부 지 정 사 업	346,750	3,756,750	△3,410,000	△90.8%
30	청소년단체활동지원	교 육 부 지 정 사 업	101,600	101,600	0	-
31	특수교육과정지원	교 육 부 지 정 사 업	270,260	270,260	0	-
32	통합교육지원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246,120	271,840	△25,720	△9.5%
33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자 체 선 정 사 업	4,395,633	4,192,176	203,457	4.9%
34	자격연수	교 육 부 지 정 사 업	1,082,599	1,078,028	4,571	0.4%
35	전문교육	교 육 부 지 정 사 업	1,125,977	992,819	133,158	13.4%
36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교 육 부 지 정 사 업	260,440	260,440	0	-

○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균형 있는 예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바, 예산서 수립에 있어 대상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성별 수혜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과지표 선정임.

○ 이와 관련하여 금번 성인지예산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 내용 및 성별 수혜 분석과 관계없는 것으로 구성된 지표들이 나타나는바,

'에듀케어운영확대' 공립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사업이나 동 사업의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에듀케어 참여 유아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움 만족도'** 로 설정되어 있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은 적정규모추진학교의 원활한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동 사업의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수 비율'** 로 설정되어 있음.

○ 특히 성과지표가 **성별 수혜 분석이 아닌 사업 전체 만족도 및 참여율로 설정**되어 있는 사업도 다수 나타나는바,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수립'** 사업은 누리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동 사업의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는 **'생태전환교육 운영 결과 만족도'** 로 설정되어 있고,

'중등방과후학교운영' 은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이나 동 사업의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는 **'전체 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 로 설정되어 있음.

- 그리고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은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한 사안처리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동 사업의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는 **'서울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비율'** 로 설정되어 있음.

○ 한편 성과지표 중에는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에 대한 성과지표가 아닌

강사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지표들도 나타나고 있는바,

'다문화학생지원'은 다문화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동 사업의 대상자 및 수혜자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재학생이나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는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횟수'로 설정되어 있음

- 또한 **'전문교육'**은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의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는 사업이고 동 사업의 대상자 및 수혜자는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이나 동 사업의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는 **'연수강사 성인지 교육 실시 비율'**로 설정되어 있음.

○ 아울러 성과목표를 과거 실적보다 하향시킨 사업도 나타나는데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고,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교육과정 연수 및 컨설팅, 교육과정 관련 각종 매뉴얼 및 자료 개발·검토 등 관련 교원 성별 비율 차이 ≤ 40%'로 설정되어 있어 목표치가 적을수록 성과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도 실적치가 1.15%, 2025년 20%(추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계획에서 전년도 대비 20%p나 차이를 높게 설정하여 성과목표를 하향 설정함.

○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성과지표를 성별 수혜 분석에 사용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성은 있으나 전체 사업 만족도 및 참여율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성별 수혜 분석과는 관계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성과목표 설정시에도 과거 실적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등 성인지 성별 수혜 분석 체계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 사업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여 선정 사업의 목표 및 대상자 선정,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목표 및 성과지표 선정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분석하여 성인지 예산서가 실질적으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실·국별 주요사업별 검토

1) 대변인

가) 홍보기획 및 컨텐츠개발-대변인(사업별 설명자료 78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50,180**	**250,030**	**좌동**	**150**	**좌동**	
지금서울교육발간	243,880	243,730	좌동	150	좌동	◦제안서평가위원 증가(7명→8명)
홍보물영상물및간행물심의위원회운영	6,300	6,300	좌동	-	좌동	

○ "홍보기획 및 컨텐츠개발"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표 홍보매체인 「지금 서울교육」을 제작·발간하여 교육정책 및 학교 현장의 주요 소식을 전달하고,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지금서울교육 발간'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소속기관(학교), 유관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소식을 전자책(연 9회)과 종이 간행물(연 4회, 회당 12,000부) 형태로 제작·배포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2억 4천 1백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52] '지금서울교육' 예산 편성 내역(2026년도)

(단위: 천원)

항목	산출내역	편성액
· 운영비		241,000 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	(100,000원+50,000원)×8명×1회 =	1,200 천원
- 지금서울교육제작및발행	232,000,000원×1년 =	232,000 천원
- 편집수당	(40,000원+10,000원)×12명×13회 =	7,800 천원
· 업무추진비		2,88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12명×12회 =	2,880 천원
합 계		243,730 천원

[표-53] '지금서울교육' 제작 계획

<table>
<tr><th>구 분</th><th>전자책</th><th>종이 간행물</th></tr>
<tr><td>제작횟수</td><td>연 9회
· 2025년 ③월호 ~ 2025년 ⑫월호 발행 (9회 발행, 8월호 휴간)</td><td>연 4회
· 연간 발행된 전자책 중 4건을 종이간행물로 발행 (2025년 ③, ⑥, ⑨, ⑫월)</td></tr>
<tr><td>발 행 월</td><td colspan="2">매월 10일 (토・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발행)</td></tr>
<tr><td>주요
내용</td><td>· 월별 콘텐츠 기획·발굴 및 게시
- 인플루언서 협업, 기획취재 등 자유로운 형식 시도
· 포털 검색 노출 활성화 작업 수행
· 사업 관리 및 성과 측정 보고
- 월 구독자수, 조회수 등 통계자료 포함한 월간보고서 제출
· 누리집 게재용 PDF 파일 제작
· 지금 서울교육 만족도 조사(최소 연1회) 및 결과 보고</td><td>· 분기별 간행물 제작
- 전자책 중 4건을 종이 간행물 발간
· 발송 및 배부처 관리
(분기별 현행화 보고 및 파일 제출)
· 사업 관리 및 배부 결과 보고
<table><tr><td>부수</td><td>12,000부/회, 총 48,000부</td></tr><tr><td>규격</td><td>표지4면, 내지32면, 227㎜×300㎜, 양면 4도 칼라 등</td></tr></table></td></tr>
</table>

*출처: 2025년도「지금 서울교육」사업계획서, 서울시교육청

○ **동 사업의 세부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지금서울교육 발간」예산(2억 4천만원) 중 제작비가 약 77.4%(1억 7천 9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이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인쇄·배부비는 약 22.6%(5천 2백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제작비 중 월간운영비(9개월, 1억 7천 9백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력・운영비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책 구독 증가, SNS・홈페이지 기반 온라인 홍보 확산 등 디지털 중심의 콘텐츠 소비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48,000부 종이 간행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향후 인쇄・배송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표-54]「지금 서울교육」제작 원가 산출 상세 내역

(단위: 원, %)

구분	금액(원)	구성비(%)
① 제작비	179,197,000원	77.4%
- 직접노무비	13,594,373원	
- 경비(회의비·장비비·교통통신비·기타경비)	1,929,411원	
- 일반관리비(6%)	931,427원	
- 이윤(10%)	1,645,521원	
- 부가가치세(10%)	1,810,073원	
- 연간운영비(9개월×19,910,805원)	179,197,000원	
② 인쇄·배부비	**52,264,000원**	22.6%
- 재료비	17,446,303원	
- 인쇄판대·인쇄·필름출력비	6,737,406원	
- 제본 및 DM제작비	3,701,844원	
- 전자조판 및 편집료	526,680원	
- 일반관리비(8.14%)	2,312,755원	
- 이윤(19.6%)	2,602,622원	
- 배송·운반비	14,185,800원	
- 부가가치세	4,751,341원	
총 합계(A+B)	**231,461,000원**	**100.0%**

*출처: 2025년도「지금 서울교육」제작 예정원가조사보고서, 서울시교육청

○ 따라서 종이 간행물 제작 부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인쇄·배부 예산의 점진적 감액 조정 및 전자 콘텐츠 제작·배포 예산으로의 재배치 등 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향후 디지털 기반 홍보매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 기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2) 총무과

가) 각종행사관리 및 지원-총무과(사업별 설명자료 119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88,300**	**167,360**	**173,360**	**20,940**	**14,940**	
주요시책업무추진	59,280	46,680	52,680	12,600	6,600	
주요행사운영	113,180	108,180	좌동	5,000	좌동	
회의및행사지원	15,840	12,500	좌동	3,340	좌동	

○ "각종행사관리 및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행사 및 정책 관련 회의·행사를 운영하여 업무계획 공유 및 정책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1억 8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주요행사운영'은 본청 월례조회, 직무연수, 사회공헌 활동, 신년인사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5백만원이 증가한 1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히 '신년인사회'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행사 진행용역비 5천 4백만원, 행사용품비 5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스탠딩 테이블(50개×100,000원) 구입비가 행사용품비에 별도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표-55] 2026년 동 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원, %)

항목		산출내역		편성액(원)
·	운영비			**94,500,000원**
	- (신년인사회)진행용역	**54,000,000원×1회**	=	**54,000,000원**
	- (신년인사회)행사용품비	**100,000원×50건**	=	**5,000,000원**
	- (신년인사회)사업추진경비	20,000원×8명×2회	=	320,000원
합 계				**59,320,000원**

[표-56] 신년인사회 행사용품비 산출근거

사업명	예산액(원)	산출 근거
스텐딩형 테이블 및 의자	5,000,000원	100,000원 * 50개

*출처: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 그러나 2026년도 신년인사회 행사 운영 용역의 세부 산출내역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년도(2025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당시 용역비(5천 4백만원)에는 이미 '스탠딩 테이블 및 테이블보 임차' 가 포함되어 있었음.

○ 물론 스탠딩 테이블 및 테이블보에 대한 수량이 종전 7개에서 50개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26년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용역이 추진될 경우, 용역 범위와 이번에 별도로 편성된 행사용품 구입비가 동일 목적 경비로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도 행사를 외부에서 진행한 것과 달리 내년도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기를 일부 조정한다면 해당 행사에 필요한 대관비, 빔프로젝트 등 대부분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57] 2025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 행사 용역 편성 내역

구분	주요 세부산출내역	금액(원)
기획 및 디자인	행사 기획, 운영 매뉴얼 작성 등	900,000
	전일 대관 / 당일 대관 / 전기 사용료	5,800,000
소 계(A)		**6,700,000**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음향·중계·조명 시스템	11,000,000
	LED 영상장비 시스템	9,800,000
	프로필티용 모니터 및 운영 모니터	2,280,000
	유튜브 송출 프로그램 및 장비 운영	1,800,000
	16G 인터넷 회선 구축	100,000
소 계(B)		**24,980,000**
제작 및 설치	컨벤션홀 현수막, 레드카펫 설치	700,000

구분	주요 세부산출내역	금액(원)
	좌우 벽면 배너, 등록데스크 현수막	1,200,000
	외부 부문 난간 현수막, 안내 배너	1,010,000
	장식물 설치·철수, 네임택 및 식순지 등	2,500,000
소 계(C)		**5,410,000**
운영 인력 및 장비	총 연출, 무대 조연출, 행사 진행 스탭	4,100,000
	스텐딩 테이블 및 테이블보 임차	**600,000**
	음료구매, 현장운영경비 등 일체	1,600,000
소 계(D)		**6,300,000**
추가 항목(FIX Statement)	전일 대회의실 추가 대관	950,000
	빔프로젝터 사용료	450,000
	스탠딩 테이블 및 테이블보 추가(7개)	**420,000**
	테이블 넘버링 스탠드(7개)	70,000
소 계(E)		**1,890,000**
세부항목 소계 합계(A+B+C+D+E)		45,280,000
부가가세		4,520,000
이윤		4,980,000
총계		54,780,000

*출처: 2025년도 신년인사회 산출내역서, 서울시교육청

○ 따라서 '신년인사회 행사용품비'는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향후에는 용역 산출내역서의 범위와 물품 구입비 간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동일 목적 경비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출 기준을 일원화하는 체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우편물관리-총무과(사업별 설명자료 132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96,740**	**24,990**	**좌동**	**71,750**	**좌동**	
문서택배서비스	69,950	-	좌동	69,950	좌동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전면 운영(1,918개 학교 및 기관)
우편물관리	26,790	24,990	좌동	1,800	좌동	◦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

○ **"우편물관리" 사업은 전자문서 외 공문서 및 행정자료의 유통을 위해 우편 문서 수·발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7천 2백만원 증액된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문서택배서비스' 는 기존 인편 중심의 문서수발 체계를 개선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 문서수발함 내 비전자 문서를 택배로 학교·기관에 발송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 7천만원이 신규 편성된 항목임.**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23~'25년) 남부·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연간 1,000~1,800건 수준의 안정적인 문서 발송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2026년부터 전 교육청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한다는 사업 목적을 설명함.**

[표-58] 최근 3년간('23~'25년) 문서택배 이용현황

■ **남부교육지원청**

(단위: 상자, 천원)

연도	대상 및 수	발송 빈도	상자 수	운영방식	예산액
2023	유·초·중·각종학교 159교	월 1회	1,394	택배업체 협약	11,400
2024	유·초·중·각종학교 159교	월 1회	1,849	택배업체 협약	11,400
2025	유·초·중·각종학교 156교	월 1회	1,134	택배업체 협약	11,400 *(~10.31. 사립유 3곳 폐원)*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단위: 상자, 천원)

연도	대상 및 수	발송 빈도	상자 수	운영방식	예산액	비고
2023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신청 82교	월 2회	1,559	택배업체 계약	7,000	
2024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신청 82교	월 2회	1,217	택배업체 계약	7,000	
2025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신청 83교	월 2회	700	택배업체 계약	6,720	~6.30 운영

※ 문서택배서비스는 2025년까지 남부·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6년부터 교육(지원)청 전체로 확대하는 신규 사업임.

○ **또한 시범사업 결과, 문서 발송을 택배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억1천만원 수준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기존 학교 문서 수발 출장비 6억 3천 9백만원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는 등 인쇄물·문서의 수령·배포·전달·배송과 관련된 학교 행정력 및 예산 절감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함.**

[표-59] 학교 문서수발 출장비 세부 산출 내역

(학교별 내역 평균, 택배서비스운영 남부·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제외)

구분	학교수	출장횟수	출장비 지급총액(원)	연평균출장횟수
초등학교	9	306	2,975,000	34
중학교	9	215	2,629,200	24
고등학교	9	251	2,515,000	28
총합계(27교)	**27**	**772**	**8,119,200**	**772**
1개 학교 1년 평균		29	**300,711원**	
1월 평균		2.4	**25,059원**	
1회 평균		1	**10,517원**	

➡ 300,711원(1교, 1년) × 2,126기관 = 639,311,586원

[표-60] 문서수발 출장비 및 문서 택배 서비스 비용 비교

구분	학교 문서수발 출장비(①)	문서택배서비스(②)	차액(①-②)
추정금액	639,312천원	217,414천원	**421,898천원**

※ 기준: 총 기관 2,126개 기관, 문서수발함 2,498개 / 월 1회 택배서비스 실시

[표-61] 문서택배서비스 비용 세부 산출 내역

(1년, 월 1회 택배서비스 기준)

구분	예상금액(원)	산출내역
1) 택배요금	149,880,000	5,000원 × 2,498개 × 1회 × 12월
2) 상자구입	32,973,600	1,100원 × 2,498개 × 1회 × 12월
3) 택배포장인원	34,560,000	60,000원(일급) × 4명 × 1회 × 12월 × 12개청
합계	**217,413,600**	(총액 : 본청+11개 교육지원청 기준)

1) 택배요금: 2023년 문서택배서비스 계약단가(남부교육지원청 4,000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5,000원)
2) 상자구입: 3호 박스(34cm×25cm×21cm)로 계산, 1회 택배서비스 시 1교 1박스로 계산
3) 택배 포장 인원:「2024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심사수당(심의·편집·운영수당 포함) 기준
기본 40,000원+2시간 초과 20,000원=60,000원
※ 택배포장인원 수 등에 따라 문서택배서비스 비용 산출 내역 변경 가능
※ 출처: 2026년도 본예산안 관련 요청자료(요구번호 2769번),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 이와 같이 시범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안정성·예산 절감 효과가 모두 검증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2026년도 신규 편성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는 포장인력 인건비(4명, 연 1천 9백만원)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발송 주기가 분기 1회 수준임을 감안할 때 연중 상근 인력 4명을 유지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62] 2026년도 동 사업 예산 편성내역

항목	산출내역	편성액
· **인건비**		**19,308 천원**
- 택배포장비	100,560원×**4명×4회**×12개청 =	19,308 천원
· **운영비**		**49,868 천원**
- 택배요금	5,000원×1,918기관×4회 =	38,360 천원
- 포장용품구입비	1,500원×1,918기관×4회 =	11,508 천원
· **업무추진비**		**600 천원**
- 택배서비스개선업무추진경비	20,000원×15명×2회 =	600 천원
· **민간이전**		**174 천원**
- 산업재해보험료	19,307,520원×0.9% =	174 천원
합 계		**69,950천원**

○ 따라서 포장인력 인건비의 효율성·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인건비 규모를 조정하고, 감액 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본청기관운영비-총무과(사업별 설명자료 151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6,983,396**	**3,077,060**	**좌동**	**3,906,336**	**좌동**	
본청기본운영비	3,635,280	2,531,270	좌동	1,104,010	좌동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현청사 신청사) 운영 경비 증액
청사시설유지관리	3,348,116	545,790	좌동	2,802,326	좌동	

○ "본청기관운영비"는 본청의 기관운영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30억 7천 7백만원에서 39억 6백만원이 증액된 69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본청기본운영비'는 전기·전화·난방요금 등 공공요금과 현수막 제작, 근조기 관리 등 행정운영성 경비로 총 36억 3천 5백만원, '청사시설유지관리비'는 시설관리위탁용역, 사무실 재배치, 청사관리용품 및 환경미화용품 구입 등으로 총 33억 4천 8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특히 '본청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1억 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액 요인은 ▲전기·전화·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청사 난방비 증가 ▲현수막 등 행사용품 제작비 증가 등에 기인함.

○ 또한 2026년 3월 신청사 이전 일정에 따라 기존 청사와 신청사 공공요금을 병합 산정한 결과, 신청사 공공요금 증가분이 증액 폭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됨.

[표-63] 주요 증액 항목(2025년 대비 2026년)

(단위: 천원, %)

항목	2025년	2026년	증감액	증감률
공공요금(전기·난방·전화·상하수도)	**1,680,000**	**2,985,000**	**1,305,000**	**77.7%**
현수막 등 행사용품 제작	**8,800**	**30,000**	**21,200**	**240.9%**
근조기관리 및 배송	52,500	64,260	11,760	22.4%
차량유지비	19,200	20,400	1,200	6.3%
케이블TV 수신료	6,600	11,600	5,000	75.8%
주차관리용품 및 결제수수료	2,880	5,760	2,880	100.0%
자동차보험료	3,600	4,200	600	16.7%
회의실 커텐 등 세탁비	3,720	3,840	120	3.2%
근무자피복비	3,400	3,450	50	1.5%

[표-64] 공공요금(전화·난방·상하수도) 세부 편성내역 비교(2025년 대비 2026년)

구분	'25년 예산액	'26년 예산액	증감률 (%)	'26년 산출기초 요약
전기 요금	1,302,000	2,313,000	77.7	① 105,000,000원×2월 + ② 54,300,000원×10월 ③ 156,000,000원×10월
난방 요금	156,000	275,000	76.3	① 10,000,000원×2월 + ② 6,800,000원×10월 + ③ 18,700,000원×10월
전화 요금	120,000	211,000	75.8	① 7,500,000원×2월 + ② 5,200,000원×10월 + ③ 14,400,000원×10월
상하 수도 요금	102,000	186,000	82.4	① 13,500,000원×2월 + ② 3,700,000원×10월 ③ 12,200,000원×10월
합계	1,680,000	2,985,000	77.7	

(단위: 천원, %)

* 내역: ① 이전 전 현청사 운영요금('26.1.~2) + ② 현 청사 이전 후 신청사 축소 운영요금('26.3~12.) + ③ 신청사 운영요금('26.3~12.): 현 청사의 약 1.8배
* 출처: '26년도 본예산안 관련 요구자료 제출(2769번),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공공요금이 기존 청사 대비 면적 약 1.8배 확대 및 개방공간 증가, 사용 인원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실제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① 전기요금: 13억 2백만원→23억 1천 3백만원(77.7%↑), ② 난방요금: 1억 5천 6백만원→2억 7천 5백만원(76.3%↑), ③전화요금:1억 2천만원→2억 2천1백만원(75.8%↑), ④ 상하수도요금: 1억 2백만원→1억 8천6백만원(82.4%↑)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큰 폭의 증가가 확인됨.

○ 이는 신청사 연면적 39,937㎡가 현청사 22,121.8㎡ 대비 약 1.8배 확대된 데 따른 청사 규모 확장 요인과 함께, 이전 이후 일정 기간 현청사와 신청사를 병행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가 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93].

○ 또한 신청사 공공요금은 월별 사용량·계절 요인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단가 산정이 어려워 2025년도 편성액 대비 면적 비율(1.8배)을 기준으로 추정·산정하였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임.

○ 따라서 공공요금 증액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으로 판단되나, 실제 사용량은 이전 시점(’26.3월) 이후 발생하는 만큼, 상반기 집행 추이를 점검한 뒤 추경 단계에서 적정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동 사업 중 ‘현수막 등 행사용품 제작비’는 명확한 산출 근거 또는 구체적 행사계획 없이 전년 대비 약 253%(2천 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25년도에는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 제작 위주로 집행되었고, 2026년도 또한 ‘3,000,000원×10회’라는 단순 산출식만 제시되어 있어 증액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93) 연면적 비교: 신청사 연면적은 39,937㎡으로 현청사 연면적(22,121.8㎡: 본관 12,872.99㎡, 별관 1,330.24㎡, 보건안전진흥원 7,918.57㎡) 대비 1.805배임(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2878번).

○ 이에 따라 예산의 합리성과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현수막 제작비에 대한 일정 부분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현수막 설치 목적·대상·기준, 단가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한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동 예산이 실제 수요와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편성·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표-65] 최근 2년간(2023~2025.10.) 현수막 등 물품 제작 세부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물품명	제작 건수	예산액	집행액	제작내용		
						일자	내용	집행액
1	2023	현수막	10	10,000	8,600	1.17	서울교육 신년인사회	600
						3.29	2분기 서울교육메시지 등(2건)	1,870
						6.30	3분기 서울교육메시지 등(2건)	1,925
						8.29	3분기 서울교육메시지	1,430
						12.14	2024년 1분기 서울교육메시지(2건)	1,925
						12.21	총무과 현수막 제작 등(2건)	850
2	2024	현수막	5	8,800	5,555	3.29	2분기 서울교육메시지 등(2건)	2,035
						7.17	3분기 서울교육메시지 등(2건)	2,200
						10.7	본관 및 보건안전진흥원 현수막 철거	1,320
3	2024	태극기 교육청기	42		1,791	9.9.	정문 게양용 태극기 및 교육청기 구입(태극기 10장, 교육청기 10장, 지원청기 22장)	1,791
4	2025	현수막	34	8,800	8,602	9.26	추석맞이 현수막 제작 및 게첩 (교육지원청 11개, 직속기관 5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18개)	8,602

* 출처: '26년도 본예산 관련 요구자료 제출(2865번), 서울시교육청

라) 선거관리-총무과(사업별 설명자료 180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7,111,484**	**4,375,477**	**좌동**	**32,736,007**	**좌동**	
계도·홍보및위법행위 단속경비	-	4,375,477	좌동	△4,375,477	좌동	
선거관리경비 (시구선관위집행)	36,352,902	-	좌동	36,352,902	좌동	
선거관리경비 (자치구집행)	758,582	-	좌동	758,582	좌동	

○ "선거관리" 예산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경비 규칙」에 따라 2026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법정 경비를 반영한 것임.

○ 전년도에는 선거 대비 '계도·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 경비' 만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운영에 필요한 기타 법정 경비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327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371억 1천 1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 이에 따라 금번 예산안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시ㆍ구선관위 집행)' 363억 5천 3백만원과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자치구집행)' 부담금 7억 5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소청ㆍ소송경비, 보전비용, 공통경비(인건비ㆍ운영비ㆍ여비 등)를 포함함.

- 선거관리 경비는 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 단위에서 집행하는 '선거관리경비(시ㆍ구선관위 집행)', ② 각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단위에서 집행하는 '선거관리경비(자치구 집행)'로 구분됨.

-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므로, 교육청은「공직선거법」,「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94] 두 경비 모두를 법정 의무경비로 부담해야 함.

○ 한편, 2024년도 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납부 요구에 따라 총 588억 7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439억 5천 7백만원(집행률 74.7%)에 그쳐, 약 149억 1천 8백만원이 불용·반환된 것으로 확인됨.

[표-66]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 요구·집행 현황(시·구선관위+자치구)

(단위: 천원)

구분	서울시선관위		소계(A)	서울시 및 자치구	합계(A+B)
	준비·실시경비	보전경비		준비·실시경비(B)	
예산액 (요구액)	47,125,578	9,417,747	56,543,325	2,331,683	**58,875,008**
집행액	35,078,530	7,523,542	42,602,072	1,354,662	**43,956,734**
집행잔액	12,047,048	1,894,205	13,941,253	977,021	**14,918,274**

* 출처: '26년도 본예산안 관련 요구자료 제출(2769번), 서울시교육청

○ 이는 당시 경비 산출근거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서울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과다 산출 및 대규

---

94)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①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소요되는 물품·시설 등의 제작·구입·임차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 및 자치구·시·군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통경비(제1항의 경비는 제외한다)의 해당경비부담단체별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선거 또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안에서 경비부담단체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의 전부가 서로 겹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경비부담단체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2. 제1호외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경비부담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모 불용 우려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음[95].

○ 이러한 집행 결과를 반영되어, 2026년도 '시·구 선관위 집행' 예산은 전년도 565억 4천 3백만원에서 363억 5천 3백만 원으로 약 201억 9천만원(△35.7%) 감액되었고, '준비·실시경비'는 전년 대비 2억 1천 7백만원(△46.1%) 감액되었음.

[표-67] 2024년 및 2026년 선거관리경비(시·구선관위 집행) 편성 내역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예산	2026년도 본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자치단체 등 이전	- 준비 및 실시경비	47,125,578	25,398,963	△21,726,615	△46.1
	- 보전비용	9,417,747	10,950,974	1,533,227	16.3
	- 선거소청·소송경비	-	2,965	2,965	100.0
합 계		56,543,325	36,352,902	△20,190,423	△35.7

* 2025년 본예산 편성액 4,375,477천원 중 4,311,536천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 완료(2025.10.1.)

[표-68] 2024년 및 2026년 선거관리경비(자치구집행) 편성 내역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예산	2026년도 본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자치단체 등 이전 - 준비 및 실시경비	2,331,683	758,582	△1,573,101	△67.5

* 출처: '26년도 본예산안 관련 요구자료 제출(2769번), 서울시교육청

○ 반면, 선거 종료 후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보전되는 항목인 '보전비용'[96]은 전년 대비 15억 3천 3백만원(16.3%)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보전비

9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96)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보전비용"이라 함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는 비용을 말한다.

용의 성격(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사후 보전하는 비용)에 부합하는 조정으로, 금번 예산안은 사전 준비·실시경비 중심에서 사후 정산 중심으로 전환·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치구 집행' 교육감 선거관리경비는 2024년도 교육감 보궐선거 실집행액(13억 5천 5백만원) 대비 약 56% 수준인 7억 5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4년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용액 정산 결과를 반영한 조정으로 보임.

[표-69] 교육감 선거관리경비(자치구집행) 비교 현황(2024년 대비 2026년)

(단위: 천원, %)

구분	2024년		2026년 본예산(A) (편성액 기준)	증감액(A-B) (천원)
	예산액	집행액(B)		
인건비	365,534	274,664	263,948	△10,716
일반운영비 (수용비·매식비·임차료 등)	1,058,833	858,425	388,359	△470,066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754,330	125,099	60,727	△64,372
여비	153,000	96,960	45,548	△51,412
총계	2,331,683	1,354,662	758,582	△596,080

* 집행액 산출의 경우, 천원 단위 변환액은 원 단위 절사 자료(선거관리위원회 제출본)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일부 항목은 절사 단위 차이로 인해 원본 소계 및 총계와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2026년도 본예산안 관련 요구자료(요구번호-2863번), 서울시교육청

○ 다만, 이러한 선거관리비는「공직선거법」및「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액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경비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여, 교육청이 자체 판단으로 임의 감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집행 추이와 사후 정산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선거 종료 후 실제 집행내역을 토대로 선거관리경비의 편성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향후 선거관리위원회 요구액 산정 과정에서도 산출내역 검증 강화 및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세부 산출근거는 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자치구에서 산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세목별 단가 및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97].

[표-70] 2026년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 자치구 산출내역 단가표

항목	단가(원)
자치구 일용인부	90,085원
동주민센터 일용인부	90,085원
선거인명부 전산용지	18원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전산용지	18원
선거사무종사원교육자료·선거계도홍보물 제작	2,000,000원
선거홍보물(약도·안내문 등)_동	500,000원
일반사무용품(구)	500,000원
일반사무용품(동)	500,000원
홍보용 현수막(구)	100,000원
홍보용 현수막(동)	100,000원
투개표 상황판	300,000원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	40,000원
준비요원 급식비(구)	9,000원
준비요원 급식비(동)	9,000원
특근직원 급식비(구)	9,000원
특근직원 급식비(동)	9,000원
상황실 근무직원 급식비	9,000원
거소투표 발송 우편요금	5,560원
거소투표 회송 우편요금	2,830원
차량유지비(휘발유)	1,668원
차량유지비(경유)	1,530원
국내여비–동 법정사무 지원 및 지도확인	20,000원
국내여비–회의·공보·투표소 설치 등	20,000원

9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계획 송부(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12211, 2025.8.2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서울특별시교육청) 산출 통보(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3105, 2025.8.7.).

3) 안전총괄담당관

가) 안전인프라구축-안전총괄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235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060,998**	**2,941,912**	**4,011,912**	**119,086**	**△950,914**	
교육안전위원회운영	6,300	6,300	좌동	-	좌동	
안전정책조정회의 및 실무회의운영	1,500	1,500	좌동	-	좌동	
안전체험관건립및운영지원	514,686	359,500	좌동	155,186	좌동	◦ 마곡안전체험관 기관운영비 증액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18,300	7,300	좌동	11,000	좌동	◦ 통학로안전협의체 수당 신설
재난관리자원비축관리	15,730	15,730	좌동	-	좌동	
재난대응시스템구축및훈련	43,580	43,580	좌동	-	좌동	
초등학교교통안전지도활성화	94,200	93,700	좌동	500	좌동	◦ 신학기 교통안전 캠페인 운영 예산 증액
통학버스관리시스템운영지원	24,000	24,000	좌동	-	좌동	
통학버스안전관리지원	8,442	8,442	좌동	-	좌동	
학교CCTV설치지원	**2,300,000**	**2,370,000**	**3,440,000**	**△70,000**	**△1,140,000**	
학교교육환경유해물질실태조사및개선	22,400	-	좌동	22,400	좌동	◦ 신규사업
학교안전평가단운영	9,460	9,460	좌동	-	좌동	
학교주변통학로안전강화	2,400	2,400	좌동	-	좌동	

○ "안전인프라구축" 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천 9백만원 증액된 30억 6천 1백만원이 편성됨.

○ 이 중 '학교 CCTV 설치지원'은 이 중 '학교 CCTV 설치지원' 사업은 서울 관내 학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저화소 카메라를 고화소 장비로 교체하고 신규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23억 7천만원) 대비 7천만원이 감액된 23억원이 편성됨.

-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CCTV가 총 10억원(10교, 각 1억원씩) 및 일반형 CCTV가 총 13억원임(260교, 각 500만원씩)임.

[표-71] 학교 CCTV설치지원 산출기초

· 학교회계전출금			2,300,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공립)	(5,000,000원×230교)+(100,000,000원×8교)	=	1,950,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사립)	(5,000,000원×30교)+(100,000,000원×2교)	=	350,000	천원

○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CCTV 설치 지원 계획[98]'에 따르면 지능형 CCTV에 관한 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능형 CCTV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고,

그 후속 조치로 2024년까지의 예산으로 기설치된 지능형 CCTV[99]의 사업 성과를 분석해 2025년 6월 '지능형 CCTV 설치 결과 및 성과 분석 보고[100]'를 작성함.

- 동 보고서에 따른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64교에 예산 63.7억원이 지원되어 교당 1억원의 예산으로 평균 21대 규모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위험 통보 건수는 10교에서 35,129건, 사고 예방 건수는 1교에서 3건(학교폭력)인 것으로 보고됨.

- 아울러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학교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93%, '지능형 CCTV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된 것으로 보고

98) '2025년 CCTV 설치 지원 계획(안)' (안전총괄담당관, 2025.3.) p.5
99) 2024년까지 교부된 예산으로 설치한 지능형 CCTV가 성과 분석 대상임.
100) '2024년도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지능형CCTV) 결과 및 성과 분석 보고'(안전총괄담당관, 2025.6.)

됨.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지능형 CCTV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사료됨.

[표-72] 성과분석 대상 지능형 CCTV 지원 현황

단계	재원	선정방법	대상	지원예산	비고
1	'23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공모형	10교	10억	서부 8교, 중부 2교
2	'24년 교특회계 본예산	공모형	2교	2억	동작관악 2교
		지정형	9교	7.7억	-
3	'24년 교특회계 추경예산	공모형	15교	15억	-
		지정형	29교	29억	본예산 지정형과 1교(신목고) 중복
합 계			64교	63.7억	중복교 제외

○ 그러나 사업 평가는 단순히 설치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 운영 실적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 지능형 CCTV의 효용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더욱이 학교폭력 3건 감소라는 성과는 짧은 사업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사업 규모와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 사료됨.

- 특히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성은 중요한 요소로, 일반형 CCTV 대비 약 2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지능형 CCTV가 현 시점에서 비용 대비 충분한 효용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지능형 CCTV의 핵심 기능은 화재·침입·폭행·배회 등 특정 이상 상황을 자동 인식해 선제적으로 알리는 것임에도, 전체 64교 중 10교에서만 위험 통보 건수가 보고된 점은 시스템이 실제 지능형 CCTV 운영 과정에서 기대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임.

○ 따라서 '학교 CCTV 설치지원' 중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은 현 단계에서 운영 성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 대비 효과

또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일부 추가적인 확대보다는 운영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성능 검증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사업은 교육청의 재정운용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타당성이 부족한바,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기획조정실

가) 교육정책개발운영, 교육현장소통강화,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관리-정책기획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260쪽, 265쪽, 274쪽)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교육정책개발운영	**788,960**	**748,160**	**좌동**	**40,800**	**좌동**	
민간전문가제도 운영및관리	-	4,650	좌동	△4,650	좌동	◦ 정책정비
사교육경감업무 추진	27,850	-	좌동	27,850	좌동	◦ 신규사업
서울미래교육전략 토론회	37,600	20,000	좌동	17,600	좌동	◦ 교육대전환포럼
정책연구운영	723,510	723,510	좌동	-	좌동	
교육현장소통강화	**58,000**	**8,000**	**좌동**	**50,000**	**좌동**	
교육현장순회간담회 운영	8,000	8,000	좌동	-	좌동	
현장중심정책수립을 위한미래교육세미나	50,000	-	좌동	50,000	좌동	◦ 현장중심정책수립을 위한 세미나 추진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관리	**103,200**	**83,500**	**좌동**	**19,700**	**좌동**	
서울혁신미래교육연구모임	7,200	9,400	좌동	△2,200	좌동	◦ 사업 세부내역 조정
중장기발전계획상상톡	61,700	24,100	좌동	37,600	좌동	◦ 2027~2030 중기발전계획 수립으로 증액
지속가능한ESG 교육시스템관리	34,300	50,000	좌동	△15,700	좌동	◦ 사업내용 변경으로 시설임차료 감액

○ 정책기획관의 '교육정책개발운영'은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7억 4천 8백만원) 보다 4천 1백만원 증액된 7억 8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교육현장소통강화'는 교육현장을 찾아가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8백만원) 보다 5천만원 증액된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관리'는 서울교육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핵심과제 발굴 및 주요 정책을 개발·조정하는 사업으로 전년도(8천 4백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 3백만원이 편성됨.

○ 먼저 '교육정책개발운영' 중 '사교육경감업무 추진'은 사교육 경감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및 인식개선 및 홍보자료 개발 등을 시행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사교육 경감 관련 사업들은 고교학점제 안착,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등 주요 유·초·중등의 정책 사업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바,

정책기획관의 '사교육경감업무 추진'에 따른 토론회 등의 사업이 실제 사교육 경감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표-73]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추진 체계[101)]

대주제	세부과제		세부 추진내용
1. 창의와 상생의 공교육 강화	1-1. 교육의 본질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1-1-1.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1-1-2. 미래 역량 중심 수업 운영 1-1-3. 고교학점제 안착 1-1-4. 학생 평가 내실화
	1-2 다양한 공교육 모델 운영		1-2-1. 학생 수요에 맞춘 다양한 학교 운영
2. 입시체제형 사교육 수요 흡수	2-1. 자기주도 학습 지원	→	2-1-1. 학생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환경 구축 2-1-2. EBS 수준별 강좌 제공 확대에 따른 활용 강화
	2-2. 학습안전망 강화		2-2-1. 촘촘한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2-2-2. 중등 방과후 교과보충지도 프로그램 확대
	2-3. 공교육 내 진로·진학지도 강화		2-3-1. 교육과정과 연계된 초중고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2-3-2.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 상담 및 고교-대학 정보 공유·확대
	2-4. 학습지원을 위한 지자체 민간 연계 활성화		2-4-1. 지자체 연계 학습 지원 사회보장 서비스 공유·확대
3. 클린 사교육 문화 조성	3-1. 사교육 근절 대책 수립	→	3-1-1. 체계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 3-1-2. 건전한 학원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강화 3-1-3. 불법 사교육 근절 캠페인 등 홍보
4. 늘봄학교 및 예체능 교육 활성화	4-1. 돌봄 사교육 경감	→	4-1-1. 초등 돌봄 확충 및 돌봄 대기 해소
	4-2. 방과후학교 과정 내실화로 비교과 예체능 사교육 흡수		4-2-1. 예술 체육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4-2-2. 지역자원연계 방과후활동 통합지원
	4-3. 방과후 프로그램 제도 개선		4-3-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활성화
	4-4. 공교육 내 예체능 교육 내실화		4-4-1.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4-4-2. 학교체육교육 강화
5. 발달단계에 맞춤 유아교육	5-1. 유아교육 내실화	→	5-1-1.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확대
	5-2. 유아 사교육 경감		5-2-1. 유아돌봄 확대 5-2-2. 유아의 온전한 성장을 돕는 방과후과정
	5-3. 유보통합 연계		5-3-1. 유보통합 연계 지속 추진

101) 서울특별시교육청(2025.4.). 2024 서울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상황 및 2025 추진 계획.

- 아울러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관리'의 '지속가능한 ESG 교육시스템 관리' 사업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아닌 포럼, 자문, 연수 등의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교육정책개발운영' 세부 사업 중 '서울미래교육전략토론회(3천8백만원)'는 서울미래교육 비전 제시 등을 위해 포럼, 전문가 토론회, 세미나 등을 시행하는 것이고,

'교육현장소통강화'의 '현장중심정책수립을위한 미래교육세미나(5천만원)'도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세미나 형태의 토론회를 운영하는 것이며,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관리'의 '서울혁신미래교육 연구모임(7백만원)도 서울교육정책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것임.

○ 이와 같이 현재 정책기획관의 다 수의 사업들이 서울 교육정책 개선 및 발전 등을 이유로 토론회, 간담회, 연구모임 등을 운영하는 사업들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토론회 중심의 사업들로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인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더욱이 해당 사업들은 향후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기획성 사업으로서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된 시점에서 향후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정책 수립을 전제로 한 사업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의 지속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재검토후 향후 필요성에 따라 규모를 증액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예산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333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628,113	10,461,809	좌동	166,304	좌동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10,628,113**	**10,461,809**	**좌동**	**166,304**	**좌동**	제3섹터 전환 등용역비 인상

○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는 교육지원기관(8개 직속기관)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비품구입비 등 기본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천 6백만원 증액된 106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74]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	인건비			50,786	천원
	- 조리보조원 인건비 등	50,786,000원×1식	=	50,786	천원
·	운영비			8,845,984	천원
	-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8,845,984,000원×1식	=	8,845,984	천원
·	**여비**			**506,653**	**천원**
	- 근무지내·외 출장비 등	**506,653,000원×1식**	**=**	**506,653**	**천원**
·	업무추진비			104,380	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04,380,000원×1식	=	104,380	천원
·	복리후생비			12,280	천원
	- 직장동호회활동지원비	12,280,000원×1식	=	12,280	천원
·	직무수행경비			199,800	천원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99,800,000원×1식	=	199,800	천원
·	보전금			279,979	천원
	- 사회복무요원인건비 등	279,979,000원×1식	=	279,979	천원
·	민간이전			57,977	천원
	- 보험료부담금 등	57,977,000원×1식	=	57,977	천원
·	**유형자산**			**570,274**	**천원**
	- 비품구입 등	**570,274,000원×1식**	**=**	**570,274**	**천원**

○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 증액의 사유로 △제3섹터로의 전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용역비 인상, △공용차량 교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에 이어 동일하게 반복 제시된 증액 사유로, 2025년 사업설명서 역시 "제3섹터 전환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인상"

을 주요 증감 사유로 기재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지원기관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매년 비슷한 사유를 반복 제시하며 기본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고, 더욱이 2024년도 결산 기준 11%가 넘는 불용률은 이러한 증액 요구가 실질적 필요보다는 기계적·관행적 요청에 가깝다는 점을 방증함.

[표-75] 2024~2026년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현황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예산액(천원)	10,458,831	10,461,809	10,628,113	추경 포함

[표-76] 2024년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불용 현황 (2024년도 결산자료)

기관명	예산액			지출금액	불용	
	본예산액	추경예산액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교육연구정보원	1,347,772	0	1,347,772	1,033,482	314,290	23%
교육연수원	1,999,581	63,619	2,063,200	1,897,394	165,806	8%
융합과학교육원	1,159,620	0	1,159,620	1,014,081	145,539	13%
보건안전진흥원	309,454	2,100	311,554	274,755	36,799	12%
학생교육원	2,749,890	0	2,749,890	2,475,675	274,215	10%
학생체육관	1,840,008	0	1,840,008	1,716,047	123,961	7%
교육시설관리본부	511,217	0	511,217	470,488	40,729	8%
유아교육진흥원	475,570	0	475,570	423,758	51,812	11%
합계	**10,393,112**	**65,719**	**10,458,831**	**9,305,681**	**1,153,150**	**11%**

○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기본운영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예를 들어, 학생교육원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 대상에 해당하고 16명의 인원이 참여하며 1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해당 사업비를 정식 편성하지 않고 일부 교육사업비와 여비를 활용해 편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였음.

[표-77] 2025 재외한국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 개요

- 대상기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기간 및 인원: 2025.6.3.(화) ~ 6.16.(월), 총 16명
- 예산집행현황

연번	내용	예산항목	내역	금액(원)
1	항공권 구입	학생단체활동-각종캠프운영-**모험극복캠프-기타일반수용비**	1차:850,000원*2명	1,700,000
			2차:400,000원*2명	800,000
2	파견대상자 근무복 구매	학생단체활동-각종캠프운영-**모험극복캠프-행사용품비**	18,000원*16장	288,000
			22,500원*12장	270,000
3	현수막, 기념품	학생단체활동-각종캠프운영-**모험극복캠프-행사용품비**		250,000
4	파견대상자 협의회	학생단체활동-각종캠프운영-**모험극복캠프-업무추진비**	15,000원*15명	225,000
5	여행자보험료	기관기본운영비-**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교육기획운영부-보험료부담금**	16명	157,720
6	국외출장여비	기관기본운영비-**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여비-출장여비**		5,159,602
		학생단체활동-각종체험활동운영-**찾아가는수련교육-국내여비**		2,583,120
합계				**11,433,442**

○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유 없는 반복적 증액 요구, △10% 이상 불용률, △예산 집행 과정의 편법 운영 등은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본운영비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감액 및 조정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료됨.**

다) 학교지원전담기구운영-정책기획관(사업별 설명자료 311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828,588**	**850,054**	**좌동**	**1,978,534**	**좌동**	
학교통합지원과운영	2,828,588	487,102	좌동	2,341,486	좌동	◦ 조직개편으로 학교통합지원과 신설
학교통합지원센터운영지원	-	362,952	좌동	△362,952	좌동	

○ 학교지원전담기구 운영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102] '학교통합지원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4억 8천 7백만원) 보다 23억 4천 1백만원 증액된 28억 2천 9백만원 편성됨.

○ 학교통합지원과는 종전에 학교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이 교과서 수급 관리. 교복구매지원, 공무직 관리,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학교인력 채용 지원, 공기질 및 수질검사 위탁용역 업무 등 18개 업무를 학교에서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78] 학교통합지원과 이관 업무

연 번	업 무 명	업 무 내 용
1	학교통합지원 기획・운영	○ 공통업무 이외 학교에서 요청하는 지원업무 (특수학급 증설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관리, 조리종사원 채용 등)
2	통합지원콜센터	○ 학교 업무 지원 상담 등
3	범교과 학습지원	○ 범교과 프로그램 및 인력풀 제공 등
4	현장체험학습지원 운영지원	○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정 및 예산 교부 등
5	생존수영	○ 수영교육 일정조율, 계약공통서류 제공, 버스 임차 통합계약 등
6	소방합동훈련	○ 학교-소방서 합동훈련 희망일정 접수 및 날짜 조율 등

102)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5.7.1.][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1호, 2025.6.26., 일부개정]」개정하여 학교통합지원과 신설

연 번	업 무 명	업 무 내 용
7	안전업무(통학로, 재난, 산업안전)	○ 통학로 점검 지원, 위험성 평가 교육실시, 재난대비 훈련 등
8	학교인력 채용 지원	○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 및 지방공무원 대체 채용 지원 등
9	교원정기승급	○ 관내 공립 유·초·중 정규교원 정기승급 지원 등
10	호봉업무	○ 공립 유·초·중 교원 호봉 재확정 및 호봉 정정 등
11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 공립 유·초·중 정규 교원 호봉 정적 및 재획정 업무 등
12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 초기정착업무 지원 등
13	입학준비금	○ 관내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14	교복구매지원	○ 관내 초·중·고 교복구매 지원
15	정보화업무	○ 학교 네트워크 장애처리 및 무선인터넷망 구축 지원 등
16	공무직 관리	○ 교육공무직원 전보 및 인건비 지원 등
17	교과서 수급 관리	○ 교과서 계약 및 주문, 배송 지원 등
18	공통위탁용역(공기질, 수질검사 등)	○ 공통위탁용역 일정 안내 및 결과보고, 대금 지급 등
19	기타	○ 1~18번 이외 업무 지원

○ 이와 같이 현재 학교통합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업무 중에는 그동안 학교에서 추진하던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학교에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한 기존 학교운영비는 감액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2026년도 학교운영비를 살펴보면, 개별운영비에서 교과용도서 구입 및 배부지원 사업(101억 1천 7백만원)만 감액되고 그 외 이관된 사업에 대한 학교운영비 감액은 없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학교운영비는 7,391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7,226억 9백만원) 대비 오히려 2.3%(164억 9천 6백만원 증액된 상황인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통합지원과에 편성된 사업 예산이 학교운영비 등에 중복 편성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관련된 사업의 학교운영비 사업 예산을 재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79] 학교개별운영비에 감액된 교과용도서 구입 및 배부지원 사업

(단위 : 천원)

전환 구분	사업항목	2025년	2026년	증감
교육지원청 이관(1개)	소 계	10,116,790	-	△10,116,790
	교과용도서구입및배부지원	10,116,790	-	△10,116,790

[표-80]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증감액 (C=B-A)	증감비율 (C/A)
		2025년(A)	2026년(B)		
학교기본운영비	공통경상	554,507,688	560,903,668	6,395,980	1.2
	통합교부	109,078,727	116,483,892	7,405,165	6.78
개별교부운영비		59,022,446	61,717,121	2,694,675	4.56
합계		663,588,440	677,389,586	16,495,820	2.28

라) 공무원(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 인건비-예산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317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839,779,902**	**4,678,040,978**	**4,678,182,402**	**161,738,924**	**161,597,500**	
보수	3,612,968,347	3,495,301,465	3,507,810,911	117,666,882	105,157,436	◦ 보수인상률(3.5%) 및 정원 증감 반영
법정부담금	1,059,771,446	1,024,683,753	1,006,118,731	35,087,693	53,652,715	◦ 2026년 법정부담금 요율 반영 (연금부담금 등)
명예퇴직수당	85,500,000	86,950,000	92,150,000	△1,450,000	△6,650,000	
맞춤형복지비	81,540,109	71,105,760	72,102,760	10,434,349	9,437,349	◦ 직종별 정원 증감 반영 ◦ 기본점수 20만원인상분 반영

○ "공무원(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의 예상 소요액을 산출하여 편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4조 6,780억 4천 1백만원)보다 1,617억 3천 9백만원 증가된 4조 8,397억 8천만이 편성됨.

○ 동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공무원 보수인상율(3.5%)과 건강보험 부담률 등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율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보수인상률 및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등은 법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무원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됨.

○ 다만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현액(4조 4,247억 5천 8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1.9%(854억 8천 6백만원), 2023년 예산현액(4조 4,690억 8천 6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0.3%(154억 2천 1백만원), 2024년 예산현액(4조 6,280억 9천 3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0.6%(263억 6천 4백만원), 2025년(예상) 예산현액(4조 6,781억 8천 3백만원) 대비 예상 불용률은 0.6%(270억 6천 7백만원)로,

최근 4년간 불용률 평균은 0.9%로 2022년에 불용률이 1.9%로 가장 높았고 2023년에 불용률이 0.3%까지 떨어졌으나 2024년에 0.6%로 다시 소폭 상승한 뒤 2025년에도 불용률이 0.6%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의 불용률 비율은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나, 예산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2026년 기준 공무원 인건비 예산(4조 8,397억 8천만원)은 교육청 전체 예산(10조 9,422억 7백만원) 대비 44.2%에 이르고 있는바,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불용액이 1% 이내라 하여도 불용액 규모는 수 백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최근 4년간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지출 현황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26년에도 예전 수준으로 불용액이 발생 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교육청의 세입 결손에 따른 세출 절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동 사업비는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0.9%) 또는 최근 연도인 2024년 및 2025년 불용률(0.6%)을 적용하여 편성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사립학교 인건비(인건비재정결함보조)도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이 0.8%에 이르는바, 동 사업에서도 편성액 일부를 조정해야 할 것임.

[표-81] 공무원 인건비 연도별 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2022	교원인건비	3,839,290	3,761,532	77,758	2.0%
	교육전문직원인건비	65,109	64,274	835	1.3%
	지방공무원인건비	520,359	513,466	6,893	1.3%
	소계	4,424,758	4,339,272	85,486	**1.9%**
2023	교원인건비	3,861,198	3,848,442	12,756	0.3%
	교육전문직원인건비	68,067	67,405	662	1.0%
	지방공무원인건비	539,821	537,818	2,003	0.4%
	소계	4,469,086	4,453,665	15,421	**0.3%**
2024	교원인건비	3,988,289	3,965,519	22,770	0.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71,384	69,955	1,429	2.0%
	지방공무원인건비	568,420	566,255	2,165	0.4%
	소계	4,628,093	4,601,729	26,364	**0.6%**
2025	교원인건비	3,996,395	3,980,053	16,342	0.4%
	교육전문직원인건비	89,419	82,904	6,515	7.3%
	지방공무원인건비	592,369	588,159	4,210	0.7%
	소계	4,678,183	4,651,116	27,067	**0.6%**

마) 근로자 인건비(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예산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322쪽, 326쪽, 517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326,844,127**	**1,221,898,961**	**1,283,206,673**	**104,945,166**	**43,637,454**	
계약제교원인건비	**446,194,992**	**440,171,664**	**424,799,475**	**6,023,328**	**21,395,517**	
보수	367,261,765	367,287,389	352,333,204	△25,624	14,928,561	◦ 집행인원 반영 등
기타직법정부담금	40,456,227	39,377,475	37,709,471	1,078,752	2,746,756	◦ 2026년도 요율 반영(건강보험 등)
퇴직금관리	23,425,000	20,160,000	21,410,000	3,265,000	2,015,000	◦ 퇴직현황 반영
맞춤형복지비	15,052,000	13,346,800	좌동	1,705,200	좌동	◦ 집행인원 반영 ◦ 기본점수20만원 인상분 반영
계약제근로자인건비	**39,686,748**	**38,910,251**	**35,916,884**	**776,497**	**3,769,864**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14,880,642	14,561,400	14,610,932	319,242	269,710	◦ 집행인원 반영 등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 운영	24,806,106	24,348,851	21,305,952	457,255	3,500,154	◦ 장애인근로자인건비 생활임금인상분 반영 등
교육공무직인건비	**840,962,387**	**742,817,046**	**822,490,314**	**98,145,341**	**18,472,073**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823,428,387	725,385,246	806,484,314	98,043,141	16,944,073	◦ 근무일수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반영 ◦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각종 수당 증액분 반영
맞춤형복지비	17,534,000	17,431,800	16,006,000	102,200	1,528,000	

○ 서울시교육청의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인건비'로 구성됨. '계약제교원인건비'는 정규 교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한 계약제교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지방공무원 결원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공무직인건비'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근로자 인건비는 전

년도 본예산(1조 2,218억 9천 9백만원)보다 1,049억 4천 5백만원 증가된 1조 3,268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교육공무직원의 통합인건비(981억 4천 5백만원)가 근무 일수 확대 및 수당 증액에 따라 증액되고, 계약제교원의 인건비(60억 2천 3백만원)가 퇴직인원 증가 및 법정부담금 증가로 증액되며, 계약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생활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면서 증액되었기 때문임.

- 교육공무직원의 통합인건비는 2024단체 협약 인건비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퇴직 인원 및 국민연금 등의 2026년도 요율이 반영된 것이며,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생활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금번 서울시교육청 근로자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됨.

○ 다만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근로자 인건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현액(8,517억 2천 2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2.8%(234억 6천 2백만원), 2023년 예산현액(9,202억 2천 4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2.5%(227억 3천 6백만원), 2024년 예산현액(1조 1,519억 1천 9백만원), 2025년(예상) 예산현액(1조 2,832억 6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2.5%(314억 4천만)로 최근 4년간 평균 불용률은 2.6%임.

○ 이와 같이 근로자 인건비의 불용률은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나, 인건비 중 공무원 인건비(0.9%) 및 사립학교 인건비(0.8%)의 최근 4년간 평균 불용률에 비하면 근로자 인건비 평균 불용률이 높은 상황이며,

인건비의 경우 불용률이 2%~3% 정도라 하여도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 규모는 수 백억원에 이름. 특히 근로자인건비 중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2024년에 전년도 대비 37.9%(1,979억 2백만원), 2025년에 전년도 대비 10.2%(1,312억 8천 7백만원) 증액되면서 근로자 인건비의 예산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임.

[표-82] 근로자 인건비 연도별 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현액	증감내역		예산현액	증감내역		예산현액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계약제 교원	366,125	27,424	8.1%	395,585	29,460	8.0%	424,800	29,215	6.9%
계약제 근로자	32,333	2,059	6.8%	36,666	4,333	13.4%	35,916	-750	-2.1%
교육공무 직원	521,766	39,019	8.1%	719,668	197,902	**37.9%**	822,490	102,822	**12.5%**
계	920,224	68,502	8.0%	1,151,919	231,695	25.2%	1,283,206	131,287	10.2%

○ 이에 최근 4년간 근로자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26년 인건비 또한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교육청의 세입 결손에 따른 세출 절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동 사업비는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2.6%)을 적용하여 편성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83] 근로자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2022	계약제교원인건비	338,701	334,735	3,966	1.2%
	계약제근로자인건비	30,274	27,463	2,811	9.3%
	교육공무직원인건비	482,747	466,062	16,685	3.5%
	소계	851,722	828,260	23,462	2.8%
2023	계약제교원인건비	366,125	362,288	3,837	1.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32,333	27,972	4,361	13.5%
	교육공무직원인건비	521,766	507,228	14,538	2.8%
	소계	920,224	897,488	22,736	2.5%
2024	계약제교원인건비	395,585	385,643	9,942	2.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36,666	34,759	1,907	5.2%
	교육공무직원인건비	719,668	703,702	15,966	2.2%
	소계	1,151,919	1,124,104	27,815	2.4%
2025	계약제교원인건비	424,800	400,847	23,953	5.6%
	계약제근로자인건비	35,916	33,801	2,115	5.9%
	교육공무직원인건비	822,490	817,118	5,372	0.7%
	소계	1,283,206	1,251,766	31,440	2.5%

바) 학교기본운영비-예산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386쪽)

(단위 : 천원, %)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677,387,560**	**663,586,415**	**좌동**	**13,801,145**	**좌동**	
학교기본운영비	677,387,560	663,586,415	좌동	13,801,145	좌동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총액으로 배분하여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내실화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6,635억 8천 6백만원) 보다 138억 1백만원 증액된 6,773억 8천 8백만원 편성됨.

○ 이와 같은 학교기본운영비는 **공통경상운영비**와 **통합교부운영비**로 구분되는데 공통경상운영비는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의 교육비 결정 함수에 의해 산출된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되며 전년도 보다 64억 증액됨.

○ 한편 통합교부운영비는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학교에 교부하게 되며,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동 경비는 공통경상운영비와 달리 목적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각급 학교에 교부되는 방식으로,

목적사업이 확대되어 전체 학생이 사업 대상이 되는 수준이면 목적사업비를 폐지하고 학교기본운영비의 통합교부사업으로 편성되게 됨.

[표-84] 근로자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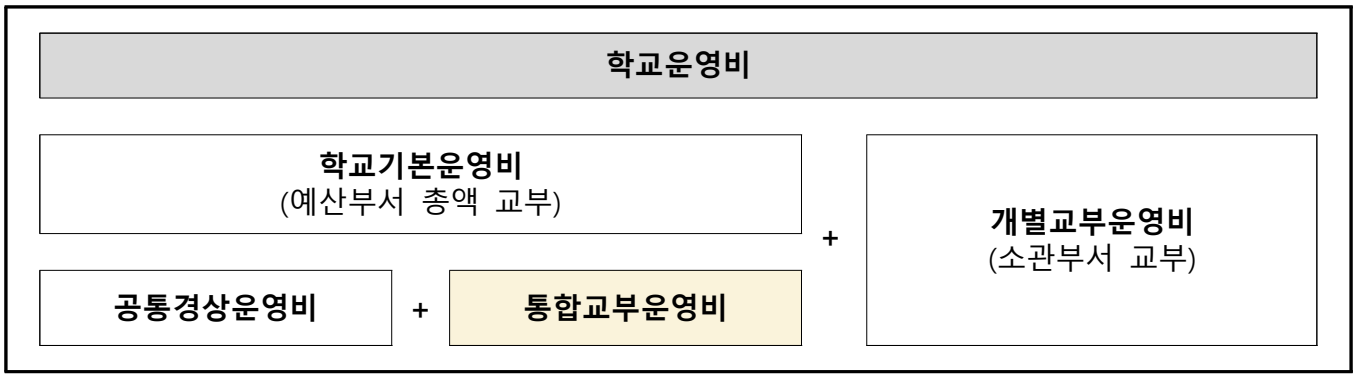

- 이에 금번 예산안에도 전년도 목적사업이었던 '학교자치활성화지원' 사업이 금번 예산안에는 목적사업으로는 폐지되고 대신 통합교부사업으로 편성됨. 이와 같이 통합교부사업에서 목적사업 폐지로 편성되는 사업은 예산서 상에 사업이 폐지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학교기본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통합교부운영비의 2026년도 사업은 총 28개이며 기존사업 26개, 신규사업 1개, 목적사업 전환이 1개로 총 1,164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됨.

- 이 중 목적사업비에서 전환된 '학교자치활성화지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교자치협의회'를 운영하여 학교 자치 기구 간 소통·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바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당시 동 사업의 목적이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참여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나, 세부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연수 등 행사성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별로 2백만원을 지원청마다 예산을 일괄적으로 재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음[103].

103)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채 금번 예산안에 동 사업을 통합교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통합교부운영비 사업에는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자율사업운영제[104]'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목적사업에서 전환된 '학교자치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은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표-85] 2026년도 통합교부운영비 사업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전환 구분	사업항목	2025년	2026년	증감
합 계		**109,078,727**	**116,483,892**	**7,405,165**
목적에서 전환(1개)	소 계	-	1,950,000	**1,950,000**
	학교자치활성화지원	-	1,950,000	1,950,000
신규(1개)	소 계	-	2,952,000	**2,952,000**
	학생맞춤통합지원운영	-	2,952,000	2,952,000
기존사업 (26개)	소 계	109,078,727	111,581,892	**2,503,165**
	산업(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4,079,500	6,149,000	2,069,500
	학생안전체험교육 및 기자재 지원	968,700	975,300	6,600
	교육과정 자율운영 영역 지원	11,592,500	11,781,500	189,000
	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	1,280,800	1,289,800	9,000
	교육지원팀 소속 교사 수업시수경감 강사비 지원	4,219,500	4,232,550	13,050
	정보(SW,AI)교육 실습비 지원	774,400	780,000	5,600
	과학실 안전장비 및 실험기자재 구입 지원	1,870,000	1,920,000	50,000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2,082,400	3,079,600	997,200
	유치원 학습자료 구입 및 현장학습 지원	2,827,500	2,807,500	△20,000
	학습준비물 구입·지원	13,193,552	12,611,272	△582,280
	학생 참여형 수업지원(꿈잼꿈실)	7,918,000	7,723,000	△195,000
	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4,121,550	4,324,500	202,950
	배움터지킴이 운영	9,024,000	9,069,120	45,120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경감 강사비	3,541,625	3,567,000	25,375
	학생자치참여예산제 운영	2,217,500	2,277,000	59,500

104) 학교자율사업운영제는 교육과정 자율운영 영역(교육과정 자율운영+선택사업 자율운영)과 공동체 영역(학교안 교원 학습공동체, 학생자치참여예산제, 학교학부모회 운영)으로 구분되며,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 및 학교 구성원의 학사운영 참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임.

(단위 : 천원, %)

전환 구분	사업항목	2025년	2026년	증감
	위클래스 운영	1,465,500	1,476,000	10,500
	취업기능강화 운영	69,000	69,000	-
	중학교로 찾아가는 직업계고 진학설명회 운영	41,400	41,850	450
	초등 수영교육 지원	**5,717,500**	6,130,000	412,500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강사비 지원	5,630,400	5,650,800	20,400
	초등예술하나	10,666,400	9,905,100	△761,300
	중등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828,000	1,395,000	567,000
	학생예술동아리지원	138,000	234,000	96,000
	생태습관질환진단비지원	1,954,000	1,968,000	14,000
	특수학교 자유학기 및 고교학점제 운영	242,000	242,000	-
	청소용역비지원	12,615,000	11,883,000	△732,000

사) 교육지원청행정개선활동지원-예산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393쪽)

(단위 : 천원, %)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945,612**	**2,791,279**	**좌동**	**154,333**	**좌동**	
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2,945,612	2,791,279	좌동	154,333	좌동	

○ 교육지원청행정개선활동지원은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행정개선활동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27억 9천 1백만원) 보다 1억 5천 4백만원 증액된 29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1개 교육지원청의 인건비(2억 2천만원), 운영비(22억 9천 8백만원), 업무추진비(3억 3천 7백만원), 복리후생비(학습공동체연구지원비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비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현재 기관운영비가 아닌 교육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실제 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비는 예산서에 '교육청지원청 기본운영비'로 106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즉, 현재 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비는 본청과 달리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와 '교육지원청행정개선활동지원'으로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고, 그 중 '교육지원청행정개선활동지원'은 기관운영비가 아닌 교육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교육청의 기관운영비가 과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임.

[표-86]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단위 : 천원, %)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624,189**	**10,110,324**	**10,310,923**	**514,865**	**314,266**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10,624,189	10,110,324	10,310,923	514,865	314,266	◦ 교육지원청 인원 증가 등 반영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기관운영비 편성을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별 기관운영비 재원배분 총괄표」에 따라 전체 예산 및 지원청별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청별로 책정된 예산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와 '교육지원청행정개선활동지원'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힘[105].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별 기관운영비 재원배분 총괄표」을 살펴보면, 교육지원청 기관운영비 예산 산출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목별(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산출내역에 근거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단순하 교육청 자체 분류에 의해 전체 예산을 산정하고 있음.

- 더욱이 교육청 자체 분류에는 특색사업지원경비, 별도인정경비 등 어떤 사업인지도 불분명한 사업이 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등 현재 교육지원청 기관운영비 예산은 산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표-87] 교육지원청별 기관운영비 재원배분 총괄표

(단위 : 천원, %)

경비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추경)	증 감	
			금액	비율
기본경비	12,511,601	11,759,362	752,239	**6.0**
특색사업지원경비	110,000	110,000	-	**0.0**

(단위 : 천원, %)

경비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추경)	증 감	
			금액	비율
별도인정경비	55,000	-	55,000	**100.0**
감사출장/관재수당	62,640	63,720	△1,080	**△1.7**
특정업무경비	355,560	354,120	1,440	**0.4**
특수직군 직고용전환 용역비	1,099,000	1,066,000	33,000	**3.0**
불용액 감액	△679,000	△251,000	△428,000	**△63**
합 계	**13,514,801**	**13,102,202**	**412,599**	**3.1**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제출 자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기관운영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원청별 산출 내역을 재산정하여 전체 예산을 추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 편성 방식에 있어서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 전체 기관운영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사업비에 편성된 '교육지원청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와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이와 같은 문제는 직속기관 기관운영비(교육지원기관행정활동개선활동지원, 교육지원기관지원운영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아) 학부모관련사업-교육협력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570쪽)

(단위 : 천원, %)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214,840**	**1,018,000**	**1,208,000**	**196,840**	**6,840**	
단위학교학부모회지원	574,000	454,000	534,000	120,000	40,000	
서울교육공론화사업	640,840	564,000	674,000	76,840	△33,160	◦ 교육지원청 학부모 공론장 실시 ◦ 교육사회공헌(서울교육+플러스) 예산 포함

○ 학부모관련사업은 학부모의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육청과 학부모의 상호 교류 및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10억 1천 8백만원) 보다 1억 9천 7백만원 증액된 12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됨.

○ 학부모관련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학부모정책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2025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동 계획에서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는 '개인·부모·**학교협력자**로서의 학부모를 다각적 지원', '**가정-학교 협력**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 등 으로 구성됨.

즉, 학부모정책의 핵심은 **학부모-교사 협력**,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 중 '서울교육공론화' 사업의 사업 대상 및 내용을 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소통 하려는 사업으로 보이며,

이는 '학교에서의 학부모 참여 활성화'라는 정부의 학부모 정책의 근

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동 사업을 학부모관련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표-88] 서울교육공론화 사업에 대한 개요

❍ 기간 : 2026. 1. ~ 12. ❍ 대상 : **서울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누구나** ❍ 내용 - **다양한 교육주체**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공론장 운영 - 서울교육정책 과정에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운영** - 학교 현장 의견수렴 강화을 위한 학부모와 직접 소통의 장 마련 - 교육사회공헌(서울교육+플러스) 사업 예산 편성 - 전년 대비 증감 사유 ·학부모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학부모 공론장 예산 편성

5) 교육정책국

가) 인공지능(AI)교육기반조성-창의미래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606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31,429**	**-**	**좌동**	**431,429**	**좌동**	
AI교육센터	431,429	-	좌동	431,429	좌동	◦ AI교육센터 신규 구축 추진

○ **"인공지능(AI)교육기반조성"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요구됨에 따라, 학생이 AI를 기반으로 학생이 체계적인 교육·연수·체험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AI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총 4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히 "AI교육센터"는 국정과제[106]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107]등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확대와 빠르게 성장하는 AI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자산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동 2026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임.**

[표-89] AI교육센터 시도 구축 현황

• 빠르게 확산되는 AI교육 전문 시설 요구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AI교육센터 구축 확산	
① 인천·영종AI교육센터(2018.12.), ② 경기 SW·AI교육지원센터(2022.3.), ③ 제주 SW·AI체험관(2022.5.) ④ 경북 인공지능교육센터(2023.07),	⑤ 전북 AI·SW체험센터(2024.10.), ⑥ 부산 SW·AI교육거점센터(2025.1.), ⑦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2025.3.), ⑧ 대구 AI교육센터(2025.3.),

106) 123대 구정과제 'AI 3대 강국 도약'(25.9),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과기정통부) https://www.korea.kr/govVision/index.html?call_from=koreakr

107)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25.9.12)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용산구 신청사 이전계획(‘26년 2월)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육청 구성원·학생·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기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청사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 청사 1층과 2층 공간을 활용하여 AI교육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108)]

- 서울시교육청은 1층을 스토리가 있는 체험·전시 존(ZONE)으로 구성하여 최신 교육 및 기술 전시를 계획하고, 2층을 소규모 집중학습부터 대규모 협업까지 아우르는 확장형 랩(LAB)로 구성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가변형 공간조성에 의한 프로젝트 단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표-90] AI교육센터 사업개요(안) -현 서울시교육청 본청 건물[109)]

○ 사업기간: 2025.07. ~ 2027.05.(약 22개월)
○ 사업량: 건축연면적 2,251㎡ , 682평 (지상 1층/ 지상 2층)
- 1층: 전시·체험공간, 운영공간, 안내공간 1,125㎡
- 2층: 교육공간, 창작·체험공간, 사무공간 1,126㎡

사업명	현황			총사업비(단위: 억원)					
	완공 예정 시기	학급수 (특수)	학생수 (급당)	부담 주체	교육청 (보유)	특교	기타	소계	합계
서울시교육청 AI교육센터 구축 사업	2027.05	-	-	공사비	54.61	-	-	54.61	88.61
				기타	31	-	-	34	
	위치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48 (서울시교육청 본관 1,2층)				심사이력 (자체투자심사)		최초심사	

○ AI교육센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통한 AI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교사에게는 수업 설계, 콘텐츠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AI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개방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손쉽게 AI를 접하고 교육

108)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 계획(안), 학교지원과-15043(2025.9.10.) 요약 정리함
109)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17번(2025.11.17.), AI교육센터 구축 사업 설명자료 2p

을 받음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110].

- 일례로 부산의 SW·AI교육거점센터는 2022년 폐교된 덕천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공간으로 재탄생, 학생·학부모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111]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은 "AI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2026년부터 2027년 준공 시기까지 총 88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동 예산안에 총비용의 일부인 설계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4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91] AI교육센터 소요예산 : 431,429천원

· 운영비			100,000	천원
- 전시,체험콘텐츠제작및구현	100,000,000원×1식	=	100,000	천원
· 보전금			29,975	천원
- 설계공모보상비	29,975,000원×1식	=	29,975	천원
· 건설비			301,454	천원
- 설계비	288,164,000원×1식	=	288,164	천원
- 설계의도구현비	13,290,000원×1식	=	13,290	천원

○ 동 예산안은 현재 자체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2026년도 설계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비 및 설계의도구현비, 설계공모보상비를 편성하고 있고, 이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 계획(안)」에 따른 AI교육센터 사업추진 일정에 부합하는 편성임.

110)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 계획(안)」, 학교지원과-15043(2025.9.10.) 13p 발췌
111)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산시 교육 현장방문(2025.10.15.) 자료를 발췌한 것임.

[표-92] AI교육센터 사업추진 일정[112)]

구분	사업명	추진내용	2025				2026				202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본관동	AI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										
		공공건축 심의 및 자체재정투자심사			지투심	'26본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공 및 준공										完

○ 그러나, 동 예산안 가운데 전시,체험콘텐츠제작및구현으로 편성된 1억원은 '설계자와 협업하여 전시·체험 컨텐츠를 완성도 있게 구현' 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113)]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기에는 연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즉 '설계공모' 는 건축물의 디자인, 구조, 기능에 관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과정[114)]이지만,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및 구현' 은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물의 설계가 확정된 후, 해당 공간 내부에 들어설 전시물, 미디어 콘텐츠, 체험 시설 등을 기획하고 제작, 설치하는 별도의 과정을 의미하는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설계비 외에 운영비 항목은 그 필요성에 대한 보완이 이뤄진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12)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 계획(안)」, 학교지원과-15043(2025.9.10.) 24p 발췌
113) 상동 6p,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및 필요성 부분 발췌
114)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14. 생략 및 전체 내용 요약

나) 창의미래교육과- 수학교육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643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712,013**	**1,066,330**	**1,312,857**	**645,683**	**399,156**	
서울수학학습메타버스 구축운영	100,000	100,000	좌동	-	좌동	
수학교원전문성신장 지원	72,330	72,330	좌동	-	좌동	
수학교육센터구축	**1,080,000**	**680,000**	**880,000**	**400,000**	**200,000**	**◦ 신규구축(4개소)에 따른 시설비 및 교구구입비 추가**
수학교육센터 프로그램운영	459,683	190,000	236,527	269,683	223,156	◦ 신규구축(4개소)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증가
수학평가선도학교운영	-	24,000	좌동	△24,000	좌동	

○ **“수학교육지원”은 서울 학생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수학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천5백68만 3천원이 늘어난 17억 1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수학교육센터구축”은 서울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해 현장 밀착형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고, 과학교육센터의 수학·과학·메이커 교육 공간과 연계하여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총 10억 8천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기존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중화중, 서울성원초, 하계중, 영등포중) 4개소 외에 추가로 4개의 학교에 신규 수학교육 센터를 구축하고 및 기자재·교구를 확충하여 인근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학교육센터구축”은 지난 2025년도 본예산에 기존 4개의 과학교육**

센터와 연계하여 수학교육센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바 있으며,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수학교육센터 내 수학교구은행을 구축하기 위해 대여용수학교구구입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음.

이로써 수학교육센터 구축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여용수학교구구입비의 3가지 예산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93]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수학교육센터구축 소요예산 : 680,000천원

· 건설비			480,000	천원
- 시설비	120,000,000원×4센터	=	480,000	천원
· 유형자산			200,000	천원
- 자산취득비	50,000,000원×4센터	=	200,000	천원

[표-94]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수학교육센터구축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유형자산			200,000	천원
- 대여용수학교구구입	50,000,000원×4센터	=	200,000	천원

○ 지난 2025년도 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교부된 자산취득비는 센터구축과정에서 필요한 가구(책상, 의자, 수납장, 사물함 등)와 전자기기(PC, 전자칠판,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를 구매하는 것[115]으로 센터당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대여용수학교구구입비는[116] 지역단위 학교별 수학·과학·융합교육 기반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 갖추기 어려운 수학·과학 기자재 및 교구 대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센터당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115)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17번(2025.11.07.), 수학교육지원 소요예산 세부산출기초내역 참조
116)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17번(2025.11.07.), 2025학년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수학) 운영계획

[표-95] 수학교육센터 자산취득비 산출내역[117)]

순번	구분	예상단가 (천원)	수량	금액(천원)
1	교실 교사용 책상	500	1	500
2	교사용 책상 서랍장	250	2	500
3	교사용 의자	400	3	1,200
4	학생용 책상	300	20	6,000
5	학생용 의자	150	20	3,000
6	낮은수납장600	200	5	1,000
7	낮은수납장800	230	7	1,610
8	교사용 책상	400	2	800
9	교사용 사물함	300	2	600
10	복합기 사물함	250	1	250
11	키큰수납장	400	2	800
12	회의용 테이블 대	650	1	650
13	회의용 테이블 소	500	1	500
14	회의용 의자	200	10	2,000
15	냉장고	500	1	500
16	공기청정기	600	1	600
17	청소기	450	1	450
18	98인치 전자칠판	6,500	1	6,500
19	75인치 전자칠판	3,400	1	3,400
20	85인치 TV	3,000	2	6,000
21	교사용 데스크톱	2,150	3	6,450
22	교사용 모니터	300	6	1,800
23	수업용 노트북(대여용)	1,500	3	4,890
	합 계			**50,000**

[표-96] 수학교육센터 대여용 수학교구 종류 및 산출내역 [118)]

연번	품명	수량	단가	금액(천원)
1	메타 퀘스트	3	1,250	3,750
2	연산 게임 키트	2	588.9	1,177.8
3	사나고 3d 펜 키트	25	105.736	2,643.4
4	슈퍼포디프레임 세트	1	360	360
5	짐보리 맥포머스 스타터 세트	25	83.3	2,082.5
6	조노돔 시스템 기하세트 학급용	1	1,375	1,375
7	조노돔 2차 지오데식돔 키트	10	40	400
8	목재 정다면체 set	1	1,080	1,080
9	그래비트랙스 코어 스타터	16	62.5	1,000
10	그래비트랙스 더 게임 플로우	24	27.9	669.6
11	마이크로비트 지니어스 키트	25	88	2,200

117)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17번(2025.11.07.), 2025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자산취득비 및 교구 산출기초

12	핑퐁 로봇 에듀 스타트 베타	25	186	4,650
13	핑퐁 드로잉봇	11	2.2	24.2
14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10	584	5,840
15	레고 사이언스	6	561	3,366
16	챌린지10	3	25	75
17	쉐입스업	3	26	78
18	샘샘피자가게	3	28	84
19	지오피아	20	30	600
20	[Math Museum]에셔 테셀레이션	3	800	2,400
21	피타고라스 정리 퍼즐 세트(9종)	1	310	310
22	[MathMaker]전시체험교구_원주각 실험기	1	1,050	1,050
23	톱니바퀴로 배우는 배수	1	450	450
24	소마큐브 2색 (특대형) 단위길이 5cm	1	135	135
25	소마큐브 2색 (대형) 단위길이 3.5cm	1	82.5	82.5
26	쌍곡면 관찰기	1	300	300
27	내외심 회전 관찰기	1	880	880
28	기대주	20	36.5	730
29	빙고 텐텐	20	36.5	730
30	IQ 점판	20	10	200
31	삼색 자석 큐브	23	50	1,150
32	싱크로스 대형	1	1,320	1,320
33	싱크로스 BIG	3	36	108
34	로직큐	10	27	270
35	소수로 놀자	10	23	230
36	차곡차곡 퍼즐(대형 교구)	1	1,500	1,500
37	3차원 퍼즐(대형 교구)	1	800	800
38	목재 오더리 삼각형	2	88	176
39	목재 아르키메데스 실린더	2	187	374
40	코드론 에듀 스쿨패키지(10인 세트)	2	1,070	2,140
41	카미봇파이 AI 스쿨패키지(10인 세트)	1	3,209	3,209
합계				50,000

○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서는 4개 신규 센터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총 10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각각의 센터구축을 위한 기본 시설비, 대여용 수학교구구입비, 자산취득비 규모는 2025년도와 동일하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으나,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신규 4센터 외에 4센터분인 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음.**

118) 서울시의회 요구자료(요구번호 2025-1128번), '수학교육지원' (제출일 2025.6.4.)

[표-97] 2026년도 수학교육센터구축 소요예산 : 1,080,000천원

·	건설비			480,000	천원
	- 시설비	120,000,000원×4센터	=	480,000	천원
·	유형자산			600,000	천원
	- 대여용수학교구구입	50,000,000원×4센터	=	200,000	천원
	- 자산취득비	**50,000,000원×8센터**	**=**	**400,000**	**천원**

○ 기존 4개 수학교육센터는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동 사업은 신규 수학교육센터 구축 비용인 8억 8천만원만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예산안은 추가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전년대비 증감 사유로 '센터 신규구축을 위한 구축비 및 자산취득비 확보'[119]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 자산취득비는 센터 내 기자재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써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 및 서비스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성격의 일반수용비와 구분됨.

- 즉 자산취득비는 전자칠판, 교구장, 컴퓨터,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 수학 체험을 위한 대형교구의 구비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소모성 교구와 달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그 사용 기간이 길고 쉽게 파손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예산이 교부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단순한 기자재 확충의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면, 신규구축을 목적으로 한 예산 외에 추가로 자산취득비 4개 센터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19)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4-2) 645p

다) 유아수석교사제운영- 유아교육과 (사업별 설명서 768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1,750**	**11,750**	**5,150**	**-**	**6,600**	
유치원수석교사 선발및운영	11,750	11,750	5,150	-	6,600	

○ "유아수석교사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120]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특정한 교사를 선발·운영하는 것으로서, 수업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원의 일부를 '수석교사'로 선발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금번 예산안에는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운영해왔으며, 수업전문성 향상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동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원자를 단 한 명도 받지 못하여 매년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표-98] 최근 3년간('23~'25) 수석교사 선발 및 운영 관련 예산 현황

연도	예산 편성	집행액	불용액	비고
2023	17,300	-	17,300	
2024	20,050	-	20,050	
2025	5,150	-	-	2025년 11월 사업 추진 예정

○ **유아수석교사의 미응시(선발)에 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공립 유치원 교사 87%가 교육경력 15년 미만으로 지원 자격이 없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의 27%가 원감 자격 소지자로 지원 대상자가 매우 적은 것을 이유로 밝혔음.**

120) 제22조(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표-99] 공립유치원 재직기간별 교원 수

	교사	비율
정원	1,126명	100%
재직 기간 15년 이하	985명	87.5%
재직 기간 15년 이상	141명	12.5%
재직 기간 15년 이상 중 수석교사 지원 대상 (원로교사, 휴직, 파견자 제외)	**122명**	**11%**
원감 자격 소지자	33명	1,126명 중 전체 3% 122명 중 27% (지원 대상자 중 원감 자격 소지자 비율)

즉 서울 공립유치원의 수석교사 대상자는 전체 공립유치원 교사 전체 인원 중 단 11%에 해당하는 122명에 불과하고, 원감 자격 소지자 33명을 제외하면 순수 지원 가능자는 1,126명 중 약 8%에 불과한 89명에 불과함.

이는 원감 및 원장으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석교사제'가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년 지원자를 계속해서 배출하지 못할 우려를 가지고 있음.

○ 이와 함께, 수석교사는 임용 시 가산점 부여와 승진이 제한되고, 특히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구활동비가 40만원으로 동결[121]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여 선발 대상자 유인 효과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제도 자체가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은 지난 3년간 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5년은 1천 1백75만원을 편성하였

121)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액) 연구활동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으나 지원자가 없어 지난 6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026년도 선발[122] 비용을 제외한 자격연수비 및 연구활동비를 삭감하였음.[123]

○ 그런데 10월부터 공고된 2026년도 수석교사 선발 과정에서도 모집 정원 1명의 유아수석교사의 지원자가 단 1명도 나타나지 않아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의 자격연수비 및 연구활동비가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표-100] 최근 3년간('23~'25) 수석교사 현황

구분	선발 예정 인원	응시 인원	선발 인원
2023	1	0	0
2024	1	0	0
2025	1	0	0

○ '유아수석교사제'는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124]에 규정된 법정사항으로 법률 개정이 없이는 동 제도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공고를 통해 선발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수석교사의 모집 공고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125], 이는 선발 시기가 예산 편성시기보다 먼저 있게 되어 선발자가 없는 경우에도 차년도 예산[126]을 편성하고, 선발자가 없어 불용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과정을 반복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선발 시기 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와 지속

122) 2025년 11월 수석교사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
123) 예산의 사용 구조는 예산안 당해연도 자격연수비 및 연구활동비, 차년도 대상자 선발비임
124)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2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주) 위 기준은 내부 지침으로서 공개되지 않음
126) 예산의 구성은 각주 45번과 같음

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유아수석교사 미선발 시 대상자에게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불용이 예상되는 자격연수비 및 수석교사연구활동비에 대한 재검토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일부 감액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101] 유아수석교사제 소요예산 : 11,750천원

· 운영비			7,550	천원
- 신규수석교사선발급량비	9,000원×10명×5회	=	450	천원
- 신규수석교사선발출제및채점수당	(40,000원+ 10,000원)×3영역×10명×3일	=	4,500	천원
- 자격연수비	2,600,000원×1명	=	2,600	천원
· 업무추진비			200	천원
- 면접전형사업추진경비	20,000원×5명	=	100	천원
- 인성평가사업추진경비	20,000원×5명	=	1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4,000	천원
- 수석교사연구활동비	400,000원×1명×10월	=	4,000	천원

○ 지난 2017년 조희연 교육감은 공약 사항으로 교육수요에 따른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지난 2023년 공립유치원 4개원(총26학급)을 신설하였음.[127]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유아교사 양성 및 자격기준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음.

○ 2025년부터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교사 1명당 13명 초과시 교사 배치 필요), 3세 학급에 1일 최대 5시간의 교육과정지원 인력 1명 배치 등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있지만,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수석교사제 발전에 관한 방향성은 전무한 상태임.

127)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2023.12) - 공립유치원 확대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아수석교사제는 그 목적에 비하여 실질적인 운용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많은바, 차후 교육부와 선발시기 조정 및 법 개정을 통한 수석교사 미선발 관련 조항 삽입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장기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수석교사제 자격기준(15년 이상 경력 교원)을 완화하고, 연구활동비 증액, 수석교사 경력 시 원감·원장 자격 취득과정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 지원자 유인 요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라) 유치원교원연수지원, 초등교원연수지원, 중등교원연수지원 – 유·초·중등교육과 (사업별 설명자료 685쪽, 773쪽, 873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유치원교원연수지원	**328,520**	**258,200**	**좌동**	**70,300**	**좌동**	
자격연수위탁교육	**328,520**	**258,200**	**좌동**	**70,300**	**좌동**	
초등교원연수지원	**1,271,062**	**1,170,824**	**좌동**	**100,238**	**좌동**	
공사립초등교장 자격연수	**980,885**	**889,822**	**좌동**	**91,063**	**좌동**	국가정책연수과정 전면 집합연수 실시로 인한 위탁교육비 증액
중등교원연수지원	**3,161,138**	**2,766,472**	**좌동**	**394,666**	**좌동**	
기간제교원1급(정)교사 자격연수	570,100	540,100	좌동	30,000	좌동	
복수전공및부전공과목 자격연수	126,100	126,100	좌동	-	좌동	
전문직역량강화연수	25,220	25,220	좌동	-	좌동	
중등1급(정)교사자격 연수	334,578	313,912	좌동	20,666	좌동	
중등교장자격연수	**1,505,140**	**1,161,140**	**좌동**	**344,000**	**좌동**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연수	600,000	600,000	좌동	-	좌동	

○ **“유치원교원연수지원”과 “초등교원연수지원”, “중등교원연수지원” 사업은 각각 유치원 교원의 원장·특수·보건 1급 정교사 등의 자격연수와 공·사립 초등(특수)학교 교장 자격연수, 중등학교 교장·1급 정교사·부전공 과목 등의 자격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 **금번 예산안에서 “유치원교원연수지원”은 3억 2천 9백만원, “초등교원연수지원”은 12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 본예산 대비 각각 7천만원과 1억원이 증액되었고, “중등교원연수지원”은 31억 6천 1백만원이 편성되어 지난 본예산 대비 3억 9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 중 “유치원교원연수지원”의 ‘자격연수위탁교육’은 원장 자격연수를 위한 위탁교육비 3억원과 유아 특수교사 및 보건교사 등의 자격연수**

위탁교육비 2천 9백만원 등 3억 2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5년 최종예산 대비 7천만원 증액된 것임.

또한, "초등교원연수지원"의 '공사립초등교장 자격연수'는 초등 교장 자격연수를 위한 위탁운영사 선정 및 연수 운영 등을 위해 9억 8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연수 과정 중 하나인 국가정책과정이 전면 집합연수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 최종예산 대비 9천 1백만원 증액되었음.

이어 "중등교원연수지원"의 '중등교장자격연수'는 중등 교장 자격연수 위탁운영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연수대상자 증가 및 연수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3억 4천 4백만원이 늘어난 15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원장 또는 교장 자격연수의 2025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재원의 상당 부분이 수 일 내외의 국외연수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사업 예산 산출 명세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원장 또는 교장 연수와 관련한 위탁연수비용을 위탁 연수 내실화 등을 이유로 증액시켜왔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적정 예산편성 여부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표-102] 최근 5회계연도 간 교장 연수 예산 중 위탁교육비 편성 현황

연도	유치원 원장자격연수		초등교장자격연수		중등교장자격연수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2022	239,400	5,320천원×45명	691,600	5,320천원×130명	904,400	5,320천원×170명
2023	257,520	6,530천원×35명	691,600 (884,000)	5,320천원×130명 (6,800천원×130명)	1,360,000	8,000천원×170명
2024	231,200	6,800천원×34명	884,000	6,800천원×130명	1,156,000	6,800천원×170명
2025	231,200	6,800천원×34명	884,000	6,800천원×130명	1,156,000	6,800천원×170명
2026(예)	**300,000**	**7,500천원x40명**	**975,000**	**7,500천원x130명**	**1,500,000**	**7,500천원x200명**

주1) 해당 연도의 본예산에서 책정된 자격연수 '위탁교육비' 총액과 산출기초를 의미함.
주2) 2023년 초등교장자격연수의 ()는 1차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액수이고, 2026년은 위탁교육비는 예산안 기준임.

○ 구체적으로 '공사립초등교장자격연수'은 교육연수원에서 작성한 「2025 초등·특수 교장 자격연수 국외체험연수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격연수[128] 예산의 57.1%인 5억 5백만원이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국외연수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이어 '유치원 원장 가격 연수'도 「2025년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운영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7일간의 '독일' 국외 체험학습에 전체 예산의 66.3%인 1억 5천 3백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103] 초등·특수 교장 자격연수 예산 내역[129]

구분	연수시간	계획인원	이수인원	집행액(천원)	비고
본연수	132	97	97	205,450	
시도정책과정 (해외교육체험 연수)	60(28)	106	106	505,380	시도정책과정중 해외교육체험연수비용

[표-104]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예산 내역[130]

구분	연수시간	계획인원	이수인원	집행액(천원)	비고
시도정책과정	30	31	31	13,950	
본연수(해외교육체험연수)	30	31	31	153,300	본연수에 포함하여 운영

○ 또한, '중등교장자격연수' 역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중등학교를 방문하는 7일간의 연수에 총 7억 7천 3백만원을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2025년 중등 자격연수 예산 대비 66.9%가 7일 전후로 추진되는 국외연수에서 집행되었음.

128)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05번,2025.11.10.), (초등_시도정책과정_본연수) 2025년도 교(원)장 자격연수 결과보고서 내용을 조합한 것임
129) 각주 32와 같음
130)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05번,2025.11.10.), (유아_시도정책과정 및 본연수) 2025년도 원장 자격연수 결과보고서 내용을 조합한 것임

[표-105] 중등교장자격연수 시도정책과정 예산 내역[131)]

구분	연수시간	계획인원	이수인원	집행액(천원)	비고
시도정책과정	32	156	156	54,385	
해외교육체험 연수	28	156	156	772,632	시도정책과정에 포함하여 운영

○ 이는 유치원 원장 및 초·중등 교장의 자격연수가 관련 규정에 따라 25일 이상의 기간 동안 180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132)] 고려할 때 이수시간이 30시간 전후에 불과한 단기 국외연수가 전체 연수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중등교장 자격연수의 해외 체험 활동은 연수의 한 부분인[133)] 시도정책과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중등교장자격연수'의 위탁연수비 편성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확인됨.

○ '중등교장자격연수'는 시도정책연수 시간을 60시간으로 편성하고, 이 중 28시간을 해외교육체험 연수로 진행하고 있음.

○ 그런데 '중등교장자격연수'의 시도정책연수는 60시간 중 직접적인 해외체험활동 시간(28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해외연수 대상지 관련 이해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임.

[표-106] 중등교장자격연수 연수과정(시도정책과정)[134)]

131)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05번,2025.11.10.), (중등_시도정책과정)2025년도 교(원)장 자격연수 결과보고서 6p

13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1]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구분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 사서교사(1급), 보건교사(1급), 영양교사(1급), 수석교사, 교감 및 원감	교장 및 원장
기간	15일 이상	25일 이상
이수시간	90시간 이상	180시간 이상

133) 교(원)장 자격연수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연수와 시도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시도정책연수, 본 연수로 구분됨.

134)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05번,2025.11.10.), (중등_시도정책과정)2025년도 교(원)장 자격연수 결과보고서 1p

영역	핵심역량	운영 강좌명	차시	강의방식
기본 역량	성찰	꿈·긍지·신뢰,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1	토론식
		호모심비우스, 학교를 바꾸다	2	강의식
	교장 리더십	학교 공동체의 성장을 이끄는 교장 리더십	1	강의식
		인문학과 교육사이, 성찰의 리더십	2	강의식
		북유럽 교육 체험 공유 워크숍	3	발표식
	(자율) 미래교육	끊임없이 배우는 시대,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2	강의식
		디지털 교육으로 구현하는 서울 미래교육	2	강의식
		핀란드 교육의 이해 1	1	강의식
		핀란드 교육의 이해 2	2	강의식
		디지털 교육으로 성장하는 에스토니아	2	강의식
		[해외교육체험 연수] 디지털, 미래교육, 공존	28	기타
		[분단활동] 북유럽 교육에서 배우는 미래교육	4	토론, 토의식
전문 역량	학교교육 기획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학교 교육과정	2	강의식
	(자율) 서울교육 정책 이해	서울교육 정책의 이해	2	강의식
		서울교육정책 한 걸음 더	2	토론, 토의식
		슬기로운 교장생활 - 멘토와의 대화 -	4	토론, 토의식
총합			60	

○ 즉, 해외 연수 체험은 중등교장자격연수의 시·도 정책연수 자체의 본질을 시도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이 아닌 해외 체험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 및 해외 체험활동으로 호도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 상술한 사항을 종합할 때 "유치원교원연수지원"의 '자격연수위탁교육'에 편성된 원장 자격연수 예산과 "초등교원연수지원"의 '공사립 초등교장 자격연수', "중등교원연수지원"의 '중등교장자격연수'는 국외 일정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적정 연수 예산이 편성되도록 감액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더욱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주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유성 사업비로 보일 수 있는 해당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생태체험교육- 초등교육과 (사업별 설명자료 821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49,400**	**455,400**	**좌동**	**594,000**	**좌동**	
농촌유학	1,049,400	455,400	좌동	594,000	좌동	농촌유학 지역 및 인원 증가

○ **"생태체험교육"은 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 학기 이상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에서 수학(修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대비 5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된 10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농촌유학'이라고도 통칭되는 동 사업은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참여 학생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지원금(최대 6개월 지원)과 유학 지역 시도교육청의 지원예산 등을 바탕으로 유학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업임.[135)]**

- **참고로 동 사업이 전개된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참여한 학생은 누계된 실적을 기준으로 2,670명 수준이며, 2025년 1학기까지 20억 3천 2백만원이 집행되었음.**

[표-107] 2021-2025 연도별 농촌유학 참여 인원 통계[136)]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누계	비율(%)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강원						33	82	108	163	185	571	21.4
전남	81	147	223	236	159	148	139	152	141	134	1,560	58.4
전북				27	76	67	81	92	72	82	497	18.6
제주										42	42	1.6
합계	81	147	223	263	235	248	302	352	376	443	2,670	100.0

135) 2025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추진계획(관련: 초등교육과-21517, 2024. 11. 18.)
136)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20번 (2025.11.17.) 2025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사업결과보고서 2P

[표-108] 농촌유학 지원금 연간 예산 실적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021년	282,100	222,100	78.7%	
2022년	1,006,230	588,544	58.5%	생태전환교육기금
2023년	748,600	544,787	72.7%	
2024년	361,000	356,254	95.9%	**지원 기간**(1년**→6개월)** 및 **항목**(초기정착금·취약계층지원비·월유학비**→월유학비**) **축소**
2025년	455,000	320,050	71.1%	**2학기 사업비 집행 정산 중**
소계	**2,852,930**	**2,031,735**		

○ 동 사업은 2022년 이후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지적과 문제 제기로 인하여 2024년 월 유학비 지원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초기정착금 50만원 지원을 중단하는 등 지원 규모를 축소·조정함.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농촌유학 대상 시도를 제주로 확대하고, 지난 10월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6학년도부터 인천 도서지역까지 유학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음.

○ 이에 동 사업은 2026년부터 농촌유학 지원금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농촌 유학 대상 지역 확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2.3배 증액한 것임.

[표-109] 2026 농촌유학 소요예산 세부 산출 내역[137)]

· 운영비			4,920	천원
- 농촌유학설명회운영비	960,000원×2회	=	1,920	천원
- 농촌유학운영행사용품비	1,500,000원×2회	=	3,000	천원
· 업무추진비			480	천원
- 농촌유학운영사업추진경비	20,000원×6명×4지역×1회	=	480	천원
· 자치단체등이전			1,044,000	천원
- 농촌유학지원금	**3,600,000원×290명×1회**	**=**	**1,044,000**	**천원**

○ 그러나 동 사업은 농촌유학 지원금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도 학생 만족

137)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4-2), 822p 참조

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 서울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환경 교육 예산이 동 사업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예산 규모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음.

○ 우선, 지난 3년간(2023~2025년) 연도별 농촌유학 참여 학생의 만족도를 분석하면, 2025년 1학기에 참여한 학생의 만족도는 88.4% 수준으로 예산지원 규모가 컸던 2023년과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138)]

- 즉, '농촌유학'은 지원금 지급에 따라 이뤄지기보다 농산어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 해당 지역 학교에서의 생태체험활동 등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덧붙여 '농촌유학'은 연간 연장 신청률을 살펴보더라도 지원금 지급 축소 등의 영향에 관계 없이 연장신청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유학 대상지의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농촌유학 학생 등에게 교육청 지원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표-110] 2023~2025 연간 연장 신청률[139)]

(단위: 명/%)

시기	'23년		'24년		'25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신규	112	62	151	76	151	100
연장	123	186	151	276	225	343
총인원	235	248	302	352	376	443
연장신청 비율	46.8%	**79.2%**	60.9%	**91.4%**	**63.9%**	**91.2%**

※ 연장 신청비율 = (해당학기 연장자 인원) / (직전학기 총인원) x 100

138) 최근 3년간(2023~2025년 1학기) 농촌유학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평균 87.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농촌유학 모니터링 결과

구 분	'23년	'24년	'25년 1학기	평 균
만 족 도	84.4%	89.6%	88.4%	87.4%
생 태 감 수 성 증 진	87.3%	74.9%	91.3%	84.5%

139) 2025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8번, 최근 3년간 농촌유학 관련 성과, 만족도 조사결과, 연장신청률 2p

[표-111]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은 농촌유학 지역 지원금[140]

구분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전라남도 (단기형 6개월 또는 1년, 최대3년) (정주형 3년 또는 5년)	교육청	가구당 월 30만원	학생당 월 30만원
	시·군 지자체	구례, 완도: 가구당 월 40만원	해남: 학생당 월 40만원 강진: 학생당 월 30만원
		담양,고흥,보성,장흥,영암,장성 : 가구당 월 30만원	
		해남: 가구당 월 40만원 강진: 학생당 월 30만원-60만원	
전라북도 (1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	교육청	학생 1인: 30만원 학생 2인: 40만원 학생 3인: 50만원 (가구당 학생 수에 따라 지원)	학생당 월 30만원
	지자체	학생당 월 20만원(최대 3년 지원)	
강원도 (6개월 또는 1년단위,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교육청 지자체	학생당 월 60만원	
제주도 (6개월, 1년단위)	교육청	학생당 30만원 (시범운영)	
인천광역시 (6개월단위, 연장가능)	교육청	학생 1인: 30만원 학생 2인: 40만원 학생 3인: 50만원	-
	지자체	(강화군•옹진군) 학생 1인: 30만원 학생 2인: 40만원 학생 3인: 50만원	-

○ **따라서 '농촌유학'의 사업 확대가 반드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금번 예산안에 편성한 "기후변화환경교육" 예산[141]은 7억 3천 8백만원으로, 농촌유학에 편성된 예산인 10억 4천 9백만원보다 적음.**

140) 각 시도 교육청 농촌유학 홈페이지 참조 후 정리한 것임
141)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4-2), 814p 참조

- “기후변화환경교육”은 서울 학생의 환경교육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과 탄소제로실천학교 확대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후변화환경교육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 전체의 환경교육 예산보다 수백명의 학생에게 농촌체험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더욱 많다는 점을 의미하는바, 동 사업은 물론 환경교육 예산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함.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동 사업이 지원금 지급 기한을 1년으로 증가시킨 부분이나 사업 예산을 큰 폭에서 증액한 부분은 다소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동 사업은 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감액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바) 늘봄학교운영지원- 초등교육과 (사업별 설명자료 828쪽)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9,816,002**	**21,671,835**	**15,217,185**	**38,144,167**	**44,598,817**	
늘봄전담체제구축지원	63,760	-	좌동	63,760	좌동	2026년부터 늘봄학교 운영 예산 자체재원 편성
늘봄지원센터운영	124,700	-	좌동	124,700	좌동	
늘봄학교단기행정인력지원	-	1,496,620	299,329	△1,496,620	△299,329	
늘봄학교담당자역량강화	61,760	-	좌동	61,760	좌동	
늘봄학교자원봉사자	424,400	-	좌동	424,400	좌동	
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비	57,046,422	12,107,880	10,829,160	44,938,542	46,217,262	
늘봄학교환경개선구축비	2,020,000	8,000,000	4,021,361	△5,980,000	△2,001,361	
임기제교육연구사선발	45,950	45,950	좌동	-	좌동	
임기제교육연구사연수	29,010	21,385	좌동	7,625	좌동	

○ **“늘봄학교운영지원”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지원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늘봄전담체제구축지원’, ‘늘봄지원센터운영’, ‘늘봄학교자원봉사자’, ‘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비’, ‘늘봄학교환경개선구축비’ 등을 포함하여 이번 예산안에 총 5백 98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비”는 초등학교 1학년·2학년 학생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 등을 매일 2시간으로 편성·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늘봄학교 관련 예산이 자체 재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449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5백 70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됨.**

[표-112] 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비 소요예산 : 57,046,422천원

· 전출금등			173,900	천원
- 기본운영비(국립초)	26,740,000원×2교×2.5실	=	133,700	천원
- 안전관리비(국립초)	(600,000원+ 100,000원)×2교×12월	=	16,800	천원
- 위탁방식에따른지원금(국립초)	2교×2.5실×4,680,000원	=	23,4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56,872,522	천원
- 간식등운영여건개선비(공립초)	50,000원×33,000명	=	1,650,000	천원
- 기본운영비(공립초)	26,740,000원×567교×2.8실	=	42,452,424	천원
- 기본운영비(사립초)	26,740,000원×5교×2실	=	267,400	천원
- 안전관리비(공립초)	(600,000원+ 100,000원)×567교×12월	=	4,762,800	천원
- 안전관리비(사립초)	(600,000원+ 100,000원)×5교×12월	=	42,000	천원
- 위탁방식에따른지원금(사립초)	5교×2실×4,680,000원	=	46,800	천원
- 위탁방식에따른지원비(공립초)	567교×2.8실×4,680,000원	=	7,429,968	천원
- 학급운영비(공립초)	300,000원×567교×1.3실	=	221,130	천원

○ **서울시교육청은 초등1·2년 대상 '늘봄학교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비"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중 "늘봄학교운영비"[142]를 사업예산으로 편성·운영해왔음.**

양 사업은 2025년까지 교육청 자체예산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각각 50%씩 분담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부터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 예산 전액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대규모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 것[143]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표-113] 2026년도 늘봄학교프로그램 운영비

구분		공립	국립	사립	계(단위:천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기본운영비	42,452,424	133,700	267,400	42,853,524
	위탁방식에따른지원금	7,429,968	23,400	46,800	7,500,168
	소계	**49,882,392**	**157,100**	**314,200**	**50,353,692**
안전관리비		4,762,800	16,800	42,000	4,821,600
학급운영비		221,130	-	-	221,130
간식등운영여건개선비		1,650,000	-	-	1,650,000
계		56,516,322	173,900	356,200	**57,046,422**

14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534p

143)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522p,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4-2), 830p, (초등교육과-17626 (첨부)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2025년 제1차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방과후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 참조

[표-114] 각 사업 운영비 중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세세부 사업	본예산 편성			1차 추경에 편성			계
	늘봄학교운영지원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			
구분	교육청	교육부(특교)	소계	교육청	교육부(특교)	소계	
2025	10,829,160	10,829,160	**21,658,320**	18,889,632	18,889,632	**37,779,264**	59,437,584
2026	50,353,692	-	**50,353692**	-	-		50,353,692

자료: 교육청 제출

○ 그러나 예산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 전액으로 편성했던 2025년도는 교육청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각각 108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이 216억 5천 8백만원에 불과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대비 2.32배가 증액된 503억 5천 4백만원을 편성[144]하였음.

- 이는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었던 2025년도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했던 "디지털혁신방과후 프로그램운영"의 "늘봄학교운영비" 377억 7천 9백만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바, 교육청이 실질적인 사업 소요액을 본예산에 현실화하여 편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특별교부금 편성이 되지 않아 교육청이 대응 편성할 필요가 없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사업 금액까지 포함한 것은 전년도 집행액을 합산하여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예산 규모를 비대화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5년 11월 교육부(늘봄학교정책과)는 「2026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온동네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계획 안내」공문[145]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총액 1천 4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

144)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늘봄학교운영지원" 예산에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와 "안전관리비", "학급운영비", "간식등 운영여건개선비"를 포함하고 있어 이중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는 503억 5천 4백만원임.

금을 교부할 계획을 발표한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미 예측되는 동 사업의 특별교부금 상당의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재 특별교부금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년도 본예산 216억 5천 8백만원 대비 280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세수 감소에 의한 재정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은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45)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6023,'25.10.22), (늘봄학교정책과-3772, '25.11.3), (늘봄학교정책과-3807, '25.11.5), 「2026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온동네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계획 안내」

사)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학생역량·혁신교육과 (사업별 설명자료 1,036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300,975**	**1,189,035**	**좌동**	**1,111,940**	**좌동**	
개념기반탐구독서	**1,576,640**	**-**	**좌동**	**1,576,640**	**좌동**	**◦ 2026 신규 사업**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119,335	119,035	좌동	300	좌동	
서울형독서토론수업운영	605,000	1,050,000	좌동	△445,000	좌동	
서울형심층쟁점독서 토론프로그램운영	-	20,000	좌동	△20,000	좌동	

○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은 2022 개정교육과정 중 기초적인 문해력과 매체 문해력을 포함하는 ‘언어 소양’ 함양에 대한 요구로 학생이 문해력을 갖추어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며 문제해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독서 교육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23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개념기반탐구독서”는 다독(多讀)보다 이해도·적응 능력·비판적 사고력 중심의 독서 활동으로 문해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15억 7천 7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특히 동 사업은 AI와 에듀테크 활용이 일상화되는 교육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고, 디지털 과의존에 의한 문해력 저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개념기반탐구독서”는 각 지원청 별로 중점학교 및 실천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는 점 외에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독서토론수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불문명한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독서 중점학교(초·중 11교 내외)', '인문학 실천학교(고 5교)', '개념탐독 실천교사단(초·중·고 60팀 내외)'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 4천 364만원과 학교회계전출금 15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교당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115] 개념기반탐구독서 소요예산 : 1,576,640천원[146]

·	운영비			43,640	천원
	- 강사수당	(160,000원+90,000원)×5명×4회	=	5,000	천원
	- 도서구입비	20,000원×30권×12명	=	7,200	천원
	- 시설임차료	1,500,000원×12회	=	18,000	천원
	- 운영수당	(40,000원+20,000원)×12명×12회	=	8,640	천원
	- 원고료	150,000원×4명×4회	=	2,400	천원
	- 행사용품비	200,000원×12회	=	2,400	천원
·	업무추진비			3,0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15명×10회	=	3,000	천원
·	전출금등			6,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국립)	3,000,000원×2교	=	6,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1,524,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공립)	(100,000,000원×11교)+(50,000,000원×3교)+(3,000,000원×29교)	=	1,337,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사립)	(50,000,000원×2교)+(3,000,000원×29교)	=	187,000	천원

[표-116] 개념기반탐구독서 대상 및 규모[147]

구분	대상 및 규모	추진 과제
개념기반탐구독서 **독서 중점학교**	초·중 11교 교당 100,000천원	- 독서 환경 조성 -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개념 기반 탐구 독서」 수업실천연구·적용 포함 필수과제 수행
개념기반탐구독서 **인문학**(문학·문화·역사 등) **실천학교**	고 5교 교당 50,000천원	- AI·디지털 기반 인문학 교실 환경 구축 -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개념 기반 탐구 독서」 수업 실천연구·적용 - 글로벌 소양 함양 교육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문화·역사 등 탐색하기
개념기반탐구독서 **실천교사단**	초·중·고 60팀 팀당 3,000천원	-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개념 기반 탐구 독서」 실천연구 및 적용 등

146)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37p 참조
147)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18번,2025. 11.13.)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개념탐구기반독서 3p

[표-117] 독서 중점학교 추진과제[148)]

- (독서환경조성) 책과 함께 하는 학교 환경 조성으로 학교 활동 전반을 통하여 독서·인문 교육 강화 지원 - (**교육과정 연계***)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사고를 구조화하고 전이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개념 기반 탐구 독서 수업' 적용·실천 연구 * **개념탐독 프로그램 운영: 학교 단위, 학년 단위, 학급 단위 필수 사업** - (학교 도서관 연계) 학교 도서관 및 교실 속 작은 도서관(가제) 연계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적용·실천 - (지역 도서관 연계) **학교 인근 도서관 및 지역사회시설 연계 협력적 독서·인문교육 적용·실천** - (교육 3주체 연계) 교육 3주체별(학생, 교사,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 및 '독서·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적용·실천 - (AI·디지털 연계) 학생 개개인에 맞는 독서자료 추천, 디지털 플랫폼에서 학생의 독서 기록과 반응을 분석해 교사가 학생별 독서 습관 및 성취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도

○ **"서울형독서토론수업운영"은 「2025년도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서울형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의 기본 방향성을 내용으로 학년이나 학급 단위에서 독서·토론 활동과 교과 수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별 운영비 지원, 독서교육교사단 운영, 독서 실천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개념기반탐구독서"사업 중 '독서 중점학교'의 교육과정 연계 학교·학년·학급 단위 독서 수업이나, '인문학 실천학교'의 '개념기반 탐구 독서' 모델 적용 및 실천연구·사례공유, '개념기반탐구독서 실천교사단'의 운영과 사업 취지나 목적에 있어 그 유사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148)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2818번, 2025.11.12.),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개념기반탐구독서 사업계획서 4p

[표-118] '25년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사업 비교표

구분	개념기반탐구독서	서울형 독서·토론 수업 운영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참여 대상	• 중점학교 11교 • 실천학교 5교 • 개념탐독 실천교사단 (초·중·고 60개팀)	• 초, 중, 고등학교 (330개교)
운영 단위	• 중점학교 : 학교·학년·학급단위 • 실천학교 : 고등학교 학급·학년 단위 • 실천교사단 : 학급 또는 학년 단위	• 초등 : 학년 또는 학급 단위(교과 내, 교과 간 융합) • 중등 : 수업 팀 단위(동학년 동교과, 동학년 교과융합 수업 학급 등)
운영 내용	• 학교 내 독서환경개선·조성사업 및 교육과정 연계 학교·학년·학급 단위 개념탐독 독서수업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도서관 연계) 학교도서관 및 교실속 작은도서관 연계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적용·실천 • (지역 도서관 연계) 학교 인근 도서관 지역사회 시설 연계 • (교육 3주체 연계) 교육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 • AI 활용 독서수업, 전문가 상호작용 인문학교육 등 • 수업모델 적용, 사례공유, 연수 등	• 교과와 연계한 협력적 독서토론 활동(책 읽기, 토론하기 및 쓰기) 및 학생 주도 탐구 활동(카드뉴스나 글, 전시물 제작, 자료 조사 등) 지원 • 독서량 최저 학교급 특화 한 권 깊게 읽기·토론하기·쓰기 프로그램 운영
단위 학교 예산지원	• 초·중 11교 교당 100,000천원 • 고교 5교 교당 5,000천원 • 초·중·고 60팀 팀당 3,000천원	• (국립) 교당 1,500천원 x2교 • (공립) 교당 1,500천원 x 131교 + 2,500천원 x 44교 • (사립) 교당 1,500천원 x 87교 + 2,500천원 x 66교

○ 또한 "개념기반탐구독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기본계획[149]에 따른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학교도서관 역할 재구조화 등과 연계하여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학교 등 운영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소요되는 시설개선 사업과 독서 관련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동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운영할 당위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학교자율사업운영제[150]를 통해 기본운영비 속에서 독서·인문교육과정 체계화,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151]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152]에서는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49) 2025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기본 계획(안)
150) 2025년도 학교자율사업운영제 기본계획 (예산담당관, 2024.12) 2p

2025년 선택사업	
①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② 세계시민교육 실천동아리 ③ 통일교육 실천동아리 ④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제잔재 청산 ⑤ 영어 독서교육,표현교육(말하기쓰기 교육) 내실화 ⑥ 독서·인문교육과정 체계화 ⑦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⑧ 제2외국어 동아리 및 또래학습 운영 ⑨ 통합교육공동체 운영 ⑩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활동 지원(텐덤사이클)	⑪ 수학점핑학교 ⑫ 인공지능(AI)기반 학생융합동아리 ⑬ 교육과정연계 생태전환교육(기후변화 환경교육) ⑭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연계 사회현안프로젝트 실천 지원 ⑮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 ⑯ 지구사랑 빈그릇운동 시범학교 운영 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도학교운영 ⑱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예산 지원

- 단위학교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희망 초·중·고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선택영역 연계, 2,000천원 내외 권장
  - [교육과정 자율운영 영역 지원] 기본운영비로 일괄 교부된 지원 금액 활용
  - 예산 운용 관련 모든 사항은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등에 의함

151) 2025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기본 계획(안) 12p
152)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173p

라.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기본운영비(공통경상운영비)의 3% 이상은 자료구입비로, 1% 이상은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편성 (교육부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 사업은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제외하게 되면 “서울형독서토론수업운영”과 차별성을 갖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서울형독서토론수업운영”의 일환으로 확장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사업 집중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 사업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 사업의 영역 내에서 학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아) 학교혁신기획운영- 학생역량·혁신교육과 (사업별 설명자료 1,050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047,308**	**727,498**	**4,241,298**	**1,319,810**	**△2,193,990**	
토론이있는교직원회의	-	38,000	좌동	△38,000	좌동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운영지원	267,520	195,600	좌동	71,920	좌동	
학교자치활성화지원	**1,285,600**	**-**	**3,480,200**	**1,285,600**	**△2,194,600**	**◦ 교육공동체소통시스템 운영비 지원 ◦ 교육지원청 교육자치 사업 지원**
학교혁신일반화지원	487,668	488,098	521,698	△430	△34,030	
학교혁신지원센터운영	6,520	5,800	좌동	720	좌동	

○ "학교혁신기획운영"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이루기 위한 교육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학교자치활성화지원"은 교육공동체 소통 시스템인 '학교자치협의회' 운영으로 학교 내 자치기구 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 및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총 12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지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34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서울 전체 학교(1,343교)에 운영비 및 교육지원청 교육자치협의회 운영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바 있음.

○ 「학교자치협의회」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의 3개 학교자치 기구간 학교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자치 사업을 기획·추진하려

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19] 학교자치협의회 개요[153]

학교자치협의회
「**학교자치협의회**」는 학교 자치기구인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대표 등이 참여하여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해 의논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협의체로, 학교 여건에 따라 협의회 명칭 및 구성 등은 다양할 수 있음
(목적)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자치 구현
(구성)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대표 등 참여
(역할)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구성원 간 협의 및 조정

[표-120] 학교자치협의회 운영 체계[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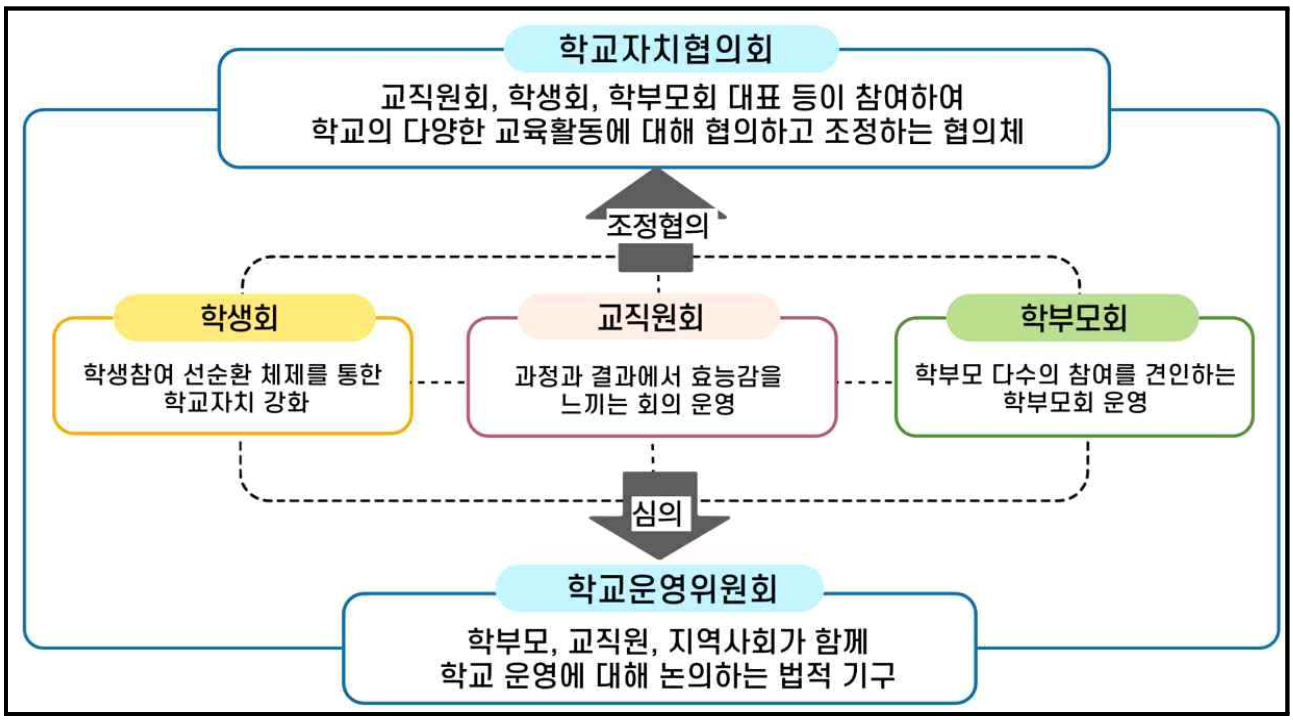

○ 동 사업은 학교 소속의 세 주체가 협의를 통해 각 주체가 제안한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원간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학교평가, 학교자율시간 계획 수립 등 공동체가 함께 정한 사안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협의체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자율과 자

153) 2025 학교자치 지원 계획 (2025.3) 15쪽에서 발췌함
154) 2026 학교자치 지원 계획 (2025.11) 1쪽에서 발췌함

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학교자치활성화’의 근본적인 방향성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학교혁신기획운영”의 기본 정책과 유사성이 크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회의 또는 모임, 연수, 컨설팅, 사례 나눔을 위한 현장에서 소요될 예산으로 운영비가 이미 각각의 주체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표-121] 학교혁신기획운영 내 학교자치 관련 내용 정리

세세부사업명 (소관부서)	2026년 예산안 편성액	사업 주요 내용 (IB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기타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운영지원	267,520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직원** 대상 - 학생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자율적·협력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량 강화 및 성과나눔** ○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예산 지원 ※ 유·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 학교기본운영비 포함 **(교당 300만원, 유 급당 10만원 지원)** ※ 국립 10교·사립 66교(재정결함 미지원교): **교당 300만**원 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1051p
학교혁신일반화지원	487,668	○ 교육과정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운영 - 대상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 학생, 학부모 등 - 운영 내용 : 학습 공동체로서의 협의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수업나눔 및 성과나눔을 통한 교육활동 실천 사례 공유,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기준안 실천 및 관련 워크숍 운영 등 ○ 혁신교육전동대학원 운영, 학교혁신일반화홍보지원 등	사업별 설명자료 1054p

세세부사업명 (소관부서)	2026년 예산안 편성액	사업 주요 내용 (IB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기타
학교혁신지원센터운영	6,520	○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및 활성화 총괄 - 대상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11개 교육지원청 - (운영내용)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운영을 위한 업무협업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길라잡이 제작 및 배포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모니터링 및 운영 성과 일반화 ○ 혁신미래학교 성장지원 - 대상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원 및 학부모 등 - 혁신미래학교 교원·학부모 협의체 지원 -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및 학부모 성장지원단 운영 - 운영 사례 발굴 및 SNS 채널을 통한 사례 공유	사업별 설명자료 1055p

자료: 2026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인해 학교급별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3주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운영비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바, '학교 자치 활성화'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동 사업의 예산편성 유·무에 관계없이 기본운영비에 의한 학교내 자치활동으로도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122] 학교급별 지원금액(공·사립 동일)[155]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생자치 참여예산제	-	교당 150만원	교당 350만원	교당 350만원	-	-
학교학부모회 운영지원	교당 50만원	교당 150만원	교당 100만원	교당 100만원	교당 100만원	교당 70만원
학교안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학급당 10만원	교당 200만원	교당 200만원	교당 200만원	교당 200만원	교당 200만원

○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제31조[156]에 따라 국·공·사립학교에 설치·운

155) 2025학년도 학교자율사업운영제 기본계획(2024.12) 5p

156)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기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123]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자치협의회 비교[157)]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자치협의회
성격	법정 심의·자문기구(학교의 의회역할)	교육 주체 간의 협의기구(공론장)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무화)	서울시교육청 정책 사업
주요 기능	학교 예산, 학칙, 교육과정 등 주요 안건의 심의 및 자문	학교 생활, 교육 활동 등 현안 협의 및 의견 수렴
구성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차이점	학생 대표의 참여가 의무가 아님	학생 대표의 참여가 핵심
의결 효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법 제32조 제3항) → 법적 효력에 준하여 학교장은 이를 존중해야 함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협의 결과를 학운위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음
핵심 목표	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합리성 확보	학교 자치 문화 형성 및 교육 3주체의 참여 보장
요약	학교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소통과 숙의의 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학교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회의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이와 달리 학교자치활성화를 위해 이미 교육 3주체는 각각의 기구에 대한 운영비를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편성·교부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을 위해 별도로 3개 단체가 함께 모여 협의하는 비용도 교부하고 있음.

- 그러나 각각의 주체가 모여 회의 주최 및 협의를 이유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각 단체가 이미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실행할 수

157)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시교육청 2025 학교자치 활성화 계획(학생역량 혁신교육팀)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반드시 비용을 수반해야 하는 이유 또한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학교자치활성화지원"은 기본운영비에서 교부하는 자치활성화 목적의 학교자율운영제와 차별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동 사업 중 학교회계전출금 지급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예산안은 국립학교 10교와 사립학교 65교(재정결한보조금 미지급 학교)를 위한 목적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중복사업으로 볼 경우 학교운영비에 편성된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표-124] 학교자치활성화지원 학교 전출금

·	전출금등			20,000	천원
	- (국립)학교회계전출금	2,000,000원×10교	=	20,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130,000	천원
	- (사립)학교회계전출금	2,000,000원×65교	=	130,000	천원

6) 평생진로교육국

가)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평생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133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76,975**	**652,910**	**672,910**	**424,065**	**404,065**	
가족독서진흥사업	**398,615**	**-**	**좌동**	**398,615**	**좌동**	◦ 신규사업 (북웨이브캠페인)
고문헌보존사업	62,000	62,000	좌동	-	좌동	
고전인문아카데미	72,300	67,000	좌동	5,300	좌동	
기관별독서진흥 사업지원	544,060	523,910	543,910	20,150	150	

○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은 책 읽는 문화 및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독서문화 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10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가족독서진흥사업'은 공동체형 독서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 기반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북웨이브(Bookwave) 캠페인' 추진을 위해 3억 9천 9백만원이 신규 편성됨.

○ **'북웨이브 캠페인'은 2025년에도 기추진된 사업이나 예산에는 별도 사업항목을 반영하지 않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및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지원' 등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6년에 신규로 예산 3억 9천 9백만원을 반영하는 것임.**

- **이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는 기관별 독서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독서캠페인을 시범 운영하며 사업 모델을 검증했으며, 2026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 참여기관과 가족을 확대하고, 기관별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생적 독서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158]

158)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776)[평생교육과-25418(2025.11.7.)] 285.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 한편 2025년의 '북웨이브 캠페인'에 포함된 사업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북웨이브 크루,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등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약 42개의 세부 독서진흥 사업을 하나로 엮은 것으로, 전년도 예산과의 단편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황임.

[표-125] 2025년 북웨이브 캠페인 중 중점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159)]

(단위 : 천원, '25.10.31. 기준)

중점사업	세세부사업명	추진사업명	'25 예산	집행액	비고
독서실천단 북웨이브 크루	독서문화및교육 지원사업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11,294 (일부재배정)	8,589	(주관) 도봉·종로도서관 (운영) 22개관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 하루 20분, 책 파도타기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000**	**46,823**	**(주관) 어린이도서관 (운영) 22개관 ※ 어린이도서관에서 편성**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 : 책 속으로 풍덩, 신나는 북 서핑!	독서문화및교육 지원사업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5,540 (일부재배정)	5,540	(주최·주관) 서울시교육청 (운영) 22개관
	지역기반교육협력	교육공동체협력 북웨이브	11,356	11,356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000	46,500	
(부대행사) 모여라! 독서 골든벨	독서문화및교육 지원사업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9,210 (일부재배정)	9,210	(공동 주최) 서울시교육청·교보문고 (주관) 노원평생학습관 송파·양천·용산도서관·교보문고
	지역기반교육협력	교육공동체협력 북웨이브	289	289	
가족 숲속 도서관	독서문화및교육 지원사업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33,000 (전액재배정)	33,000	(주관) 강남·개포도서관
마음을 잇는 Book Swap	독서문화및교육 지원사업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650 (전액재배정)	650	(주관) 남산도서관
찾아가는 학부모 북콘서트	공익법인과의 교육협력사업 (동원육영재단, 대상문화재단)		-	-	(주관:정독도서관) 공동기획, 참여자모집 홍보 (공익법인) 공동기획, 사업비 집행 등
가족 Book Party : 정원 속 캠핑 DAY	독서문화및교육 지원사업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8,000 (전액재배정)	260	
북웨이브 성과공유회	독서문화및교육 지원사업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15,621	-	11.23.(일) 예정
	지역기반교육협력	교육공동체협력 북웨이브	8,355	355	
합계			**294,960**	**162,217**	

159) 2025년 북웨이브 캠페인 추진사업 중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및 집행액만을 파악한 자료임.

○ 그러나 동 '북웨이브 캠페인'에 포함된 중점사업 중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의 경우 서울 가족 및 희망 학교를 모집하여 1일 20분, 100일 독서 챌린지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에 9천 7백만원을 편성함.

[표-126] 2026년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소요예산 산출기초[160)]

· 운영비			95,000	천원
- 인쇄물제작비(기록장 키트 등)	45,000,000원*1식	=	45,000	천원
- 행사용품(포토존, 완주 기념품 등)	50,000,000원*1식	=	50,000	천원
· 업무추진비			2,000	천원
-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추진경비	20,000원*10명*10회		2,000	천원

○ 동 사업은 2025년 예산 1억원 중 10월 31일 기준으로 단 4천 7백만원(46.5%)만을 집행한바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완주식이 10월 18일임을 감안할 때 11월 이후 집행가능한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표-127] 2025년 기준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주요 추진 절차[161)]

구분	일시	내용
사업 홍보	5.14.(수)~	·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홍보 · 기관별 개인 및 학교 홍보,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모집	5.19.(월)~6.20.(금)	· 기관별 온라인 접수 · 독서기록장, 인증스티커 등 배부
		↓
선언식	6.14.(토)	· 북 웨이브 한마당 · 성공 다짐 선언 및 책 읽기 START
		↓
운영 및 완주 독려 이벤트	6.14.(토)~9.21.(일)	· 완주 독려 중간 미션(이벤트) 5회 · 완주 마감(9.27. 이후) 및 기관별 완주 확인
		↓
설문조사	9.21.(일)~10.9.(목)	·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 완주기념 메달 신청 접수
		↓
완주 인원 보고	~10.13.(월)	· 기관별 완주 인원 수합 및 보고 · '온 가족 책 잔치' 연계 참석자 명단 제출
		↓

160)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776)[평생교육과-25418(2025.11.7.)] 285.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완주식	10.18.(토)	· 기관별 완주 인증서 배부 · 완주 기념 부스 운영 및 포토존 설치 (‘온 가족 책 잔치’ 연계)
↓		
영광의 기록존	10~12월	· 기관별 명예의 전당 설치 및 홍보 · 권역별 포토존 운영

○ **또한 신규사업 숙려제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계획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당초 신규사업 편성 시점에서 8천 3백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162] 최종적으로 9천 7백만원이 반영된 상황으로 파악되는바, 사업부서에서도 동 사업의 집행예정액을 8천 3백만원 이내로 추산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가족독서진흥사업’ 중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를 위한 9천 7백만원은 2025년 현재 집행률과 신규사업 사전심의 자료를 고려하여 8천 3백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161) ‘2025년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추진 계획’(어린이도서관 정보자료과, 2025.4.)
162)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신규사업 사전심의 자료 제출(첨부2)(17174, 2024.8.5.)

나) 역사교육활성화지원-민주시민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198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109,680**	**501,600**	**좌동**	**608,080**	**좌동**	
동아시아역사교육 교류공유마당	**118,060**	**10,000**	**30,000**	**108,060**	**88,060**	**◦ 한·중·일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 참석으로 해외 캠프 운영 지원 비용 급증**
역사교육선도학교 운영지원	-	40,000	-	△40,000	-	◦ 2026년 정책정비
역사교육활성화 위원회운영	155,000	64,700	좌동	90,300	좌동	◦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연수 횟수 증가
역사바로알기교원 학습공동체운영지원	40,720	20,000	좌동	20,720	좌동	◦ 역사바로알기교원학습공동체 대상교 확대 및 심사 관련 운영비 추가
역사자료센터건립 추진단운영	313,200	155,300	좌동	157,900	좌동	◦ 역사교육자료센터 프로그램 추가 개발
역사탐방 정기대회운영	**482,700**	**130,000**	**230,000**	**352,700**	**252,700**	**◦ 올레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학생 탐방 프로그램 추가 운영, 교육지원청 중심 교육과정 연계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을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 지원**
일제잔재청산지원	-	1,600	좌동	△1,600	좌동	◦ 2026년 정책정비 (학교의 자율적인 일제 잔재 청산)
해외항일유적지 탐방운영	-	35,000	-	△35,000	-	◦ 2026년 정책정비
현대사연구학교 운영지원	-	10,000	-	△10,000	-	◦ 2026년 정책정비
현대사올레길개발 지원	-	15,000	-	△15,000	-	◦ 2026년 정책정비
홈스테이활용학교 방문지원	-	20,000	-	△20,000	-	◦ 2026년 정책정비

○ **"역사교육활성화지원"은 역사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상호 존중 기반 동아시아 역사 이해 및 학교의 자율적인 일제 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백만원이 증액된 11억 1천만원이 편성됨.**

① “역사교육활성화지원” -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공유마당’ 관련

○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공유마당’은 동아시아 역사 체험 캠프 및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1천 8백만원 중 대부분인 1억 1백만원이 ‘동아시아(한·중·일)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 운영’ 관련 예산으로 편성됨.

○ ‘동아시아(한·중·일)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 운영’ 사업은 업무협약 기관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의 협력 사업으로[163], 역사 문제의 발생 및 갈등에 관해 인식하고 이웃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아시아 학생간 교류가 주요 목적임.

- 동 캠프는 매년 한·중·일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2026년 개최지는 일본으로 예정됨에 따라 한국 학생들의 해당 역사체험 캠프 참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2019년에는 예산 4천만원이 편성[164]되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행사 연기·취소 등으로 미편성[165]되다가 2026년에는 새로이 1억 1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128] 2026년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마당’ 예산 산정 세부내역(안)[166]

사업별 구분	세부 내용		합계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공유마당	**1. 동아시아(한·중·일)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 운영** ◦ 내용: 한·중·일 학생 공동수업, 과거사 쟁점 토론 등 ◦ 예산 내역 - (위탁용역비) **2,500천원×40명=100,000천원** - (예정원가계산용역비) 660천원×1식=660천원	100,660	**118,060**
	2. 동아시아 역사교육 교류활동 가.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 학생 사전 교육 ◦ 내용: 역사 체험 캠프 전, 참가학생 사전교육 실시 ◦ 예산 내역 - (장소임차료) 2,000천원×1식=2,000천원	4,200	

163) ‘서울특별시교육청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동아시아 교사 · 청소년 국제교류 및 평화교육을 위한 협약서’(2017.3.9.)
164)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 p.1210
165) 2025년의 경우 사업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4천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출처 : ‘2025 평화와 공존의 청소년 세계시민 캠프 계획(안)’ (2025.3. 민주시민교육과)
166)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789)[민주시민교육과-19180(2025.11.10.)]에 따른 보완제출자료(1차, 2025.11.11.)

사업별 구분	세부 내용		합계
	- (강사비) (200천원+150천원)×4명×1회=1,400천원 - (운영수당) (40천원+10천원)×4명×1회=200천원 - (행사용품) 600천원×1식=600천원		
	나. 동아시아 역사교육 공유마당 운영 ◦ 내용: 동아시아 역사 체험 캠프 운영 사례 나눔 및 평가 ◦ 예산 내역 - (임차료) 2,000천원×1식=2,000천원 - (강사비) (200천원+150천원)×4명×1회=1,400천원 - (운영수당) (40천원+10천원)×4명×1회=200천원 - (행사용품) 600천원×1식=600천원	4,200	
	다.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사전교육 운영 ◦ 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강사 대상 사전 교육 ◦ 예산 내역 - (임차료) 2,000천원×1식=2,000천원 - (강사수당) (200천원+150천원)×4명×1회=1,400천원 - (운영수당) (40천원+10천원)×4명×1회=200천원 - (행사용품) 600천원×1식=600천원	4,200	
	라.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내용: 학교 여건에 맞춰 학교로 찾아가서 프로그램 진행 ◦ 예산 내역 - (강사수당) (200천원+150천원)×4명×3회=4,200천원 - (운영수당) (40천원+10천원)×4명×3회=600천원	4,800	

[표-129] 2026년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개요 및 예산(안)[167]

구분	
주제	한중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하며 실무 추진 중
일시	2026. 8월 첫 주간 (4박 5일)
주최	【한국】 서울특별시교육청,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일본】 제22회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실행위원회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사회과학문헌출판사
주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숙소	미정(일본 오사카 호텔)
참여 인원	약 180명

대상	인원	한국	일본	중국
청소년	120명	40명	40명	40명
관계자	65명	교사 및 스탭 15명	교사 및 스탭 40명	교사 및 스탭 10명

167)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789)[민주시민교육과-19180(2025.11.10.)]에 따른 보완제출자료(2차, 2025.11.13.)

소요 예산 (안)	구 분		산 출 내 역(원)		비 고
	항공료	항공료	650,000x**55명**	35,750,000	극성수기, 한국참가자
	체재비	숙박비	40,000x4박x**55명**	9,900,000	오사카 시내 호텔
		식사비	15,000x13식x**55명**	10,725,000	일, 중 별도
			40,000x**55명**	2,200,000	만찬
		교통비	30,000x4일x**55명**	6,600,000	버스대여비, 지하철비
		강당사용료	1,700,000x2일	3,400,000	오사카
	통·번역비	동시통역비	700,000원x2일x4명 =5,600,000	미반영	한일/한중 통역(1일 4명)
		순차통역비	100,000원x10명=1,000,000	미반영	한일/한중 통역(10명)
		번역비	30,000원x100p	3,000,000	자료집(일본어)
		송수신기대여비	200개	2,000,000	한국에서 대여
	진행비	관람료	20,000원x2일x55명	2,200,000	
		강사비	300,000원x4명	1,200,000	캠프 강사 4인(사전교육 2,주제 강연, 공동수업)
		회의비	20,000원x7명x6회. 면접	1,200,000	준비회의비(5회), 면접비
		티셔츠	15,000원x70장	1,050,000	행사 티셔츠
		보험료	보험료	1,300,000	보험료
		현수막비	500,000원(대, 소)	400,000	
		자료집비	100원x100px100권	1,000,000	
	사업비 소계(a)			81,925,000	
		일반관리비(5%)		4,096,250	
		이윤(6%)		4,915,500	예산불확실 조정 10%->6%
		[총원가]		90,936,750	
		부가세(c*0.1)	비용합계의 10%	9,093,675	연대(비영리민간단체)/ 연구소(비영리사단법인)
	총계			**100,030,425**	만단위 이하 절사 (계 : 100,000,000)

[표-130] 역대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개최 내역[168)]

대회명	개최일	개최지	주제
제18회	2019.08.07 ~ 08.12	일본 도쿄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자! - 동아시아의 화해와 핵 없는 세계로의 길
	-	한국	(코로나19로 연기)
제19회	2021.08.03 ~ 08.06	한국(온라인)	코로나 시대, 신냉전과 한반도 분단을 넘어 평화를 상상하라!
제20회	2022, 2023	중국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취소)
제21회	2024.08.04 ~ 08.08	일본 교토	'인류의 위기를 넘어 평화로운 세계로' : 과거와 현재의 대화, 교토에서
제22회	2025.08.04 ~ 08.08	한국 경기, 서울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미래' - 동아시아 청소년들의 평화를 위한 '8020 기억프로젝트'

○ 동 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해 교육청은 당초 답변자료에서 참가인원을 40명, 1인당 각 250만원씩으로 계산[169)]했으나, 추가 보완 요청에 따라

168)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https://www.aphen.net/229)
169)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789)[민주시민교육과-19180(2025.11.10.)] : 301. 역사교육활성화지원 p.2 및

제출한 '2026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예산(안)' 자료에서는 산출근거를 55명 기준으로 변경함[170].

- 이처럼 동일 사업임에도 제출자료마다 대상인원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제시된 것은 사업의 소요규모와 필요 예산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았다는 수준을 넘어, 예산 편성 과정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 사료됨.

○ 또한 2026년 개최지가 일본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은 교사·스태프를 10명 규모로 예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15명으로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산출기준의 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동 사업의 2019년 추진 내역과 2026년 추진 계획을 비교하면, 개최지는 일본으로 동일하며, 기간은 2019년이 5박 6일, 2026년 계획안이 4박 5일로 기간은 2019년에 오히려 하루 길었음에도 예산은 4천만원에서 1억 1백만원으로 150%이상 증액됨.

- 그러나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2025년 10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로(2019년=99.47)[171]으로 2019년 대비해서는 20% 이내로 상승했으며, 일본의 경우도 2025년 9월 112.0(2019년=99.7)[172]로 13% 가량 상승한 것에 그침.

이에 비해 엔화 환율은 2019년 1,000원 전후였던 것에 비해 현재 950원 전후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기간·물가·환율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동일 사업의 예산이 150% 이상 증가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동 행사는 협약기관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공동 주최하여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789)[민주시민교육과-19180(2025.11.10.)]에 따른 보완제출자료(1차, 2025.11.11.) ▸ [표-01] 참고 : '2026년 역사교육활성화지원 세부 사업 계획(안)'

170)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789)[민주시민교육과-19180(2025.11.10.)]에 따른 보완제출자료(2차, 2025.11.13.) ▸ [표-02] 참고 : '2026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예산(안)'

171) 출처 : KOSIS,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172) 출처 : 일본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https://www.e-stat.go.jp/en/stat-search/files?page=1&toukei=00200573)

운영하는 것임에도 동 사업 예산 1억 1백만원은 소요 경비를 거의 전액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용 분담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 또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동아시아역사교육교류공유마당' 중 '동아시아(한·중·일)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 운영비 예산 1억 1백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 "역사교육활성화지원" - '역사탐방정기대회운영' 관련

○ 한편, '역사탐방정기대회운영'은 탐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연계역사교육활성화 지원사업 2억 2천만원, 국내 탐방 프로그램 5천 2백만원 및 국외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2억 1천만원을 운영할 계획임.

[표-131] 2026년 '역사탐방정기대회운영' 예산 산정 세부내역(안)[173]

사업별 구분	세부 내용		합계
역사탐방 정기 대회운영	**1. (지원청)교육과정연계역사교육활성화 지원** ◦ 내용: 교육지원청 지역연계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단 운영, 교사 연수,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청별 개별 계획 수립(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예산 내역 - (전체) 10,000천원×11개청×2부서=220,000천원	220,000	**482,700**
	2. 국내 탐방 프로그램 운영 ◦ 내용: 서울 근·현대 올레길 등 탐방 운영 및 교재 제작 등 ◦ 예산 내역 - (위탁용역비) 50,000천원×1식=50,000천원 - (예정원가용역비) 440천원×1식=440천원 - (사전교육강사수당) (200천원+150천원)×2명×1회=700천원 - (행사용품비) 800천원×1회=800천원 - (사업추진경비) 사전회의 20천원×15명×2회=600천원	52,540	
	3. 국외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 ◦ 내용: 4개 교육청 중심 국외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예산 내역 - (위탁용역비) 50,000천원×4개청=200,000천원 - (예정원가용역비) 440천원×4개청=1,760천원 - (사전교육강사수당) (200천원+150천원)×2명×4회=2,800천원 - (행사용품비) 800천원×4회=3,200천원 - (사업추진경비) 사전회의 20천원×15명×8회=2,400천원	210,160	

○ 이 중 국외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 1천만원은 4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국외 사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과 관련한 인원,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임. 즉, 실행계획 없이 총액만 편성되어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아울러 국외 탐방 프로그램의 경우, 명확한 교육 목적과 체계적인 운영 계획 없이 추진될 경우 단순 체험·견학 수준을 넘어 외유성 일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기획과 관리가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에 대한 계획안만 있을뿐 교육적 목표 및 활동 구성에 대한 상세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됨.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동 프로그램을 4개 교육청 대상 사업으로 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 및 산출 기준도 불명확함. 설령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사업 분배 기준의 공정성 또한 담보되지 못한 상태임.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역사탐방정기대회운영'의 국외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 2억 1천만원은 계획의 구체성과 산정 근거가 미흡하여 전액 편성을 재고려할 사안으로 판단됨.

173)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789)[민주시민교육과-19180(2025.11.10.)]에 따른 보완제출자료(1차, 2025.11.11.)

다) 인권교육활성화-민주시민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262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49,401**	**109,830**	**123,950**	**239,571**	**225,451**	
학교구성원갈등관리 체계구축	107,551	-	좌동	107,551	좌동	◦ 갈등관리전문관 인건비 및 컨설팅, 자문단 운영 등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47,500	37,070	좌동	10,430	좌동	◦ 학생참여단 워크숍 운영비 등
학생인권증진지원	**194,350**	**72,760**	**86,880**	**121,590**	**107,470**	**◦ 2022개정교육과정 반영 학생인권교육 지도 자료 개정 및 보급 ◦ 국제인권교육 강화 및 유엔 국제인권 기구 탐방연수 운영**

○ "인권교육활성화" 사업은 인권역량 강화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3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이 중 '학생인권증진지원'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서울형 국제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전년도 본예산 7천 3백만원 대비 1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1억 9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구체적으로는 '2026 국제인권교육 운영'에 1억 4천 5백만원(국외연수 1억 2천 1백만원, 국내연수 2천 4백만원),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 개발 및 보급에 1천 3백만원, 이외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및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학생인권영향평가 등에 3천 6백만원이 편성됨.

○ 이 중 '2026 국제인권교육'은 유엔 인권회의[174]에 참가해 국가별 심의에 참여하고 인권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학생교류활동 및 국제기구

174) 아동권리협약(CRC-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세션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sList.aspx?Treaty=CRC

회의 참관 및 활동가 면담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중3학년 학생부터 고2학년 학생 20여명, 관내 중등교사 5명, 인솔단 5명 등 총 30명임.

[표-132] 예산안 중 국제인권교육 산출기초[175]

· **국내 학생-교사 연수 운영**			**(소계) 23,615천원**
- 교사 및 학생연수 강사수당	[강의(160,000원+90,000원*2시간)+원고(50,000원*2시간)]×10명	=	6,000 천원
- 자료개발 수당(전문가)	2,220,000원×1식	=	2,220 천원
- 교재 인쇄비	4,435,000원×1식	=	4,435 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100,000+50,000)×8명	=	1,200 천원
- 예정원가 산출비	660,000원×1회	=	660 천원
- 교육 운영비(행사용품비 등)	100,000원×5회	=	500 천원
- 결과보고회 행사 및 자료집 등	3,600,000×1식	=	3,600 천원
- 결과보고회 장소임차료 등	5,000천원×1식	=	5,000 천원

· **제네바 방문 연수 운영**			**(소계) 120,945천원 *부가세 10%포함**
- 국외 집중연수(6박8일) 항공비	1,000,000원×30명 ※ 항공료 연수생 일부 부담	=	30,000 천원
- 국외 집중연수(6박8일) 숙식비	1,400,000원×30명	=	42,000 천원
- 국외 집중연수(6박8일) 교통비	1,350,000원×7일	=	9,450 천원
- 국외 집중연수(6박8일) 운영비	800,000원×30명	=	24,000 천원
- 국외 집중연수(6박8일) 인건비	900,000원×5명	=	4,500 천원

○ 동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계인권시민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이번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1억 6천 1백만원이 제출되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음.

○ 당시 20여명의 학생들이 실제 국제회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와 실질적 참여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일부 학생들에게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가 보편적 교육기회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과 괴리가 있는 점이 지적[176]되었으나, 그 우려는 현재 계획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75)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789번) [민주시민교육과-19180(2025.11.10.)] 7-1 자료 참조
176)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6.17.) 이의훤 의원님 지적사항 및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p.68

○ 한편, 동 사업의 목적이 서울형 국제인권교육 모델을 구축[177]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내용은 1회성 해외 탐방 연수와 단기간의 사전·사후 활동에 그치는바, 이러한 일회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만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모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예산 대부분이 해외 체험비로 소요되는 구조상 교육적 성과가 제도화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임.

○ 더욱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만 앞서 검토한 "역사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을 포함해 총 3건의 해외연수 사업이 2026년 본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처럼 많은 해외연수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표-133] 2026년 민주시민교육과 편성사업 중 학생 해외연수사업

사업명	구분	세부 내용	합계
301. 역사교육 활성화지원	동아시아역사교육 교류공유마당	동아시아(한·중·일)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 운영	100,660
	역사탐방정기대회운영	국외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	210,160
316. 인권교육 활성화	학생인권증진지원	유엔 국제인권 기구 탐방연수 운영	144,560
계			**455,380**

○ 따라서 '학생인권증진지원' 중 유엔 국제인권 기구 탐방연수 운영을 위한 예산은 1억 4천 5백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77)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2789번) [민주시민교육과-19180(2025.11.10.)] 7-1 p.4

라) 특성화고등학교홍보-진로직업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298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74,540**	**274,540**	**좌동**	**-**	**좌동**	
권역별특성화고 설명회	55,000	55,000	좌동	-	좌동	
중학교진로진학 상담교사연수	-	4,000	좌동	△4,000	좌동	
특성화고홈페이지유지 보수	-	11,440	좌동	△11,440	좌동	
홍보운영	**219,540**	**204,100**	**좌동**	**15,440**	**좌동**	

○ **"특성화고등학교홍보"는 미래 산업사회 변화에 따른 특성화고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2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홍보운영'은 특성화고 진로진학지원단 운영, 진학안내 책자·리플렛·홍보 동영상 제작, 담당자 회의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천 5백만원 증액된 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34]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 운영비			218,340	천원
- 강사수당	(160,000원+90,000원)×46명	=	11,500	천원
- 광고비등	17,000,000원×7기관	=	119,000	천원
- 리뉴얼및유지보수비(홈페이지)	4,120,000원×2기관	=	8,240	천원
- 리플릿인쇄	1,000원×15,000부	=	15,000	천원
- 용역비(특성화고이해연수)	**9,000,000원×2기관**	**=**	**18,000**	**천원**
- 운영수당	40,000원×2명×10일×4회	=	3,200	천원
- 위원수당(홍보자료제작)	40,000원×5명×18일	=	3,600	천원
- 인쇄비(진학지도자료)	4,000원×4,000부×2회	=	32,000	천원
- 자문수당	(40,000원+10,000원)×23명×2회	=	2,300	천원
- 행사용품비	2,500원×440명×5회	=	5,500	천원
· 업무추진비			1,2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8명×1회	=	160	천원
- 사업추진경비(교육지원청담당자회의)	20,000원×13명×1회	=	260	천원
- 사업추진경비(홍보자문위원)	20,000원×13명×3회	=	780	천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도 본예산 심의·의결[178] 과정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2건) 개최를 지적하며, 특성화고 홍보의 주요 대상을 교사가 아닌 학생 및 학부모로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본예산을 의결하였음.

○ 이는 교원 대상으로 계획된 워크숍(교육력제고 워크숍, 특성화고이해 워크숍)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179]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180]으로 추가된 것으로, 예산집행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 취지였음.

[표-135] 2025년 특성화고등학교홍보-홍보운영 산출내역

○ 소요예산 : 204,100천원

· 운영비			202,900	천원
- 강사수당	(160,000원+90,000원)×40명	=	10,000	천원
- 광고비등	17,000,000원×7기관	=	119,000	천원
- 리플릿인쇄	1,000원×15,000부	=	15,000	천원
- 용역비(교육력제고워크숍)	9,000,000원×1기관	=	9,000	천원
- 용역비(특성화고이해워크숍)	150,000원×60명	=	9,000	천원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부대의견과 달리, 동 예산으로 '2025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됨.

또한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직업계고매력도제고: 613,000원, 글로벌현장학습 및 직업교육교류프로그램 운영비: 3,600,000원)에서도 일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됨.

또한 홍보대상이 아닌 참석자(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본청 업무담당자 등)가 참여하였고, 1인당 소요경비가 약 580,000원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점 등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178)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2024.11.29.)
179)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2024.11.26.), 정지웅 의원 지적사항
180)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178p)
- 진로직업교육과의 '특성화고등학교홍보' 사업 중 '홍보 운영'은 사업대상을 학생으로 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함

[표-136] 2025년 중등교육전문직원 직업교육 역량강화 연수 주요내용

1. 일시: 2025.9.11.(목) 8:30 ~ 9.12.(금) 18:30 2. 장소: 포레스트 리솜 제천 및 충북 일대 3. 대상: **11개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과장 및 고입(특성화고 입학) 업무담당 장학사, 진로직업교육과 업무 담당 등(총 26명)** 4. 예산집행현황 : **총 15,205,000원** - 특성화고등학교홍보: 10,992,000원 - 직업계고매력도제고: 613,000원 - 글로벌현장학습 및 직업교육교류프로그램 운영비: 3,600,000원

○ 2026년도 예산안 또한 2025년도와 동일하게 연수에 대한 예산이 동일한 내용과 금액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특성화고 홍보'라는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바, 연수 관련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 전액 삭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특성화고지원-진로직업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305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00,000**	**1,003,440**	**좌동**	**△603,440**	**좌동**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	1,003,440	좌동	△1,003,440	좌동	
직업계고AI·로봇실무교육	400,000	-	좌동	400,000	좌동	신규사업

○ **"특성화고지원"은 미래 산업 사회 변화에 따른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백만원 감액된 4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직업계고AI·로봇실무교육'은 특성화고 재학생 일부를 선발하여 로봇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4억원이 순증 편성되었음.**

[표-137]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 운영비			398,800	천원
- 위원수당	(40,000원+20,000원)×15명×2회	=	1,800	천원
- 위탁교육과정운영	395,000,000원×1식	=	395,000	천원
- 위탁사업비(원가계산)	1,200,000원×1식	=	1,200	천원
- 행사용품	200,000원×4회	=	800	천원
· 업무추진비			1,200	천원
- 업무추진비	20,000원×15명×4회	=	1,200	천원

○ **동 사업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약 50명을 선발하여 로봇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소요예산 4억원 중 약 98.7%인 3억 9천 5백만원이 위탁교육과정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직업계고 AI·로봇 실무교육 운영 위탁(안)에 따르면, 프로그램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실무교육은 연중 총 13일만 운영되며, 그 중 8일은 1일 3시간에 불과하여 총 사업비(4억원) 대비 사업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육 대상이 직업계고 AI·로봇 관련 학과 3학년 재학생 약 5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로봇 융합 인재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졸업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성이 부족한 일회성 사업으로 보임.

[표-138] 직업계고 AI·로봇 실무 교육 운영 내용

구분	장소	운영기간	운영시간
학기중	(북부거점)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남부거점) 서울공업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4월~7월 토요일(월 2회)	**총 8일 24H (10시~13시)**
방학기간	(구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직업혁신센터	7~10월 중 월~금요일	**총 5일 35H (9시30분~17시30분)**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내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공동프로그램(로봇)'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 또한 서울 직업계고(72교) 학생 중 8개 팀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등 동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임.

[표-139]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공동프로그램(로봇)'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협력·공유 능력 함양을 위한 융합인재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갖춘 글로벌 로봇 인재 육성 · 지·산·학 협력의 지속 가능한 로봇 융합 인재 육성 교육 · 로봇 산업의 핵심 기술 및 글로벌 스탠다드 경험을 제공하여 국내 산업과 연계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직업교육 생태계 조성 ·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역점분야 공동 프로젝트(대회) 운영
개요	· 사업명: 서울 직업계고 로봇 융합 인재 육성 사업 · **대상 및 규모: 서울 직업계고(72교) 학생 전체 대상으로 선발,** 운영팀 지속 증대(8팀→24팀) 예정 · 운영기간: 2026. 1. ~ 12.
비전과 목적	· 비전: 로봇·AI 등 신산업 연계 서울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 목적: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직업계고 로봇 융합 인재 육성
예산편성	**· 2026년 본예산(안) 편성 : 410,000천원**
기대효과	· 로봇 융합 인재 육성을 통한 직업계고 학생의 글로벌 창의 역량 함양 · 국내외 산업 동향을 반영한 문제해결 중심 융합 프로젝트 교육 실천 · 지·산·학 협력의 서울 직업교육 생태계 조성 · 학생 전공 실무역량 및 맞춤형 취업·진로 지원 강화

○ 따라서 '직업계고AI·로봇실무교육' 사업은 사업비를 삭감하고, 사업 목적이 유사한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실험실습기자재지원-진로직업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315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000,020**	**1,195,410**	**1,285,410**	**804,610**	**714,610**	
실험실습기자재담당 교원연수운영	-	1,110	좌동	△1,110	좌동	
실험실습 기자재확충지원	**2,000,020**	**1,149,300**	**1,239,300**	**850,720**	**760,720**	
특성화고 실험실습비지원	-	45,000	좌동	△45,000	좌동	

○ "실험실습기자재지원"의 '실험실습기자재확충지원'은 특성화고 등 전문교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노후기자재의 대치 및 수리 지원과 개교(서울반도체고)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백만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7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표-140]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 운영비			9,200	천원
- 기자재구입선정심의수당	40,000원×15명×2일	=	1,200	천원
- 기자재구입점검수당	40,000원×5명×40교	=	8,000	천원
· 업무추진비			100	천원
- 기자재선정사업추진경비	20,000원×5명×1회	=	1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1,990,720**	**천원**
- 공립	**21,134,000원×25교**	**=**	**528,350**	**천원**
- 사립	**21,134,000원×55교**	**=**	**1,162,370**	**천원**
- 서울반도체고	**300,000,000원×1교**	**=**	**300,000**	**천원**

○ '실험실습기자재확충지원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별 수요 요구와 무관하게 예산 총액이 결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비 교부기준을 산정하여 모든 직업계고(78교)에 예산을 분배하는 구조임.

- 이에 따라, 예산총액을 전체 학교에 분배하더라도 예산서 산출내역을 통해 실제 사업대상 학교 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141] 2025년, 2026년 예산서 산출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안
- 학교회계전출금 : 950,000천원 공립 23,750,000원×**13교** = 308,750천원 사립 23,750,000원×**27교** = 641,250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 1,690,720천원 공립 21,134,000원×**25교** = 528,350천원 사립 21,134,000원×**55교** = 1,162,370천원

○ 2026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용현황은 세입감소와 의무지출성 경비 등의 증가에 따라 기금까지 활용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기자재지원' 사업은 특별한 증액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반적인 증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명확한 근거없이 단순히 전년도 대비 일괄 증액할 경우,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재정 건정성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전년도 대비 명확한 증액 사유가 없는 '실험실습기자재지원' 학교회계전출금은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한편, 동 사업은 모든 직업계고에 교부되는 학교회계전출금과 별개로 서울반도체고에 실험실습기자재 예산 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현재 서울반도체고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개교시점은 2026년 3월이지만, 2025년 9월 교육부의 개교준비점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학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됨[181]. 인해 최종적으로 2027년 3월로 연기된 바 있음.

- 더욱이 서울반도체고 개교를 위해 교부된 2025년도 교육부, 교육청 지

181)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개교 관련 재심사 건의 요청에 따른 의견 송부(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3662, 2025.9.18.)

원금은 2026. 2월까지 집행 완료 예정이라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하며, 2026년 교부 예정인 교육청·서울시·동대문구 등의 지원금에 대한 집행률 또한 불투명한 상황임.

[표-142] 서울반도체고 개교 관련 지원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특별교부금	집행금액 (2025.10.15. 기준)	지원기관	비고
2025	마이스터 기반구축비	500,000	566,299	교육부	**2026. 2월 100% 집행 완료 예정**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200,000	14,031	교육부	
	기자재 및 환경개선	1,300,000	-	교육부	
	실험·실습기자재비	11,900		서울시교육청	**2025. 12월 100% 집행 완료 예정**
	실험·실습재료비	22,226		서울시교육청	
	합계	**2,034,126**	**583,330**	**집행률: 28%(2025.10.15. 기준)**	
2026	마이스터고 지원	3,000,000		교육부	신규마이스터고에 교육부 총 50억 교부
	기숙사 증축 (설계비, 착공시설비)	1,600,000		서울시교육청	2028년까지 총 160억원 지원 예정
	기숙사 리모델링	1,500,000		서울시교육청	
	기자재 및 재료비	**300,000**		**서울시교육청**	**2026년 예산안**
	기자재 및 환경개선 (동대문구 투자 지원)	200,000		동대문구청	2028년까지 총 5억원 지원 예정
	기자재 및 환경개선 (서울시 투자 지원)	-		서울특별시	미정 (총 12억원 지원 계획)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상황과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 및 2026년 지원 예정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6년 3월 개교를 위해 편성된 '서울반도체고 실험실습기자재확충지원' 예산은 감액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금번 예산안의 재정구조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사) 초중등창업체험교육활성화-진로직업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344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78,450**	**170,000**	**260,200**	**108,450**	**18,250**	
창업가정신함양교육지원	278,450	170,000	좌동	108,450	좌동	중점학교수 확대(30교→50교)
초중등창업체험교육 활성화	-	-	90,200	-	△90,200	

○ **"초중등창업체험교육활성화"는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연계·협력을 통해 창업체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백만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2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됨.**

○ **이 중 '창업가정신함양교육지원'은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중점학교, 교원연수, 초중고대학 창업동아리 매칭 멘토 프로그램, 초중고 창업 데모데이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백만원 증액된 2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됨.**

[표-143]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산출내역

· 운영비			27,250	천원
- 창업가정신함양교육연수운영(강사수당)	(160,000원+90,000원)×15명	=	3,750	천원
- 창업가정신함양교육연수운영(기타운영수당)	(40,000원+10,000원)×4명×5회	=	1,000	천원
- 창업가정신함양교육연수운영(원고료)	10,000원×5매×2시간×15명	=	1,500	천원
- 창업가정신함양교육연수운영(행사용품비)	1,000,000원×1식	=	1,000	천원
- 창업데모데이운영(위탁용역비)	20,000,000원×1식	=	20,000	천원
· 업무추진비			1,200	천원
- 창업가정신함양교육연수운영(사업추진경비)	20,000원×15명×4회	=	1,2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250,000	천원
- 창업가정신함양교육중점학교운영비(공립)	5,000,000원×25교	=	125,000	천원
- 창업가정신함양교육중점학교운영비(사립)	5,000,000원×25교	=	125,000	천원

○ ‘창업가정신함양교육지원’ 사업은 단위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기반을 조성·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2026년 사업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144] 2023~2026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지원사업 비교

	2023	2024	2025	2026(예정)
대상	6개교 (거점 3개, 일반 3개)	10개교	30개교	**50개교**
예산	80,000천원 (거점 15,000천원, 학교 10,000천원)	50,000천원 (교당 5,000천원)	170,000천원 (교당 5,000천원)	**278,450천원 (교당 5,000천원)**

○ 동 사업은 2024년까지 10개 내외의 학교만 참여하는 수준으로 운영되었으나,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사업[182]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음.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12월 중점학교 운영 결과보고 및 사례발표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성과분석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상학교 수와 예산을 60%이상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 및 필요성, 재정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정당한 증액의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또한 2025년 서울학생창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계획에 따르면, 1차 공모 시 ‘서울 관내 초·중·고(알반고, 자율고, 특목고) 30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학교 수가 저조하여 특성화고를 포함해 2차 공모를 실시, 최종적으로 30개교(특성화고 5개교 포함)가 선정되었음.

[표-145] 2025년 서울학생창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주요 내용[183]

1 서울학생창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가. (중점학교 수) 서울 관내 초·중·고(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30교 나. (예산 지원) 1교당 5,000천원 다. (교육청 지원) 예산 지원, 교사 연수, 컨설팅, 학생 캠프, 데모데이 등

182) 제23대 정근식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백서(145페이지)
2-3-4.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세부사업 1.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 당초 계획에서 특성화고를 제외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고졸취업지원 확대 - 직업계고 학생 창업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설명서 1348p)'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146] 직업계고학생창업동아리운영지원 예산 및 주요내용(사업설명서 1348p)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본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직업계고 학생창업동아리 운영지원	249,000	249,000	좌동
○ 대상 : 특성화고 68교, 마이스터고 4교, 산정(문예)교 6교 ○ 내용 :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 운영 창의아이디어경진 예선대회 및 서울대회 본선, 결선 운영			

○ 따라서 단순히 중점학교 수 증가를 근거로 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할 때, '창업가정신함양교육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83) 2025년 서울학생창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계획

아) 맞춤형취업기능강화-진로직업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352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799,250**	**1,797,330**	**좌동**	**1,920**	**좌동**	
취업역량강화바우처	**1,750,700**	**1,750,500**	**좌동**	**200**	**좌동**	
취업지원관인건비	48,550	46,830	좌동	1,720	좌동	

○ **"맞춤형취업기능강화"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현장실습·취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백만원 증액된 17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이 중 '취업역량강화바우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서울 드림(Dream) 성장지원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참여 비용을 지원하여 개인 맞춤형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십만원 증액된 17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됨.**

[표-147]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	업무추진비			5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5명×5회	=	5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1,750,200**	**천원**
	- 공립학교(취업역량강화)	**300,000원×1,750명**	**=**	**525,000**	**천원**
	- 사립학교(취업역량강화)	**300,000원×4,084명**	**=**	**1,225,200**	**천원**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이 바우처를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드림(Dream) 성장 지원 바우처 추진계획'에 따르면, 담당부서는 매년 동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집행률**

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집행을 독려하고 있음.

이처럼 동 사업은 현금 지급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아 중간점검과 컨설팅까지 필요할 정도로 학교 현장의 참여도가 저조한 상황임.

[표-148] 2024~2025 서울 드림 성장지원 바우처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원)

	예산액	중간점검			최종	
		집행액	집행률	중간점검일	집행액	집행률
2024	3,500,000,000	1,870,100,000	**53.4%**	**2024.9.30. 기준**	3,105,700,000	88.7%
2025	1,750,500,000	911,700,000	**52.1%**	**2025.10.31. 기준**		

○ 또한 현재 지원대상 자격증에는 사업 목적(취업역량 강화)과 직접 관련이 적은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 시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업률보다는 진학률을 홍보하는 학교, 취업보다는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동 사업의 목적이 직업계고 학생의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업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로 볼 수 있는바,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조정이 필요함.

○ 따라서 동 사업비는 2024년도 집행률과 2025년도 중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비율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149] 2024~2025 서울 드림 성장지원 바우처 세부집행 현황

(단위: 건)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	전공자격증	계
2024	335 (3.2%)	214 (2.1%)	62 (0.6%)	9,742 (94.1%)	10,353 (100%)
2025 중간점검	36 (1.2%)	59 (1.9%)	35 (1.2%)	2,909 (95.7%)	3,039 (100%)

○ **아울러 지원 방법 또한 현금(정액 30만원) 지급 방식보다는, 사용업종과 지역이 제한되는 지역화폐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방법)[184]에 근거하여, 지역상품권·지역화폐를 활용한 지급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교육 및 자기계발 중심 소비를 유도하고 정책의 지역성·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됨.

---

184)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습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학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자) 전국소년체육대회-체육건강예술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369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222,832**	**1,120,124**	**좌동**	**102,708**	**좌동**	
기초종목육성	**113,760**	**37,552**	**좌동**	**76,208**	**좌동**	
서울소년체육대회	167,732	154,232	좌동	13,500	좌동	
전국소년체육대회(본청)	605,340	592,340	좌동	13,000	좌동	
학교운동부동계강화 훈련비지원	336,000	336,000	좌동	-	좌동	

○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서울소년체육대회 대회운영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백만원 증액된 12억 2천 3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기초종목육성'은 기초종목육성 및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위한 교육감배 종목별 대회 운영 및 출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천 6백만원 증액된 1억 1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50]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	운영비			5,000	천원
	- 운영경비	1,000,000원×5종목	=	5,000	천원
·	업무추진비			1,0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25명×2회	=	1,000	천원
·	**민간이전**			**100,000**	**천원**
	- 교육감배종목별대회운영	**20,000,000원×5종목**	**=**	**100,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7,760	천원
	- 대회운영경비	10,000원×776명	=	7,760	천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5일, 기초·취약 종목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중단되었던 '서울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를 6년 만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185], 2025년 대회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을**

활용해 개최하고, 2026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표-151] '2025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종목별대회' 주요 내용

□ 기　　간: 2025. 10. ~ 12.
□ 장　　소: 종목별 경기장
□ 참가대상: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생 선수
□ 주　　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체육회
□ 주　　관: 서울특별시체육회원종목단체
□ 소요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예산과목: 정책)교육행정일반 단위)특별교육재정수요 세부)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그러나 현재까지 2026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 여부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186], 의회의 예산심의 이전에 집행기관이 언론을 통해 특정 사업이나 정책의 시행을 공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정책의 기정사실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홍보적 목적의 활용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움.

○ 또한 서울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는 현장 인력의 업무 과중, 사설 학원 간 경쟁 과열, 공교육 기관의 대회로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정책 현장평가단의 평가[187]를 거쳐 2019년부터 중단된 사업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없이 오히려 종목과 대회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2025년: 13종목, 10월~12월) 재개를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성적 하락을 사업 재개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한 '서울소년체육대회',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어 유사·중복 사업의 우려가 있음.

185) 서울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 6년 만에 부활…"육상 등 기초·취약 종목 지원 강화" (뉴시스, 2025.11.5.)
186)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안건 내용 중
187) 2019 교육정책사업 정비 의견서

○ 또한 「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188]」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대회명 역시 '교육감배 종목별대회'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지침 위반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따라서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서울시 보조금 지원,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 유사사업 중복, 부적정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 재개보다는 기존 대회 구조를 개편·조정하여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기초·취약 종목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88)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6페이지(서울시교육청, 2023.1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18페이지)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차) 학교급식기획운영-체육건강예술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424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20,246**	**418,926**	**1,588,926**	**601,320**	**△568,680**	
급식로봇도입	-	-	150,000	-	△150,000	
무상급식비예산운영 지도·점검	240	240	좌동	-	좌동	
식기류렌탈세척운영	**1,000,000**	**400,000**	**1,420,000**	**600,000**	**△420,000**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수립	7,550	7,550	좌동	-	좌동	
학교급식기본방향연수	6,816	4,876	좌동	1,940	좌동	
학교급식위원회운영	4,100	4,300	좌동	△200	좌동	
학교급식유관기관 협의회운영	1,540	1,960	좌동	△420	좌동	

○ "학교급식기획운영"은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급식 계획 수립, 학교급식 위원회 운영, 급식 예산운영 지도·점검, 식기류렌탈세척 등 학교 급식의 안정적·발전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백만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5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된 10억 2천만원이 편성됨.

○ 이 중 '식기류렌탈세척운영'은 식기류 렌탈 세척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4억 2천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이 편성됨.

[표-152]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 전출금등			40,000	천원
- 국립학교	10,000,000원×4교	=	40,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960,000	천원
- 공립학교	10,000,000원×50교	=	500,000	천원
- 사립학교	10,000,000원×46교	=	460,000	천원

○ '식기류렌탈세척운영' 사업은 조리종사원 결원으로 인한 학교 급식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식기 세척 업무를 외부 전

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조리종사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도 사업 운영을 위해 총 14억 2천만원(본예산 4억원, 1차 추경 10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142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 중임.

[표-153] '식기류렌탈세척운영' 예산 집행 현황

	예산편성(천원)	선정학교	교부예산(천원)	사업철회	조리실무사 결원 0명
2025년	본예산: 400,000	상반기 36교	358,500	3교	12교
	1차 추경: 1,020,000	하반기 106교	943,100	4교	37교
	합계: 1,420,000	**142교**	**1,301,600**	**7교**	**49교**

○ 그러나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42개교 중 7개교가 사업을 철회하였고, 49개교(전체의 35%)는 조리종사원 결원이 없는 학교로 확인됨.

○ 동 사업의 본래 취지는 조리종사원 결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급식현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없는 학교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조리종사원 결원이 없는 학교가 식기 세척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위탁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조리종사원 정원 증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동 사업은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닌바, 단순히 사업수요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은 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교육-체육건강예술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475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521,293**	**29,746**	**1,457,986**	**1,491,547**	**63,307**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종합지원센터운영	12,608	12,161	좌동	447	좌동	
청소년활동지도관리	17,585	17,585	좌동	-	좌동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지원	**1,491,100**	**-**	**1,428,240**	**1,491,100**	**62,860**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교육"은 학교현장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직무연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9천 2백만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15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장체험학습보조인력지원'은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14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54]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	전출금등			20,300	천원
	- 보조인력(안전요원,기타보조인력)	(100,000원×143학급)+(200,000원×30개학년)	=	20,3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1,470,800	천원
	- 보조인력(안전요원,기타보조인력)	(100,000원×9,834학급)+(200,000원×1,381개학년)	=	1,259,600	천원
	- 보조인력(안전요원,기타보조인력)	(100,000원×1,488학급)+(200,000원×312개학년)	=	211,200	천원

○ **동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5년도 1차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음.**

[표-155] '현장체험학습보조인력지원'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1. 현장체험학습보조인력지원

○ 기간 : 2025. 7. ~ 12.

○ 대상 : 초등학교(특수포함) 중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채용 희망교

○ 내용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

- 학년당 안전요원 1인 배정 지원
- 학급당 기타보조인력 1인 배정 지원

○ 소요예산 : 1,428,240천원

· 전출금등			20,400	천원
- 기타보조인력	100,000원×5교×6개학년×4.8학급	=	14,400	천원
- 안전요원	200,000원×5교×6개학년	=	6,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1,407,840	천원
- 기타보조인력	100,000원×303교×6개학년×4.8학급	=	872,640	천원
- 기타보조인력	100,000원×52교×6개학년×3.5학급	=	109,200	천원
- 안전요원	200,000원×303교×6개학년	=	363,600	천원
- 안전요원	200,000원×52교×6개학년	=	62,400	천원

○ 그러나 현재 동 사업은 14억 2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신청학교는 230개교에 불과하며 교부된 예산은 약 3억 9천만원 정도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표-156]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보조인력지원' 예산 교부현황

예산(천원)	구분	교부대상	학교수(교)	교부금액(천원)	비고
1,428,240	1차	초·특	149	244,100	
	2차	초·중·고·특	81	147,672	
	합계		230	391,772	예산 대비 27% 교부

○ 또한 2025년도 학교별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 역시 낮은 수준이며, 특히 본 사업의 주대상인 초등학교의 실시율이 중고등학교보다 현저히 낮음.

[표-157]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

(단위: 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606	388	338	1,332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36	193	226	455
수련활동	24	267	177	468
1일형 현장체험학습	209	291	173	673

○ 이러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 및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2026학년도 역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189].

○ 따라서 2025년도 불용률이 7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단순히 실시율 증가를 기대하며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합리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바, 동 사업비는 일부 감액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89)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2심서 선고유예‥교사들 "제도 개선" 촉구(2025.11.14. MBC)
"사고책임 무서워 안가" 울산 현장체험학습 포기(2025.11.18. 경상일보)

7) 교육행정국

가) 학교법인운영지도 - 학교지원과 (사업별 설명자료 1548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69,299**	**367,515**	**좌동**	**△298,216**	**좌동**	
공영형사립학교 선정운영	1,160	301,600	좌동	△300,440	좌동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사업 종료
사학기관자문 및 사학업무개선	10,095	10,095	좌동	-	좌동	
임시이사 선임법인지원	**40,800**	**40,000**	**좌동**	**800**	**좌동**	**임시이사 선임관련 운영비 편성**
학교법인운영관리	17,244	15,820	좌동	1,424	좌동	사학기관 협의체 정례화

○ **"학교법인운영지도"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영형 사립학교 선정 및 운영, 학교법인 운영 지도를 위한 지침 제작 및 법인직원 연수,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및 사학기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천 8백만원이 감액된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임시이사선임법인지원'은 「사립학교법」 제25조제6항에[190] 따라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곳에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십만원 증액된 4천 8십만원이 편성됨.**

○ **'임시이사선임법인지원' 사업은 2025년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이사회 운영 지원을 위해 1천 2백만원의 예산 집행을 확정한 상태이며,[191][192] 금번에 편성된 예산 4천만원 역시**

190)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91) 2025년 임시이사 선임법인 운영보조금 교부 검토(안)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0557, 2025.6.24.)

192)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이 신청한 지원금 중 일부만 지원하기도 결정하였음. 일광학원은 당초 이사회 운영비 1천 6백만원과 사무직원 인건비(상근이사 수당) 2천 4백만원 등 4천만원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서

해당 법인지원을 위해 집행될 계획에 있음.

-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설명서에 사업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1개"로 적시하고,[193] 동 사업 관련 요구자료 회신 시 학교법인 일광학원에 관한 사항만을 회신하였으며,[194] 2025년 11월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일광학원 1곳에 불과함.[195]

○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9년 3월 제기된 내부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20년 임원승인 취소 처분이 이뤄졌으나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24년 10월 7일 임시이사 8명이 선임되었음.

[표-158]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 선임 관련 주요 경과[196]

일시	내용
2020.8.31.	일광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12명) : 이사회 부실 운영 등 사유
2020.9.15.	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1심)
2021.11.30.	판결 선고 : 교육감 승소
2021.12.16.	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2심)
2024.8.28.	판결 선고 : 교육감 승소
2024.9.10.	학교법인의 상고 포기로 확정 판결, 임원취임승인 취소 확정
2024.9.23.	제221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이사 선임안 심의·의결
2024.10.7.	임시이사 8명 선임(임기 2년, 2024.10.7. ~ 2026.10.6.)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현재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결산서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의 재정 문제를 이유로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바,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사유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를 파견한 모든 법인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울시교육청은 사무직원 인건비는 "상근이사 미선임"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이사회 운영비는 이사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여 1천 2백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자료 : 2025년 임시이사 선임법인 운영보조금 교부 검토(안)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0557, 2025.6.24.))

193) 2026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4-4), 1550쪽.

194)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2839번)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8697, 2025.11.12.)

195)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2938번) 제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9004, 2025.11.18.)

196) 「시의원(이소라 의원) 요구자료 제출(2412번)」(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7015, 2024.10.15.),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2839번)」(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8697, 2025.11.12.)를 토대로 정리한 사항임.

아니라 명확하게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즉,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법률을 근거로 임시이사를 파견한 학교법인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1) 학교법인의 재정 현황, 2) 법령이 정한 경비의 최소 수준에 관하여 명확하고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야 함.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197] 의원 요구자료[198] 등을 통해 최근 3회계연도 동안 "법인회계 계좌 압류"를 이유로 해당 법인의 결산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음.

[표-159] 일광학원의 3년간 결산서 미제출 및 공익법인 공시 현황[199]

연도	결산서 제출		결산 확정 현황		홈페이지 공시 여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자료 제출 현황
	제출여부	미제출 사유	심의확정일	결산보고일		
2023년	미제출	법인회계 계좌 압류	-	-	미공개	2023.6.27. (9.27. 재공시)
2024년	미제출	법인회계 계좌 압류	-	-	미공개	2024.5.28.
2025년	미제출	법인회계 계좌 압류	-	-	미공개	2025.6.5.

○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법인의 당해 회계연도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200] 그 결과물로서의 결산서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 집행 타당성과 합리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학교법인의 결산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201] 따라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마다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임.

197) 2025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2025.11.7.)
198) [학교지원과]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2172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6686, 2025.10.10.)
199) 위의 자료를 정리한 것임. 공익법인 공시 자료 제출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것임.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UTESFACJ01 (검색일 2025-10-30))
200)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 「2024년도 학교법인 업무편람」, 318쪽.
201)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이뤄진 회계처리의 최종 기록조차 확인하지 않고,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회계 보고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상술된 사항을 종합할 때 동 사업은 그 추진 근거인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법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사업 예산은 전액 감액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 학교지원과 (사업별 설명자료 1575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14,630**	**54,630**	**좌동**	**60,000**	**좌동**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7,100	7,100	좌동	-	좌동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사업설명회	**99,250**	**39,250**	**좌동**	**60,000**	**좌동**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위원회	8,280	8,280	좌동	-	좌동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생 수가 소규모인 학교를 통폐합, 이전재배치,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천만원 증액된 1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은 적정규모학교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관련 학교 컨설팅,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중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사업설명회'는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한

학생, 보호자,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천만원 증액된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예산 산출 내역을 기준으로 크게 1) 업무추진비 5백만원과 2) 일반용역비 8천 5백만원, 3) 홍보물 제작 및 강사 수당 등 42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160]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사업설명회' 세부 산출내역

· 운영비			94,250	천원
- 강사수당	(160,000원+90,000원)×5교	=	1,250	천원
- 원고료	10,000원×10매×5교	=	500	천원
- 유인물및홍보물품제작비	1,400,000원×5교	=	7,000	천원
- 일반용역비	**85,000,000원×1식**	**=**	**85,000**	**천원**
- 행사용품	50,000원×2회×5교	=	500	천원
· 업무추진비			5,000	천원
- 간식비	3,000원×100명×2회×4교	=	2,400	천원
- 실무추진단사업추진경비	20,000원×13명×10교	=	2,600	천원

○ 동 사업 중 편성된 '일반용역비' 8천 5백만원은 크게 1) 적정규모육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6천만원)과 2) 학교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 운영(2천 5백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음.[202]

○ 그런데 동 사업에 포함된 '적정규모육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은 용역 내용 및 성격 등에 기초해볼 때 '일반용역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됨.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운영비'에 해당하는 원가통계목 중 하나인 '일반용역비'를 "기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설정하고 있음.[203]

202)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2839번)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8697, 2025.11.12.)
203) 서울시교육청(2025),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31쪽.

- 덧붙여 해당 지침은 “교육청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경비”를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라는 원가통계목으로 구분하는 상황임.[204]

○ 그런데 ‘적정규모육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은 구(舊) 성수공업고등학교 부지에 (가칭)성진학교와 함께 조성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 예정인 연구로, 인근의 성수전략정비구역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학교 신설 필요성 검토 등이 용역 내용에 포함됨에 따라 동 사업에 용역비가 편성된 것임.[205]

[표-161] 舊 성수공고 부지 활용 계획[206]

폐교부지	활용예정	시설 현황	활용가능 시설(안)	비고
성수공고 (13,800㎡)	❶ (가칭)성진학교	◦ 부지면적: 8,000㎡ ◦ 연 면 적: 16,178㎡ ◦ 건 물: 개축 ◦ 층 수: 지하1/지상4	◦ 체육관 및 지하주차장	지역사회 공유학교 연계
	❷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설	◦ 부지면적: 5,800㎡ ◦ 연 면 적: 10,309㎡ ◦ 건 물: 리모델링 ◦ 층 수: 지상6	◦ 지역주민, 지역의원 등과 열린 소통으로 확정(예정)	유연한 기관 유형 검토(예정)

[그림-3] 舊 성수공고 부지 활용 방안(그림)[207]

204) 위의 책, 133쪽.
205) <추가제출> 시의회(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2839번)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8811, 2025.11.14.)
206)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25.9.9.), ‘(가칭)성진학교 설립 본격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207) 위의 자료.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해당 연구용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및 구체적인 폐교 활용 방안과 관련한 내용에 해당하는바, 일반적인 행사 운영이나 채용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특히, 서울시교육청도 해당 용역비 산출을 위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기준으로[208]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등의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정규모육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의 기획과 예산 사정 전반에 있어 정책 연구용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임.

○ 그러므로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6천만원의 용역비용은 용역과제의 내용상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과 관련한 정책연구 비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게 세목과 원가통계목을 각각 '연구개발비(260-01)'와 '연구용역비'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 학급설치지원 - 학교지원과 (사업별 설명자료 1609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6,445,000	4,875,000	4,210,700	1,570,000	2,234,300	
교실전환비	1,500,000	1,500,000	1,200,000	-	300,000	
내부비품비	825,000	825,000	좌동	-	좌동	
특수학급신규설치 학교지원금	4,120,000	2,550,000	2,185,700	1,570,000	1,934,300	특수학급 신설 학교 수 증가

○ "학급설치지원"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일반학급 설치를 지원하고,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고자 특수학급을 신규로 설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7천만원이 증액된 64억 4천 5백만원이 편성됨.

208) <추가제출> 시의회(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2839번)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8811, 2025.11.14.)

○ 이 중 ‘특수학급신규설치학교지원금’은 특수학급을 신규로 설치하는 학교에 1) 노후시설 개선과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3)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7천만원 늘어난 4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특수학급 설치 수요가 있는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때 교당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1) 노후교육환경개선지원 24억원, 2) 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지원 12억원, 3)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5억 2천만원 등 총 4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162] 특수학급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항목별 지원 한도[209]

지원항목	2025년 지원 단가	2026년 예산안 단가
○노후 교육환경개선 지원	○교당 1억 원	○교당 1억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	○교당 50,000천 원	○교당 50,000천 원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당 10,000천 원씩 3년간 지원	○교당 10,000천 원씩 3년간 지원
계	교당 연간 최대 160,000천원	

※ 신설·개축·증축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학교는 인센티브 지원 제외

○ 그런데 동 사업은 상위법령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인 학교에 특수학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노후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인센티브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의문이 제기됨.

○ 현행 법령은[210]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함에

---

209)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2839번)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8697, 2025.11.12.)

210)「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있어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배치하도록 하고, 조례는[21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를 포함한다)가 입·전학 의사를 표시한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을 통해 학교가 당연히 이행해야만 하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특수학급 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후 교육환경개선 지원' 예산을 학교당 1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동 사업 이외에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중 '특수학급신증설' 사업에서[212]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시설·설비·교구 등에 관한 예산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중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서[213] 장애인편의시설 구축 예산을 지원하여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동 사업에 포함된 '노후 교육환경 개선 지원' 예산이 특수학급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시설사업비가 아니라 특수학급 신설을 이유로 하여 해당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학교는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214] 특수학급 설치는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볼 때 교육여건이 허락하는 한 단위 학교에서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사무가 아님.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1)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
2.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입학·전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12) 예산안 사업설명서(4-3권), 1494쪽.

21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65쪽.

214)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동 사업이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위해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편성된 예산 중 '노후교육환경개선지원(공·사립학교)'으로 편성된 24억원은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 - 교육재정과 (사업별 설명자료 1627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761,924**	**3,023,720**	**4,733,720**	**738,204**	**△971,796**	
공·사립학교 운영비지원	3,761,924	3,023,720	4,733,720	738,204	△971,796	개방인센티브 지원 학교 확대

○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은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중 일정 시간 이상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3천 8백만원 증액된 37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5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개방 실적이 최소 400시간 이상을 충족한 학교에 개방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소 3백 9십만원에서 최대 2천 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에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한 총 304교가 36억 4천 9백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임.[215]

- 참고로 학교는 해당 인센티브를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시설사업비(최소 50% 이상 의무 편성), 학교시설 개방 담당 부서 운영 경비 또는 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한 교직원 연수·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음.[216]

215)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2025), 2025년(2024학년도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계획(안)
216) 위의 자료, [붙임 2] 참조.

○ 그러나 동 사업은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학교 개방 실적이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실적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학년도에 697교 4,327건(개방 시간 기준 48만 3,910시간)이었지만, 2024학년도에는 679교 2,799건(개방 시간 기준 39만 3,329시간)에 그침.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2019학년도)부터 2024년(2023학년도)까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로 지출한 예산이 240억 8천 3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실제 학교 개방 실적은 크게 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163] 연도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217)]

(단위: 교, 건, 시간, 백만원)

구 분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기간		코로나 이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운동장	학교 수	521	256	123	348	434	451
	허가 건수	2,444	656	396	1,049	1,272	1,409
	허가 시간	135,006	30,751	20,142	75,525	118,295	137,041
체육관 (다목적 강당)	학교 수	450	56	42	216	321	425
	허가 건수	1,928	119	90	573	916	1,390
	허가 시간	348,904	15,597	16,764	97,638	202,127	256,288
합 계	학교 수	697	279	143	454	593	679
	허가 건수	4,372	775	486	1,622	2,188	2,799
	허가 시간	483,910	46,348	36,906	173,163	320,422	393,329

[표-164] 연도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업 예산 집행 현황[218)]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18학년도)	2020년 (2019학년도)	2021년 (2020학년도)	2022년 (2021학년도)	2023년 (2022학년도)	2024년 (2023학년도)
집행액	8,999,529	8,999,777	2,736,000	2,449,000	7,309,848	2,588,000

217) 위의 자료, [붙임 1] 참조.
218) 위와 같음.

○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등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다양한 재정적 기여를 하는 중에도 서울시 내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실적이 201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보다 현행 개방 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관련하여 서울시는 주민 대상 개방을 전제로 학교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2025년에만 25억원을 편성했고, 자치구도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에 소요 재원의 50%를 분담함과 동시에 이용자 시설보험 및 스쿨매니저 파견·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165] 최근 3년간 서울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추진 실적[219)]

연도	내용
2023년도	○ 56개소 조성 및 개보수 지원(2,330,874천원)
2024년도	○ 51개소 조성 및 개보수 지원(2,250,000천원)
2025년도	○ 59개소 조성 및 개보수 지원(2,455,000천원)

[표-166] 2025년 사업 주체별 스쿨매니저 사업 추진 현황[220)]

자 치 구	교 육 청	학 교
○ 스쿨매니저 직접 파견·운영 - 예약자 확인 및 외부인 출입 통제 - 불법 활동 감시, 시설물 점검 및 청소 ○ 이용자 시설보험 지원 - (대상자) 학교체육시설 사용허가 단체 - (보장범위) 지역주민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 사용허가 단체 선정 및 매칭	○ 운영 재원 분담 (5:5) * 교육청-자치구 재원 분담 ○ 인센티브(교당10,000천원) ○ 개방 관련 총괄(독려 등) ○ 민원 창구 개설 ○ 시범학교 선정	○ 시설제공 등

○ 더욱이 학교 체육시설의 소극적인 개방 문제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특히 심화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예산 증액에 더욱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시의

219)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2026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문화체육관광위원회), 313쪽.
220)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5번 [붙임 4]를 정리한 것임.

학교 운동장 개방률은 71.3%, 체육관 개방률은 44.5%로, 경기도나 인천 등 인접 시도, 전국 시도별로 비교하더라도 최하위 수준임.

- 이 통계는 동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 학교 개방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소극적인 학교 개방 문제가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심화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함.

[표-167]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221)]

(단위: 천원)

순번	지역	2023년		2024년		2025년	
		운동장	체육관(강당)	운동장	체육관(강당)	운동장	체육관(강당)
1	**서울**	**70.3**	**42.8**	**68.7**	**38.0**	**71.3**	**44.5**
2	부산	88.2	80.5	82.4	70.4	86.9	70.7
3	대구	87.6	63.3	93.9	67.3	94.1	67.7
4	인천	90.7	53.1	91.2	52.8	90.1	50.3
5	광주	98.3	97.5	98.3	98.4	98.0	97.9
6	대전	85.0	79.8	90.9	77.2	88.5	71.4
7	울산	89.0	66.0	77.8	58.9	79.1	61.0
8	세종	95.0	67.6	93.1	49.0	88.5	57.9
9	경기	94.6	80.1	95.4	79.3	-	-
10	충북	88.5	71.3	90.8	76.6	89.0	70.1
11	충남	93.1	81.1	93.9	84.2	93.4	84.9
12	전북	89.6	77.6	91.4	80.6	91.1	78.6
13	전남	88.3	93.5	90.4	92.0	90.3	91.8
14	경북	86.0	61.0	91.0	73.0	88.3	73.4
15	경남	89.6	72.6	89.3	79.6	90.3	79.8
16	제주	100.0	92.3	100.0	91.1	100.0	88.8

주1)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자료 부존재, 강원도교육청 자료 부존재
주2) 개방률 산식 : (개방교/보유교) × 100%

○ 그러므로 동 사업은 예산 확대보다 기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와 문제점 분석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7억 3천 8백만원을 감액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221)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2번 [붙임 6] 참조.

마) 지출관리 - 교육재정과 (사업별 설명자료 1636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93,000**	**80,787**	**좌동**	**12,213**	**좌동**	
계약관리	14,920	14,920	좌동	-	좌동	
계약업무지원	25,740	25,740	좌동	-	좌동	
급여관리	**29,000**	**13,077**	**좌동**	**15,923**	**좌동**	**급여 멘토링 확대**
불법하도급신고 포상금제운영	1,000	1,000	좌동	-	좌동	
지출관리	22,340	23,150	좌동	△810	좌동	보험료 및 운영수당 감액
통합계약운영	-	2,900	좌동	△2,900	좌동	지원청 통합계약 안착에 따른 예산 감액

○ **"지출관리"는 각종 계약 및 학교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풍토 조성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급여관리'는 각급 기관과 학교 등에서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연수와 급여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2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저경력 공무원의 급여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급여 멘토링 확대를 위한 활동비와 연수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되었음.**

○ **해당 사업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급여 멘토링'은 최근 3년 이내 임용된 급여업무 담당 공무원이 2년 이상 급여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에게 급여업무 수행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대 1로 짝을 지어준 뒤 현장 멘토링과 비대면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222]

- **금번 예산안에서 급여 멘토링 사업은 멘토와 멘티에게 지급할 수당 1천**

222) 2025년 재능나눔 성장프로젝트 급여업무 멘토링 운영 계획(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21176, 2025.8.22.)

6백만원과 멘토-멘티 간 만남의 날 운영(멘토와 멘티가 관계 형성과 상호 간의 소통 등을 위해 대면하는 행사)을 위한 회의실대관료 3백만원 등 총 1천 9백만원이 편성됨.

[표-168] 2026년 '급여 멘토링' 예산 산출 기초(안)[223]

(단위: 천원)

예산명	산출내역	예산액	비 고
멘토링운영수당[주1]	(20천원×130명×3회)×2회차	15,600	소통을 위한 대면 활동비 필요
급여멘토링운영[주2] (회의실대관료)	1,500천원×2회차	3,000	멘토·멘티 소통을 위해 모둠 테이블이 있는 회의실 필요
합계		18,600	

주1) 총무과 주관 신규공무원 멘토링 활동비에 준해서 편성
※ 멘토 : 20,000원 × 3회, 멘티 : 25,000원 × 5회 ('25년 신규공무원 멘토 모집 알림, 총무과-2360, 2025.2.3.)
주2) '25년 멘토-멘티 만남의 날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에 준하여 편성

○ 서울시교육청은 급여 멘토링 사업에서 발생한 증액에 관해 "2025년 급여 멘토링 시범사업 과정 중 다수의 참여자가 멘토 활동에 대한 지원 수당을 요청했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음.[224]

- 참고로 2025년 동 사업은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에게 상시학습 시간을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고, 활동 우수자는 보수 유공자 교육감 표창 평가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225]

○ '급여 멘토링'은 저경력 공무원이 급여업무를 수행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급여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의 자율적 모임 활동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해당 사업은 멘토와 멘티에게 모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설계와 예산편성 전반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 우선, '급여 멘토링'이 조직 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협업과 상호 간의

223)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2821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28008, 2025.11.12.)
224) 2025년 멘토·멘티 만남의 날 결과 보고(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23690, 2025.9.22.)
225) 2025년 재능나눔 성장프로젝트 급여업무 멘토링 운영 계획(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21176, 2025.8.22.)

교류 활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 오히려 자발적인 협력 문화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2025년 사업계획에 기초해 볼 때 동 사업은 2년 이상 급여업무를 했던 공무원이 임용 3년 안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공무원에게 전화·메일·메신저 등을 통한 질의응답, 현장 방문을 통한 업무절차 안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임.

-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급여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협력 아래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수당이 아니라 공직문화의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사안임.

[표-169] 멘토단 운영 방법[226]

추진 내용		지원방법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질의 응답	○ 팀별 카카오톡 및 센클라우드, 전화 및 메일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
대면	1:1 현장 멘토링 지원	○ 멘토가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절차 및 정확한 업무처리 방법을 1:1로 지원 ○ 교육재정과 요청 시 멘토 학교(기관) 공문 발송

※ 신규 공무원 발령 후 첫 급여 마감 및 세금 신고 납부 등 업무 부담이 많은 시기 집중 지원

○ 더욱이 동 사업이 신입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 및 업무 고충 해소,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에 사업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면, 총무과 역시 신규공무원의 조직 융화 및 업무 적응 지원을 위해 별도의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227] 사업간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또한, 동 사업을 통해 멘토가 제공하는 급여업무 관련 조언·자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불확실함.

- 학교에서 이뤄지는 급여업무는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이 혼재된 조직 특성상 복잡하고, 교육청의 인사나 복리후생 정책, 「공무원 보수규정」을 비롯한 각종 지침과 관계 법령의 변화에 민감해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음.

226) 위의 자료.
227) 예산안 사업설명서(4-1권), 201쪽. (56. 지방공무원인사운영)

- 따라서 멘토가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멘토의 조언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답변이나 매뉴얼에 기반한 업무처리 절차 등의 안내, 업무적 고충에 대한 조언 등에 국한될 것이므로 보임.

○ 여기에 더해 도움을 받는 멘티 역시 수당을 받게 되면서 업무역량 증진보다 보상 중심의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멘토-멘티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을 종합할 때 동 사업은 협력적 조직문화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통상적인 조직내 활동까지 수당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점, 신규 공무원에게 업무역량 증진보다 보상 중심의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편성된 수당 예산 1천 6백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덧붙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 확대에 앞서 근본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급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부분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228] 따라 이뤄진 적절한 업무분장인지에 관해 성찰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됨.

22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축시설관리일반 - 교육시설안전과 (사업별 설명자료 1659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409,498**	**2,281,757**	**좌동**	**127,741**	**좌동**	
각종위원회운영	124,230	108,540	좌동	15,690	좌동	
기술직전문성신장및 청렴제고연수	-	3,716	좌동	△3,716	좌동	
사립학교기술지원	1,710	2,056	좌동	△346	좌동	
사립학교현장지원	13,340	3,850	좌동	9,490	좌동	
석면제거사업운영	22,150	26,950	좌동	△4,800	좌동	
시설관리일반	**2,169,158**	**2,072,755**	**2,077,075**	**96,403**	**92,083**	
안전점검 데이터베이스	22,000	-	좌동	22,000	좌동	
외부전문가참여 시설공사현장점검	1,960	1,960	좌동	-	좌동	
외부전문가참여 안전점검	54,950	61,930	57,610	△6,980	△2,660	

○ **"건축시설관리일반"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등에서 진행되는 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 운영 경비, 학교 석면 모니터단 운영,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을 위한 행정실장 직무연수, 공사 중 외부점검단 참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천 8백만원 증액된 24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시설관리일반'은 시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나 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 및 BTL 사업 관리,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과 같은 시설 사업 분야 위탁 운영 분담금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21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됨.**

○ **해당 사업 중 '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축위탁운영분담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23조를[229]**

229)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근거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구축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시도분담금으로, 이번 예산안에 10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됨.

- 참고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은 학교나 교육기관의 시설 현황부터 안전검검 추진 실적, 소방시설이나 화재 취약 마감재(드라이비트 및 샌드위치 패널) 해소 실적, 내진보강 사업 관리,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임.[230]

○ 한편, '시설관리일반' 중 '내진보강관리사업위탁운영분담금'은 「교육시설법」 제9조에[231]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교육시설 대상 내진보강 사업의 평가·점검 등을 위해 편성된 시도분담금으로, 금번 예산안에 2억 6천만원이 편성됨.

- 여기에서 내진보강관리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기술지원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시도 분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내진 보강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 내진성능평가 타당성 검토, 분기별 내진보강사업 현황 관리를 위한 교육청 업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232]

○ 두 사업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

1. 기본계획、시행계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230)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소개 리플렛(2025.9.30. 게시), https://www.koies.or.kr/00155/2782 (검색일 2025-11-15)

231) 「교육시설법」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가、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점검에 관련된 세부 내용, 절차,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2)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2025.1.),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5단계) 용역 과업지시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에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사업 주관 교육청 등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임.

-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233] 따라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을 예산 확정 전에 교육감에게 통지하고, 이 때 해당 사업의 분담금 규모와 주요 내용을 포함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

○ 그런데 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교육부가 통보한 시도분담금 액수보다 과편성 또는 저편성(低編成)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 공문에[234] 따르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축위탁운영'의 분담금은 6억 8백만원이고, '내진보강관리사업위탁운영'의 분담금은 5억 4백만원임.

- 반면, 금번 예산안에서 두 사업은 각각 10억 5천 1백만원과 2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현재 예산안에서 '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축위탁운영분담금'은 교육부 통보액 대비 4억 4천 1백만원이 과편성되어 있고 '내진보강관리사업위탁운영분담금'은 2억 4천 5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70] '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축' 등의 분담금 편성액 및 교육부 통지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6 예산안 편성액(A)	교육부 통지액(B)	차이(A-B)
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축위탁운영분담금	1,050,911	609,750	441,161
내진보강관리사업위탁운영분담금	259,520	504,129	△244,609
합 계			196,552

2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234) 2026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예정교부액 통지(서울)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8088, 2025.10.23.)

○ 이는 교육부의 예정교부액 통지가 예산안 제출 시점(11월 1일)[235] 직전인 10월 23일에 이뤄졌고,[236]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예정교부액 통지 전에 2025년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했기 때문으로 보임.

○ 교육부의 예정교부액 통지 시점으로 인한 분담금 예산의 과편성(또는 저편성) 문제는 예산안 편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함.

○ 그러나 동 건과 같은 시도분담금의 과편성(또는 저편성)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시도분담금의 적정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연계해 시도분담금 수준이 포함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통지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임.

○ 결과적으로 "건축시설관리일반" 사업에 편성된 '시설관리일반' 예산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예정교부액 통지 시 확인된 서울시교육청의 사업별 시도분담금 규모에 맞춰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3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36) 2026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예정교부액 통지(서울)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8088, 2025.10.23.)

사)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 강당겸체육관 · 기타증축 - 교육시설안전과 (사업별 설명자료 1666, 1671, 1675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1,530,034**	**2,728,323**	**13,847,191**	**18,801,711**	**7,682,843**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1,530,034	2,728,323	13,847,191	18,801,711	7,682,843	
계	**11,350,606**	**8,047,822**	**8,600,946**	**3,302,784**	**2,749,660**	
강당겸체육관	11,350,606	8,047,822	8,600,946	3,302,784	2,749,660	
계	**1,616,000**	**-**	**6,949,000**	**1,616,000**	**△5,333,000**	
기타증축	1,616,000	-	6,949,000	1,616,000	△5,333,000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강당겸체육관" 및 "기타증축"은 각각 열악한 급식 여건 개선 및 기상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1교 1체육관 확보, 마이스터고 기숙 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각각 188억 2백만원, 33억 3백만원, 16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215억 3천만원, 113억 5천 1백만원, 16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해당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시설 증·개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위의 사업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음. 예컨대, 건물 증축 건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237]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

23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238] 등에 따라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

○ 한편,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중 13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된 '안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사업설명서 상에서는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표-171] 안평초 증축의 건 관련 예산안 사업설명서 상 기재사항[239]

청별	학교명	재정투자심사(최종)		공유재산심의(최종)		설계	착공	준공
		자체	중앙	심의	관리계획			
동부	안평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6. 3월	2026. 4월	2026. 12월

○ 그런데 해당 건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20일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서울안평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특별교실 증축의 건"(이하 '안평초 증축의 건')의 일부임.

- 안평초 증축의 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급식실과 학생식당·특별교실 증축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비만 편성되었음.

- 또한, 해당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자체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음.

○ 즉, 안평초 증축의 건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관해 예산안 사업설명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38)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239)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4-4권), 1669쪽.

[표-172] 안평초 증축의 건 사전절차 추진경과(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준)[240]

추진경과 및 일정(연월일)	추진 내용
2025. 7. 2.	2025년 제5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조건부 채택) - 보차분리조치, 건축물의 안전등급 등을 고려 개축대상이 아님, 리모델링으로 검토, 모듈러 수량 최소화, 증축위치 변경 조치, 공사금액 절약방안 강구
2025. 9. 19.	2025년 제4회 자체 재정투자심사(결과: 적정)
2025. 9. 29.	2025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결과: 적정)

○ 예산안 설명자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간의 이러한 차이는 예산 심의에 관한 주요 사항을 파악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동 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자료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안평초 증축의 건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에 있어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강당겸체육관" 및 "기타증축"의 예산편성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편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됨.

○ 다년간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계속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2026년 예산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이 이뤄져야 하는바, "급식실 및학생식당신증축" 등 3개 사업 역시 2026년 중 설계나 공사가 예정된 사안에 한하여 편성이 진행되어야 함.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제출 시점까지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증개축 사업예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10월 20일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5개 사업의 예산을 금번에 편성

24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23쪽을 사전절차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임.

하였는데, 해당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의결될 것을 전제로 편성한 것임.

- 특히, "기타증축"의 '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개축의 건'은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진행 중임에도 설계보상비와 설계비, 시설비까지 모두 편성하여 착공에 필요한 재원까지 제출한 상황임.

[표-17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의 본예산 편성 현황[241)]

청별	학교명 (사업명)	향후 일정			'26년 본예산	
		설계	착공	준공	편성액 (천원)	편성내역
동부	안평초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026. 3월	2026. 4월	2026. 12월	1,343,808	설계비, 시설비
서부	수색초[변경]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025. 11월	2026. 3월	2027. 2월	2,000,000	시설비
강서양천	신서중[변경]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025. 10월	2026. 1월	2026. 12월	2,000,000	시설비
동부	신현중 (강당겸체육관)	2026. 12월	2027. 1월	2028. 3월	208,686	보상비, 설계비
동부	서울반도체고 (기타증축)	2026. 7월	2026. 11월	2028. 2월	1,616,000	보상비, 설계비, 시설비

주) 수색초와 신서중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의 건은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안임.

-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중 설계를 마쳐 착공 단계를 앞둔 5개의 신·증축 사업에 관한 예산을 절차적·내용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동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음.

[표-174] '25년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예산이 미편성된 사업 현황[242)]

청별	학교명 (사업명)	재정투자심사(최종)		공유재산심의(최종)		설계	착공	준공
		자체	중앙	심의	관리계획			
남부	영등포초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5. 9월	2025. 12월	**2025. 10월**	2026. 7월	2027. 6월

241) 사업별 설명자료(4-4권), 1666~1677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242) 서울시교육청 내부 자료.

청별	학교명 (사업명)	재정투자심사(최종)		공유재산심의(최종)		설계	착공	준공
		자체	중앙	심의	관리계획			
강동송파	신명초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5. 1월	2025. 3월	**2025. 8월**	2026. 3월	2026. 9월
강서양천	신기초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024. 2월	해당없음	2024. 3월	2024. 5월	**2025. 11월**	2026. 4월	2027. 5월
강서양천	월촌중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024. 2월	해당없음	2024. 3월	2024. 5월	**2025. 11월**	2026. 3월	2027. 12월
강남서초	서초중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024. 7월	해당없음	2024. 8월	2024. 9월	**2025. 11월**	2026. 4월	2027. 7월

주) 해당 표에서 착공 및 준공은 2026년 본예산 확보 시 예정 일정임.

[표-175] '25년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예산이 미편성된 사업예산 현황[243)]

(단위: 천원)

청별	학교명	규모		소요예산			
		면적(㎡)	층	총소요액	기확보액	향후소요액	26년 편성액
남부	영등포초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112	2	3,301,872	134,781	3,167,091	-
강동송파	신명초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733	1	2,755,076	85,653	2,669,423	-
강서양천	신기초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330	3	3,051,711	332,587	2,719,124	-
강서양천	월촌중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395	2	2,834,094	229,000	2,605,094	-
강남서초	서초중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994	3	2,974,966	19,668	2,955,298	-

주) 향후 소요액은 총 소요액에서 기확보액을 제외한 수치이고, '26년 편성액은 동 예산안 편성액을 의미함.

○ **이러한 사실은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등 3개 사업의 예산이 적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불확실하고, 일부 학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그러므로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을 비롯해 교육시설 증·개축 사업 중 2026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예산이 편성**

243) 위의 자료.

되지 못했던 사업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아) 그린스마트스쿨운영 - 미래학교추진단 (사업별 설명자료 1683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070,763**	**3,583,712**	**좌동**	**487,051**	**좌동**	
개축타당성검토용역	60,000	290,000	좌동	△230,000	좌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운영	1,006,740	899,850	좌동	106,890	좌동	
그린스마트스쿨지원 사업분담금	**423,373**	**403,212**	**좌동**	**20,161**	**좌동**	
긴급시설보수비	1,890,000	1,890,000	좌동	-	좌동	
미래학교연수운영	5,850	5,850	좌동	-	좌동	
사전기획용역	600,000	-	좌동	600,000	좌동	
전문기관수탁사업비	4,000	14,000	좌동	△10,000	좌동	
통학버스운영	80,800	80,800	좌동	-	좌동	

○ "그린스마트스쿨운영"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舊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운영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통학버스 운영 및 긴급 시설 보수비 등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40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그린스마트스쿨지원사업분담금'은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시도교육청이 분담하여 납부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천만원 증가된 4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됨.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교육시설법」 제26조의3에[244] 따라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사무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주관 아래 시도분담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 덧붙여 동 사업은 앞서 살펴본 "건축시설관리일반"에 편성된 시도분담금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사업 비용을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학교교육환경 개선비'에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사업 주관 교육청 등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임.

- 이에 교육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245] 따라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을 예산 확정 전에 교육감에게 통지하고, 이 때 해당 사업의 분담금 규모와 주요 내용과 범위 등을 안내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사업은 "건축시설관리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예정교부액 통지가 예산안 제출 시점(11월 1일) 직전인 10월 23일에 이뤄짐에 따라[246] 교육부가 안내한 분담금 2억 7천 5백만원보다 1억 4천 8백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음.

○ 따라서 동 사업 역시 교육부가 안내한 시도분담금 규모보다 과편성된 1억 4천 8백만원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한편, 본 건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시도분담금의 적정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연계해 시도분담금 규모 등에 대한 사전 통지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임.

---

244) 「교육시설법」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세부절차,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246) 2026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예정교부액 통지(서울)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8088, 2025.10.23.)

자) 기획시설사업추진및지원 - 청사이전추진단 (사업별 설명자료 1699쪽)

(단위: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390,190**	**28,960**	**좌동**	**1,361,230**	**좌동**	
청사이전사업추진	1,390,190	28,960	좌동	1,361,230	좌동	청사이전 후 개청식, 인근지하철 역명개정 등 관련업무 추진

○ **"기획시설사업추진및지원"은 2026년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신청사 이전 사업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6천 1백만원이 늘어난 13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크게 신청사 개청식, 신청사에 구축될 스마트오피스 등의 활용을 위한 구성원 교육비용, 신청사 이전 백서 제작, 신청사 이전과 연계한 지하철역 역명 변경 추진, 스마트오피스 운영을 위한 통신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지하철역명개정일반용역비' 9억 2천 1백만원과 '지하철역명개정사업추진경비' 32만원 등 9억 2천 1백만원(이하 '지하철역명개정사업비')은 신청사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숙대입구(갈월)역의 역명을 숙대입구(서울시교육청)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4월 신청사 개청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신청사 개청과 연계해 서울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의 역명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함.**[247]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계획을 근거로 용산구 및 서울시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 협의, 용산구 지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했으며,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임.**

---

247) 신청사 인근 지하철 역명 변경추진 계획(안)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2266, 2025.4.30.)

[표-176] 지하철 역명 변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248]

일시	내용
2025.4.22.	기본계획 수립
2025.6.2.	용산구청 협조요청(주민 의견수렴, 지명위원회 심의, 서울시 안건 상정 등)
2025.6.26.	서울시 도시철도과 역명 관련 검토의견 회신(개정소요비용 등)
2025.7.1.	용산구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5.8.28.	용산구 지명위원회 심의 통과(서울시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사전절차)
2025.9.1.	서울교통공사 수송운영처 소요비용 내역 회신
2025. 11. ~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요청 협의 중 (시기 미정)
2026.1. ~	지명위원회 의결 시 서울시 도시철도과에서 최종 역명결정 후 고시 진행
2026.2. ~	노선도, 표지판 등 개선 공사 용역 진행

○ **그러나 지하철역명 개정 추진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지하철역 역명의 서울시교육청 병기 문제는 반드시 신청사 개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낮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라는 효과성 역시 행정기관의 특성상 민간기업과 대비해 중요도가 낮음.**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0억원을 전출하고,[249] 시설사업비 확보를 위해 2022년 8월 서울시의회가 민간투자사업(BTL)에 상환하도록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한 재원 중 4,138억원을 노후시설개선에 집행하도록 계획할[250]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임.**

- **덧붙여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따르면,[251] 향후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수입 여건은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 교육세 개편 등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같은 기간 지출 여건은 물가·공공요금 인상, 교직원 처우개선 등으로 경상경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48) (청사이전추진단)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2822번)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7012, 2025.11.11.)
24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30쪽.
250) 위의 자료, 48쪽.
251)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16-18쪽 참조.

- 즉, 중기적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의존재원과 경상적 경비 지출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입 구조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하철역명 변경을 위해 9억 2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세입 감소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해야 하는 2026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 낭비, 교육재정 지출의 정당성 결여 문제 등의 지적을 받기 충분하다고 판단됨.

-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세입 여건과 관련하여 "2025년 대비 보통교부금이 3,990억원 감소하고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559억원 증가했다"고[252] 언급했음에 비추어볼 때 지하철역 역명 병기가 타 교육사업이나 시설사업 대비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지 중대한 의문이 있음.

○ 그러므로 "기획시설사업추진및지원" 중 '지하철역명개정사업비' 9억 2천 1백만원은 전액을 감액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5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

8) 직속기관

가)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운영-교육연구정보원(사업별 설명자료 1761쪽)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18,649	51,820	186,240	266,829	132,409	
수업탐구교사공동체외	300,000	50,000	180,000	250,000	120,000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에 필요한 교원학술지원비 증액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연수	18,649	1,820	6,240	16,829	12,409	

○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운영"은 관내 다수 학교의 교원으로 구성된 학습공동체의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자발적인 교원 능력 신장과 수업 전문성 제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업탐구교사공동체외"와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연수"로 구성되어 2025년 대비 1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3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수업탐구교사공동체외"는 교육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에 연구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5년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5년 기준 13개 사업부서에서 55개 영역, 168개 공동체 소속 교원 및 교육 전문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체별 연구비 지원과 우수사례집 제작, 성과공유 발표회 등을 진행하고 있음.

-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1개 팀당 1백만원의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추경예산안에서 편성된 예산으로는 1개 팀당 90만원 내외 차등지원이 이뤄졌음.

○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운영지원' 2억 6천 8백만원[253], '교원역량성장지원' 8억 6천 3백만원[254],

25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1051p,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에 4억 5천 2백만원[255] 등을 통해 교원 연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와 함께 서울교육연구년제, 학습연구년제 운영, 교과 주제별 각종 연수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지원 방식과 별개로 동 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된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는 교원의 역량 및 수업 전문성 강화 목적 아래 개별 정책사업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바, 특정 교원학습공동체에 과도한 행·재정적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됨.

○ 2026년 예산안에서는 교과 또는 주제별로 구성된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가 ‘수업혁신확산지원’의 수업평가나눔교사단, ‘개념기반탐구독서’의 개념탐독실천교사단, ‘역사바로알기교원학습공동체운영지원’의 학습공동체,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의 ‘생각을키우는교실운영(팀)’,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 등 개별 사업 단위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어,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는 타 정책사업을 통해서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음.

[표-177] 수업나눔교사단 예산 지원[256]

· 운영비			141,290	천원
- 강사수당	[(100,000원+60,000원)×13명×2회×11청]+[(100,000원+60,000원)×15명×1회]	=	48,160	천원
- 운영수당	[(40,000원+20,000원)×4명×4회×11청]+[(40,000원+20,000원)×25명×2회]	=	13,560	천원
- 원고료	(10,000원×5매×2시간×12명×2회×11청)+(10,000원×5매×2시간×15명×1회)	=	27,900	천원
- 인쇄비	700,000원×1회×11청	=	7,700	천원
- 장소임차료	(750,000원×4회×11청)+(820,000원×2회)	=	34,640	천원
- 행사용품비	[{(1,500원×150명×2회)+(190,000원×2회)}×11청]+(100,000원×2회)	=	9,330	천원
· 업무추진비			5,0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10명×2회×11청)+(20,000원×30명×1회)	=	5,000	천원
· 복리후생비			400,000	천원
- 분임연구활동지원비(수업평가나눔교사단)	(1,500,000원×100팀)+(2,500,000원×100팀)	=	400,000	천원

254)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1016p~1018p
255)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864p

[표-178] 개념탐독실천교사단 예산 지원[257]

· 운영비			43,640	천원
- 강사수당	(160,000원+ 90,000원)×5명×4회	=	5,000	천원
- 도서구입비	20,000원×30권×12명	=	7,200	천원
- 시설임차료	1,500,000원×12회	=	18,000	천원
- 운영수당	(40,000원+ 20,000원)×12명×12회	=	8,640	천원
- 원고료	150,000원×4명×4회	=	2,400	천원
- 행사용품비	200,000원×12회	=	2,400	천원
· 업무추진비			3,0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15명×10회	=	3,000	천원
· 전출금등			6,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국립)	3,000,000원×2교	=	6,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1,524,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공립)	(100,000,000원×11교)+ (50,000,000원×3교) + (3,000,000원×29교)	=	1,337,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사립)	(50,000,000원×2교)+ (3,000,000원×29교)	=	187,000	천원

○ 또한 "평가개선장학지원" 사업 내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인 '중등 성취기준 기반 학생평가 실천연구회' 는 중등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하여 성취기준 기반의 서·논술형 평가 방법 연구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대상이 되어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표-179] 평가개선장학지원 중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관련[258]

Ⅲ. 사업내용

1.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일반화기반조성

○ 기간 : 2026. 1. ~ 12.

○ 대상 : 학생평가·교육과정 전문가, 교육청 업무담당자, 교원 등

○ 내용

- 전문가 정책설계 TF 운영, 정책 적용 및 일반화·확산 추진
- 수업·평가 혁신 정책연구* 기반 정책 발굴 및 설계
  * 25~26정책연구 과제 : 서울형 탐구수업 모형 개발, 교육과정-수업-평가 설계·평가기준 개발
- 교육청 부서 간 협력 전략 협의체 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
- **수업·평가혁신 실천연구회 운영(정책연구 워킹그룹) : 깊이있는 학습을 지원하는 수업·평가 혁신 모델 개발·적용**
- 수업·평가 혁신 모델 적용 확산을 위한 교과별 확산 연수 운영(중·고, 5개 교과)
- 실천연구회 운영 워크숍, 정책 추진 성과보고회 운영

2025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기본계획 6p 내 교원학습공동체 공모 영역 목록

중등 성취기준 기반 학생평가 실천 연구회	중등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 실태 파악 및 현장 요구 등 분석을 통한 학생평가 내실화 방안 탐구(성취기준 기반의 서·논술형 평가 방법 연구, 피드백 강화 방안, 교수학습-평가-기록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모색 등)	1	학생역량·혁신교육과

256)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1018p,
257)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1037p,

○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로서 동 사업의 재정 지원을 받는 동시에 개별 사업부서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사업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개별 정책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예산안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259] 및 동법 시행령 제9조[260]에 근거하여 공립학교 소속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총 327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 1인당 6만 1,500원씩 1년간 총 73만 8천원을 특정 주제 없이도 연구활동비로써 지급하게 되는 것임.

○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이 역량강화 및 연구활동을 위해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여러 정책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사단 구성이나 학습공동체 지원 등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한바,

개별에서 필요한 학습공동체 구성 시 교원연구비 지원과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258)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1070p

259) 「교원지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0)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각종캠프운영-학생교육원(사업별 설명자료 1934쪽)
각종체험활동운영-학생교육원(사업별 설명자료 1925쪽)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13,565**	**106,520**	**124,120**	**7,045**	**△10,555**	
공감협력캠프	51,235	49,230	좌동	2,005	좌동	급식비 단가 인상
모험극복캠프	**9,580**	**9,660**	**좌동**	**△80**	**좌동**	
생태환경캠프	33,520	33,520	좌동	-	좌동	
해양도전캠프	19,230	14,110	31,710	5,120	△12,480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운영비 증액

○ "각종캠프운영"은 사회·정서역량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백만원 증액되고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1천 1백만원이 감액된 1억 1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모험극복캠프'는 다양한 모험활동시설을 활용하여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 교육활동 운영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만원 감액된 9백58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754,042**	**659,976**	**715,326**	**94,066**	**38,716**	
도전모험활동	43,940	44,120	54,120	△180	△10,180	
산내들체험활동	159,890	76,640	좌동	83,250	좌동	급식비 단가 인상 실내교육장 비품 증액
안전체험관	4,750	4,750	5,750	-	△1,000	
야영체험활동	103,520	93,040	109,740	10,480	△6,220	급식비 단가 인상 버스임차료 증액
임해교육활동	253,346	246,240	249,990	7,106	3,356	급식비 단가 인상 교육물품 및 장비수리비 증액
찾아가는수련교육	**100,336**	**99,866**	**100,766**	**470**	**△430**	
한강수상안전교육장 운영	88,260	95,320	118,320	△7,060	△30,060	수상레저장비보험료 감액

○ 한편 "각종체험활동운영"은 서울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원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천 4백만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7억 5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찾아가는수련교육'은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교육원 교육활동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만원 증액되고,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40만원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음.

[표-180]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각종캠프운영-모험극복캠프)

·	운영비			8,300	천원
	- 교육용품비	400,000원×8종×1회	=	3,200	천원
	- 기타일반수용비	**250,000원×10개×1회**	**=**	**2,500**	**천원**
	- 일반수용비	250,000원×8종×1회	=	2,000	천원
	- 행사용품비	**30,000원×20종×1회**	**=**	**600**	**천원**
·	업무추진비			1,280	천원
	- 업무추진비	**20,000원×16명×4회**	**=**	**1,280**	**천원**

[표-181]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각종체험활동운영-찾아가는수련교육)

·	운영비			61,816	천원
	- 교육요원급식비	9,000원×14명×105회	=	13,230	천원
	- 교육용차량리스	900,000원×3대×12개월	=	32,400	천원
	- 교육용품구입	300,000원×10개월	=	3,000	천원
	- 사무기기임차료	17,950원×2대×12개월	=	431	천원
	- 사무용품구입비	100,000원×6회	=	600	천원
	- 인터넷요금	400,000원×12개월	=	4,800	천원
	- 자동차보험료	800,000원×1대	=	800	천원
	- 자동차세	35,000원×1대	=	35	천원
	- 자동차소규모수선비	75,000원×1대×12개월	=	900	천원
	- 자동차유류대	70,000원×4대×12개월	=	3,360	천원
	- 전화요금	180,000원×12개월	=	2,160	천원
	- 차량정기검사료	50,000원×1대	=	50	천원
	- 환경개선부담금	50,000원×1대	=	50	천원
·	**여비**			**37,240**	**천원**
	- 국내여비	**20,000원×14명×133회**	**=**	**37,240**	**천원**
·	업무추진비			1,28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16명×4회	=	1,280	천원

○ 학생교육원은 '재외한국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소요경비를 '모험극복캠프' 및 '찾아가는수련교육'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사업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와 체결한 국제교류협약을 근거로, 학생교육원 직원 16명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은 후 2차례에 걸쳐 각각 7일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 교육활동을 지원·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임.

[표-182] 2025 재외한국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 개요

- 대상기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기간 및 인원: 2025.6.3.(화) ~ 6.16.(월), 총 16명

구분	기간	교육연구관 (인솔 단장)	교육연구사 (교육·행정지원)	교육요원		합계
				전문경력관	수련지도사	
1차	2025.6.3.(화)~6.9.(월)	1	1	1	7	10명
2차	2025.6.10.(화)~6.16.(월)	1	1	-	4	6명

- 예산집행현황

연번	내용	예산항목	내역	금액(원)
1	항공권 구입	학생단체활동-각종캠프운영-**모험극복캠프-기타일반수용비**	1차:850,000원*2명	1,700,000
			2차:400,000원*2명	800,000
2	파견대상자 근무복 구매	학생단체활동-각종캠프운영-**모험극복캠프-행사용품비**	18,000원*16장	288,000
			22,500원*12장	270,000
3	현수막, 기념품	학생단체활동-각종캠프운영-**모험극복캠프-행사용품비**		250,000
4	파견대상자 협의회	학생단체활동-각종캠프운영-**모험극복캠프-업무추진비**	15,000원*15명	225,000
5	여행자보험료	기관기본운영비-**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교육기획운영부-보험료부담금**	16명	157,720
6	국외출장여비	기관기본운영비-**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여비-출장여비**		5,159,602
		학생단체활동-각종체험활동운영-**찾아가는수련교육-국내여비**		2,583,120
합계				**11,433,442**

○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및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됨.

- 동 사업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아 총 16명이 참여하고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설명서에는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음.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거나 이미 심의·의결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다른 용

도로 집행한 것인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또한 '모험극복캠프', '찾아가는수련교육'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외학교 학생들의 체험활동 지원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국내여비 항목을 사용해 국외출장경비를 집행하는 등 목적외 예산 집행이 발생하였음. 이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 마지막으로 사업일정표에 따르면, 학생교육원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 시간은 6박 7일 중 총 4시간에 불과했으며, 수학여행 종료 후 3일간의 일정 역시 교육적 필수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가적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이는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극히 미미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교육적 필요성을 내세워 외유성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고 사료됨.

[표-183] 2025 재외한국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일정표(1차)

날짜	지역	시간	세부 일정	파견 대상자 역할
2025. 6. 3.	인천	10:35~14:00	인천에서 호치민 출발	(단장) 파견단 인솔 및 기관 방문 및 기관장 협의, 교류 활동 총괄 운영 (연구사) 행사 운영 및 행정사항 지원 (경력관) 교육요원 교육활동 점검 (지도사) 교육활동 사전 협의
	호치민	14:00~18:00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방문 및 만남 ▪ 담임교사와 교육요원 교육활동 협의	
2025. 6. 4. 현장체험학습 1일차	호치민	09:30~12:30	호치민 관광(통일궁, 중앙우체국 등)	(단장) 파견단 현장체험학습 인솔 (연구사) 교육활동 총괄 운영 및 지원 (경력관) 1일차 교육활동 점검 및 운영 (지도사) 버스 및 항공 탑승 시 학생 인솔, 체험학습 활동 시 학생 안전 보조 역할 수행 팀빌딩 교육활동 전담 운영
		12:30~13:30	중식	
	무이네	13:30~15:30	무이네 이동	
		15:30~17:00	숙소 체크인 및 휴식	
		17:00~18:00	일몰 감상	
		18:00~19:00	저녁 식사 및 만찬장 이동	
		19:00~20:30	팀빌딩 활동	
		20:30~	호텔 투숙 및 휴식	
2025. 6. 5. 현장체험학습 2일차	무이네	08:30~10:00	기상 및 조식	(단장) 파견단 현장체험학습 인솔 (연구사) 교육활동 총괄 운영 및 지원 (경력관) 2일차 교육활동 점검 및 운영 (지도사) 버스 및 항공 탑승 시 학생 인솔, 체험학습 활동 시 학생 안전 보조 역할 수행 레크레이션 및 팀빌딩 교육활동 전담 운영
		10:00~12:30	사막 지프차 투어	
		12:30~13:30	중식	
		13:30~17:00	잘파 유적지, 용과 농장 방문	
		17:00~18:30	석식	
		18:30~21:30	레크레이션(장기자랑) 및 팀빌딩 활동	
		21:30~	호텔 투숙 및 휴식	
2025. 6. 6. 현장체험학습 3일차	무이네	08:30~10:30	기상 및 조식, 짐 정리	(단장) 파견단 현장체험학습 인솔 (연구사) 교육활동 총괄 운영 및 지원 (경력관) 교육활동 점검 및 운영 (지도사) 버스 및 항공 탑승 시 학생 인솔, 체험학습 활동 시 학생 안전 보조 역할 수행
		10:30~11:00	숙소 체크 아웃	
		11:00~12:00	노바 월드 내 자유시간	
		12:00~14:00	중식 및 자유시간	
	호치민	14:00~17:00	호치민 이동	
		17:00~	학교 도착 및 하교	
2025. 6. 7.	호치민	09:00~14:00	▪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상호 평가 회의 - 교육활동 운영 피드백 및 보완점 협의 - 차년도 교육활동 지원시 고려사항	(단장) 상호평가 회의 주관 (연구사) 상호평가 회의 운영 (경력관) 상호평가 참석 및 교육활동 전체 브리핑 (지도사) 상호평가 참석 및 협의 (공통) 현지 수련교육 연수를 위한 교류 활동 운영
		140:~18:00	▪ 현지 수련교육활동 적용 및 연수를 위한 호치민시 교육 문화 교류 활동	
2025. 6. 8.	호치민	09:00~13:00	▪ 교직원 대상 수련교육활동 연수 I - 분위기 조성 및 문제해결	(단장) 교직원 대상 연수 총괄 (연구사) 연수 운영 및 진행 (경력관) 연수 준비 및 운영 (지도사) 연수 진행
		13:00~16:00	▪ 교직원 대상 수련교육활동 연수 II - 도전99조, 명랑운동회	
		18:00~22:00	호치민 공항 이동 및 인천 출발	(단장) 파견단 인솔 (연구사) 행정사항 지원
2025. 6. 9.	인천	07:00	인천공항 도착	

○ 따라서 학생교육원은 동 사업비가 위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동 사업은 향후 동일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